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김성희 이송희 김완호 민홍기 박경수 박은혜 변경희 서인환 양숙미 윤상용 이승기 이영자 전병태 한민규

>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구 원: 이송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완호 (국립재활원),

민홍기 (인천대학교),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변경희 (한신대학교),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윤상용 (충북대학교),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이영자 (보훈교육연구원),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민규 (한국체육대학교)

머리말

정부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확" 수립·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3차에 걸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88년에 제1차 계획(1998년~2002년)이 수립·시행된이후 제2차 계획(2003년~2007년), 제3차 계획(2008년~2012년)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현재는 3차에 해당되는 5차년도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3차에 걸친「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결과, 다양한 장애인복지 분야의 체계적 틀을 갖추고, 대상자 및 수급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통합사회 실현을 위 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하고 새로운 장애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시스템의 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3차 계획의 연계 선상에서의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점검하고, 새로운 사회·환경변화를 토대로 제4차 「장애 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로써 김성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본원의 이송희 연구원 그리고 김완호 국립재활원 과장, 민홍기 인천대학교 교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영자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민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부송재찬 장애인정책국장, 정충현 과장, 민영신 서기관, 홍영주 주무관, 황지영 주무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도와준 이수정 연구보조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며,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요	약	······ 1
제1	장 서론	3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45
제2	장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 및 평가	49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 51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 146
	제3절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 181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 211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 278
제3	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 345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 345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356
	제3절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 361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369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 385
제4	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395
1,1	제1절 비전 및 목표	
	제 2 절 추진방향······	

제5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안 405
제1절 장애인 복지서비스·건강분야······405
제2절 장애인 보육·교육분야········431
제3절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438
제 4 절 장애인 소득·고용분야······· 447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인권분야······456
참고문헌469
부록473
〈부록 1〉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활동현황 473
<부록 2> 일본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 (후기 5개년 계획)··················· 477
〈부록 3〉 일본 장애인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519

표 목차

\langle 표 $1-1 angle$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langle 표 $1-2 angle$ 제 4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위원 명단44
\langle 표 $2-1 angle$ 권역재활병원 준공·개원 예정
⟨표 2−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현황
⟨표 2−3⟩ 연도별 이용자 수 현황191
⟨표 2−4⟩ 연도별 지원방송사 현황 195
\langle 표 2-5 \rangle 연도별 수신기 지원 현황······· 196
\langle 표 2 $-6 angle$ 중앙지상파 4사 장애인방송(자막) 편성비율 197
\langle 표 2 $-7 angle$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198
$\langle { {f E} } 2-8 angle$ 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 244
$\langle \text{표 } 2-9 angle $ 표준사업장 현황 및 지원 실적 253
\langle 표 $2-10 angle$ 표준사업장 지원 실적 ···································
〈표 2−11〉 2007년~201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 262
\langle 표 $2-12 angle$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표 2−13> 2011년 신규개발 장애인복지일자리 유형 ····· 270
\langle 표 2 $-14 angle$ 연도별 사업 실적 ······· 274
\langle 표 2 $-15 angle$ 연도별 사업수행기관 및 직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실적 275
\langle 표 $2-16 angle$ 중증장애인 취업인 수 276
\langle 표 2 $-17 angle$ 장애에 대한 차별 인식 정도······ 282
\langle 표 2 $-18 angle$ 통신 중계 서비스 실적 ···································
\langle 표 2 $-19 angle$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실적 326
<
⟨표 3-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 시기 365

그림 목차

그림 1-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43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45
그림 2-1] 국가보훈처의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제118
그림 2-2] 장애인 창업지원 사업내용239
그림 4-1] 기존 5개년계획의 비전 396
그림 4-2] 기존 5개년계획의 정책 목표
그림 4-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비전, 목표, 분야······· 39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다양하고 새로운 장애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에 따른 신 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됨.
- □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의 전반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수 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시스템 개발은 여전 히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요 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 과제 마련이 필요시 됨.
- □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과제별 중간점검 결과, 많은 과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성과지표(목표치)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 과제별 사업 추진의 내실화가 요구되었음.
- □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4개 분야(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

회참여)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함.

○ 장애인복지환경 및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한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의 수립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과제 제시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08~2012)」의 평가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추진 방안으로 구성됨.
 -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 4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거시적 환경변화,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주요성과 검토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함.

※ 4개 분야 : 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경제활동분야, 사회참여분야

-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기본방향 및 과제 제시
 - 계획 수립을 위한 비젼 및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함.
 - ※ 5개 분야 : 복지서비스・건강분야, 보육・교육분야, 문화・체육분야, 소 득・고용분야, 사회참여・인권분야로 구성
-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실무추진단」구성・운영, 장애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III.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평가

1. 장애인 복지분야

□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효율화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추진과 정에서 나타난 대내외적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 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 장애인연금 도입은 당초 5개년계획에 제시되었던 세부 일정을 준수하여 2010 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6) 장애이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 연구용역 수행과 장애인연금 및 성년후견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최적의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간보험으로서 장애이동특별보호 연금상품의 모형을 개발한 것은 계획 이행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국립재활원의 병상 증축도 계획대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추진은 원만하게 이루 어졌으나,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 추진이 제시 되지 못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적 지원현황이 포함되지 못함.

□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도별 사업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초기에 설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추진일정에 구체적으로 무료 청각선별검사 달성상황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항목의 확대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장애예방센터나 장애위원회 설치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교육훈련의 전문화에 대해서도 제시되어 있어 우수하였음. 그러나, 계획에 근 거하기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국가적인 장애예방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국립재활원에서 시행중인 장애예방교육 위주의 사업도 그 의미가 크고 특히 휠체어 장애인 강사활용은 그 영향력이 평가됨.

□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산업화지원)

○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여 매우 우수하 였으며,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돋보였으며 상화 변화 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 리 사업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임상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지원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법이 제정된 것은 큰 성과로 인정함. 그러나, 주거약자의 개념에 탈북자(새터 민), 외국 이주민, 다문화가정, 노인 등 모든 약자가 포함되었고, 장애인에 대 한 할당제가 아닌 총괄적으로 복지를 위해 5%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인이 상대적으로 보급받기가 어려워진 점은 미비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은 장애인복지 환경적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 및 사업달성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거주시설 개편으로 당초에 목표로 했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함.

□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목표가 사업목적에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점과 특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장애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사업내용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시범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 절치를 거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한 점, 이러한 논의절차와 결과 보고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었으며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되었던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함.
- 다만, 목표산출의 근거에 있어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서비스 이용 장애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산출 근거의 객관적 제시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 초창기 도입 배경에도 장애인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판단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나 신상관리 등 성년후견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부응 및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인권과 생활보호라고 기술되어 있어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제시가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활동지원제도의 안정화 및 제도적 내실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여건에 따른 지

원을 차등화하고자 하였다는 점과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제도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각 등급별 추가지원 및 독거장애인의 추가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그러나, 대상자를 1급 장애인에 한정시키는 문제와 활동보조인의 처우에 관한 사항의 경우도 주요한 노력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함께 진전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작용함.

□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목표치로 설정한 서비스 지원인력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현재는 목표치의 약 2배에 달하는 인원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유 공상이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향후에도 양적, 질적으로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함.

□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문제해결과 국가유공상이자들을 위한 재활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의료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은 적절하였으나, 시설건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의료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각 지역의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 2011년부터는 상이 1급 특별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연차적 인상을 통한 산업 재해 장해급여 1급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1-5) 장애이동·기족지원서비스 제공

○ 계획단계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적합한 계획이라 평가되며, 소득기 준 변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확대 및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인 것으 로 평가됨. 이와 함께, 추진과정에서 장애이의 부모 및 전문가, 협회 등의 민간 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대되는 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계획이 적절하며, 시업추진과정에서 추진연도별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추진일정을 준수하고 효율적, 효과적인 운영 이 되도록 상황변화에 잘 대응함.

2. 장애인 교육분야

- □ (2-1-1) 장애이동 보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새로운 전담 시설의 신축과 기존 통합보육시설의 환경 및 인력 지원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시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
- □ (2-1-2) 장애아동 교육 지원 강화(교육과학기술부)
 -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 및 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이 잘 작성되었으며, 실행 정도도 우수한 편이며, 검사도구 개발에 따른 보급이나 실제 영아 학급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임.
- □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사업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이 우수하며, 학급 증설 및 교원 확보를 통한 의 무교육 실시라는 사업 내용 또한 우수함. 그러나,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준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교원확충 부족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 □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 장애학생 지원센터 확대 및 교육복

지 실태평가 실시 등이 계획대로 적절히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 계획임.

□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사업 과제의 배경과 목적이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의 목표와 잘 부합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 달성도도 매우 우수함. 본래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식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임.

□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아직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바,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 시범 운영 및 기관 지원 등 장애성인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사업 계획과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순회특수교사 배 치 및 IEP 작성 등은 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의 충실성 면에서 우수하게 이루 어졌음.
- □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목표는 적절성이 있고, 구체적 실행 계획도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었음.

□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력 평가 및 평가조정의 기초 단계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조정 대상학생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장애유형별 방안 모색 노력이 이루어짐. 정책연구학교 수준을 넘어선 보다 보편화할 수 있는 평가조정 방안 수립및 보급 노력이 필요함.

- □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 성과목표와 사업내용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외 추진과정의 효율 성과 성과달성도는 우수함.
- □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의 목적 과 내용의 연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의 정도가 우수함.
- □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보조원 및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 목적을 잘 성취하였음.

3.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 □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추진일정의 준수 및 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성과지표와 목표치와의 일치성과 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도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 □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예산집행 및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지며,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와의 일치성 그리고 달성율과 목표산출 근거의 적절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 □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 추진일정의 준수 및 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매우 우수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

율성과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성과달성 도 측면에서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와의 일치성과 달성율 그리고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 □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건립을 통하여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동계 장애인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동계종목 전용 훈련시설의 추가적인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장애인체육 시설의 구심점 역할 및 발전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
- □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선수 훈련지원을 통한 경기력이 향상되었고, 각 종 국제대회 참기를 통해 장애인체육의 국제 경쟁력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됨. 또한, IPC·APC 등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스포츠외교 인프라 구축 및 강화에 계기가 마련됨.

4.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 □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다양한 정책결합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자 노력한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이 증대된 성과가 나타났지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증대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냄.

□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점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의 매우 의미있는 접근임.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평가근거자료에 충실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 장애인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훈련과 맞춤형 훈련 등이 실시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일정정도 고용증대 성과 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취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차별로 예산확보 및 집행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 였음.

□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고용관련 핵심적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취약 분야로 지적받았던 기초통계의 취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고용 정책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기의 목표가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었음.

□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향후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주체화, 복지예산의 절감, 복지환경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 실제 사업측면과 관련하여 다만 비즈니스센터 설치 실적은 모두 달성했으나 센터를 통한 장애인고용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진단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 사업추진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 는 노력이 요구되며, 세부사업들이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예산확보에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6-1) 장애인 디수고용사업 확대(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공동투자형 자회사 설립을 기능하게 조정하여 사업 확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개정으로 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아 사업의 효율성은 인정받을 수 있음.

□ (3-6-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보건복지부)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나 평가근거로 제시하지 못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실적 및 내용이 조사되어져야 할 것임. 또한,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초기 취지와는 달리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계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업장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정책적 보완이 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를 뒷받침할 인프라 부족 및 세부적인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있음. 또한, 웹기반 시스템 부재에 따른 구매실적 저하가 우려되고, 엑셀서식을 이용한 실적 집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신뢰도 문제도 초래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됨.

□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 현재 전체 취업장애인 중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6.6%에 불과하며, 93.4%의 취업장애인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일반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 사업의 효과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증액이 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개수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5. 장애인 시회참여분야

□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오랜 기간 장애계에서 염원해 오던 사항이었고, 제 3차 5개년계획의 이행 시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시기와 일치하여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계획의 실천 수준을 높이 는 데 기여했던 요인으로 파악됨.

□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 5개년계획의 실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과제 로서 제3차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 로 계획대비 이행 수준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목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는 적절한 계획이었음. 다만 사업내용 부분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장애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고유한 활동공간을 마련하였고,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개발은 실효성 있고 효 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욕구와 상황변화 를 반영한 간담회, 워크숍 등의 협의과정도 수행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노 력으로 평가됨.

□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저상버스 보급과 관련하여 현재 보급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버스 회사에 설득 가능한 정책으로서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편의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이 매우 나아진 것으로 평가됨.

- □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 우선보행구역 지정으로 장애물이 없는 보행자 우선구역이 지정되어 편리성과 안전을 기하게 되었음. 그러나 보행자 우선 안전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 니라 교통문화로 정착되어야 하므로 지속적 지정과 더불어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 웹 접근성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 교육, 인식제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향상되었음. 그러나, 문화예술,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웹 접근성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금융거래, 비밀대화 등 특수한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즉,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와 개인간 사적인 통화내용에 대한 중계서 비스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 기본적인 정보화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으로의 변화 및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IT전문교육 추진 필요하며, IT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함.
- □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성과를 거두었음. 다만, 고가의 외산제품을 국산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개발성과물이 상용화되어 판매되는 비율이 타 정부 개발과제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 장애인의 운전시험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계획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존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애인 차량의 시설들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보조장치가 필요하였는데, 예산의 미확보로 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영실태와 민원평가를 실시한다고 계획하였으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실제로 반영되고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기준이 마련되지 못함.

Ⅳ.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전방안

1. 장애인 복지분야

- □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관련 기관과의 업무 영역 명확화 및 협력 관계 구축
 - 서비스 유형화 및 자원 발굴 체계 정교화
 - 장애인의 참여 및 지지 방안 마련

□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 현행 장애인연금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 및 지급액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며,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1-6) 장애이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 민간보험상품으로 개발된 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이 필요함.

□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재활의료 서비스 확충은 지역적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며 장애유형 및 제활 과정에 따른 전문재활의료기관의 역할 정립도 중요함. 또한, 권역별재활병원의 설립도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축과 병행하여 그 역할과 운영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활의료시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장애발생이 점진적으로 선천성요인보다는 중도장애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 에서 모자보건 향상을 통한 선천성장애예방사업은 장애발생의 현황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어야함.

□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화된 기능의 설정이 필요하며, 재활전문 교육훈련센터는 교육훈련의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그 기능이 드러날 것으로 평가됨. 즉, 장애인 당사자 교육과 재활전문인 교육은 각각 접근방법이 다르고 또한 기존의 민간 교육 기관과의 역할설정을 하는 것도 필요함.

- □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산업화지원)
 - 보장구의 공적급여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미진함이 있었으며, 이는 해당 전 문가와 예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진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적극적인 홍보 와 의견수렴을 통해 전향적으로 현실적인 급여확대의 추진이 필요함.

□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자과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주택 보급을 분양과 임대로 나누어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 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 체계와 기준 마련 및 서비스 이용 계약방식 도입이 필요함. 또한, 소규모 시 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및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장애인 장기요앙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편입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 도의 내실화 부분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함.

□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및 성년후견인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 및 협조가 필요함.

- □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활동지원 신청자격, 급여시간 등 급여체계 개선 및 수급자격 갱신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질 향상 추진을 위한 활동지원기관 및 종 사자의 역량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함.

□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 고령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정보접근성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서비스의 단절 없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 현재 보훈재활체육센터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일반 국가유공상이자들 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또한 상이군 경 복지회관의 경우 보다 다양한 국가유공상이자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 다 개방된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의 타당성 및 보상 수준의 합리적 기준 설계를 위해 국 외 상이제대군인 보상사례 검토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 정해야하며, 젊은 경상이자의 경우에도 6, 7급의 보상금 차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함.

□ (1-5) 장애이동·기족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이동 재활치료 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및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확대 및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고려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문가 및 시 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및 교육교재 등의 꾸준한 개발・보급이 필요함. 또한, 정부위탁형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 설치전환 및 장애인 피해상담소 지원 확대 가 필요함.

2. 장애인 교육분야

- □ (2-1-1) 장애이동 보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통합교육을 지항하는 장애 영유아 보육정책의 강화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유관정책과의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 (2-1-2) 장애이동 교육 지원 강화(교육과학기술부)
 - 장애 영어에 대한 교육 지원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개발 뿐 아니라 보급과 적용결과에 대한 수요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연령 을 고려하여 학급 중심 모델 이외에 전문가 팀에 의한 가정방문형 모델 등으 로의 확장이 필요함.
- □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달성도 측정근거의 제시가 필요 하며, 교원 확보 및 의무교육에 준하는 서비스를 유이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 한 질적 수준의 보장 노력이 필요함.
- □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장애 대학생 입학 및 대학생활 지원의 질적 측면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전문가 배치 유도 등의 실시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교사, 학생, 부모 등 인식개선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적·시대적 발전을 반영하는 등 새로운 장애인식 개선 사업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 장애성인은 장애영역 및 정도, 연령 및 학력,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과 목적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한 집단이므로 이에 대하여 각 영역 및 지역간 균형과 장단기적인 계획과 방향성 및 체계성을 갖춘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어야 함. 또한, 지원하는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주을 제시함으로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질적 강화를 유도하도록 함.

□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특수학급 증설 및 순회교사 추가 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므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특수교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법정 정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을 맡은 일반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및 특수교사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특수교육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특수교 사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법 및 통합교육을 위한 IEP 구안 지침 등 세부적 성 과목표 개발이 필요함.

- □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평가조정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 구축 및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대안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평가 가 이드라인 및 실행체제 개발이 필요함.
- □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 통합교육 및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기관으로서의 특수교육지원센 터 역량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진로교육에서 한발 더 나이간 종합적인 전환교육적 접근 이 필요함. 즉, 진로교육의 개념을 전환교육적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전환교육 방법 및 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침 제시가 필요함. 고등학교 졸 업 후 취업 이외에도 진학, 독립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환교육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 □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각종 보조공학 기기의 빠른 발전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함.

3.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 □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장애인 문화향유 기 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맞춤형 멘토적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문 화예술 교육/재교육 실행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전

문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문 일자리 마련의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적절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생활권별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시설 및 공간의 확충이 최소한의 필요조 건임. 이와 함께, 문화예술 공간에서의 향유, 창작, 발표의 기회를 확충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있어서 방송사의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작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방송사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송사의 원활한 장애인 방송 제작, 편성 및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2-4) 장애인체육 정보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체육활동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통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장애인 훈련종목의 특수성·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훈련원 내 전종목 훈련시설을 마련하고, 2018 동계장애인올림픽 유치에 따른 장애인 동계종목 훈련장 기반 조성이 필요함.

□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장애유형과 지역 특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 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공 공체육시설의 이용환경 여건 개선의 추진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 도자의 기초자치단체로의 확대 배치가 필요함.

- □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장애인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주요한 국제대회 참가 및 국내대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스포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또한, 장애인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외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4. 정애인 경제활동분야

- □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 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해야 하므로 향후 재조정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50 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300인의 2% 의무고용률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정된 의무고용비율을 반영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및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행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야 하며, 장애인교원 충 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 및 공무원 고용의무 적용제외직군 폐지가 필요함.
- □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 여성·고령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산업수요에 따른 신규훈련 직종 개발 및 취업서비스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 그리고, 고용 서비스 이용 장애인 인센티브 지원 및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축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고용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통계의 생산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고 통계강화의 보다나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사의 실시 자체보다는 사업 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사업주 지원의 다양화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허용, 사업 주 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영 등 사업주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제도 내에서 우 선구매제도, 수의계약 대상에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기업이 제외되어 향후 확 대지원이 필요하며, 표준사업장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정한 심 사과정을 거쳐 인증된 사업체만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의 법 개 정이 필요함.

□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입지 및 물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미설치 지역 10개 광역 시·도를 평가하여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기존 창업보육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창업지원 및 장애인 창업지원의 접근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 '기업체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한 세부 문항 및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조사하고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함.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표제도 및 해고보호제도 도입하고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 (3-6-1)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고용노동부)

○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체결하여 모회사와의 인적교류, 고용

계획, 사업전망, 재무상태, 판로개척 등을 검토하여 사업장을 지정하여 단순 의무이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모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3-6-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보건복지부)

○ 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육성하여 장애인 고용능력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품목별·업종별로 연계 및 조직화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현재 도입 단계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를 확대·발전시켜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수 확대 및 근무조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 방안 수립을 통한 기능 재정비가 필요함.

□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재가중증장애인을 대 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립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용을 확 대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5. 장애인 시회참여분야

- □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과지표로서 현재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도 외에 대상 기관의 '적정편의제공율'과 '장애인이 주관적으 로 인지한 차별경험율' 등을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 중간평가 실시 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추진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통해 계획 마무리시까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 야 하며, 최종평가 또한 동일선상에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 근로지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며, 성인지 및 장애인 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여성 근로지를 위한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증설을 비롯하여 지역별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지 원서비스 제공의 거점기능의 강화 및 생애주기별 아동기부터 노령기까지의 여 성장애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저상버스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 2층 버스나 장애 인 이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 마을버스의 경우 소형 휠체어 탑승가능한 모델을 연구가 필요하며, 목표 이행에 대한 매년 정기적 점검이 필요함.

□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수도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6대 광역시의 지하철과 기차역을 포함하여

사업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필요함.

□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 장애물 없는 환경이라는 용어보다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설계와 디자인)이 란 용어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안전하며, 접 근 가능한 환경이란 새로운 용어 도입이 필요하며, 인증제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심사받도록 의무화를 추진하여 시설물의 편의성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 PC에서 인터넷 이용에서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태블릿PC, IPTV 등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 단순한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서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연계 서비스, 회의실에서 회의중계서비스, 강의실에서 강의내용에 대한 중계서비스 등 특화된 중계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 스마트 사회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모바일기기, 태블릿PC, IPTV 등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법 및 과정 개발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정보화교육의 추진이 필요함.

- □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상설 판매장 구축 및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전 시회 참가지원 등 사업추진 확대 노력이 필요함.
- □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조된 자신의 차로 시험을 볼 경우 문제가 되므로 수동식 채점 방식을 병행토록 해야 하며, 운전면허장에 장애인 특수 차량을 구비할 경우, 다양한 보조장치가 필요하므로 여러 형태를 모델화하여 사전에 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수정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 상법 732조의 생명보험 가입의 제한이 철폐되어야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정부나 기업, 사회적 은 행의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나 법에서의 세제혜택 등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애인 당사자를 이용한 전 종사자의 장애인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함.

V.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 장기 비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세상)'
- □ 정책목표
 - 장애인 맞춤형 복지·건강지원체계 구축 강화
 - 장애인 생애학습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
 - 장애인 건강체력 보유 지향 및 문화복지 실현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강화
- 장애인 사회참여기반 확충 및 인권보장

VI.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안

1. 장애인 복지서비스·건강분야

□ 전달체계

- 기본방향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공적전달체계의 업무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적 전달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함.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참여와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과의 협력 체계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중심형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여 전
 국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

-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화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관리 상설기관 신설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 장애인 등급제도 개선

□ 소득보장

- 기본방향
 - 다층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가구 소득 보장 강화
- 중점과제
 -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비기여 사회적 연금으로서 장애인연금 역할 강화
- □ 의료보장 / 장애인보조기구
 - 기본방향
 - 통합적 재활의료의 서비스를 통한 건강권 확보
 - 장애인의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실현
 - 후천적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 확대
 - 중점과제
 - 장애인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공공 및 민간 재활의료 활성화
 -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취약 및 고령 장애인 재활의 인프라 구축

□ 주택 및 주거서비스

- 기본방향
 - 주거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의 종합적 대책 마련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 발전중점과제
- 중점과제
 - 자립생활의 범주를 기초로 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화 방안 마련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체계적 향상

□ 자립생활

- 기본방향
 - 장애인의 자립지원 시스템이 연계성 있게 작동되도록 조정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 및 급여시간 등 급여체계 개선
 -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자격 제한과 연계된 장애등급 폐지

- 주거, 소득, 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의 종합적 대책 마련
- 중점과제
 - 자립생활의 범주를 기초로 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화 방안 마련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체계적 향상
 - 장애등급의 폐지에 따른 대안적 체계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

- 기본방향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실화'에서 '선진화'로 도약
 - 국가유공상이자 재활지원체계 강화
- 중점과제
 -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순환기계 질환자 증가로 인한 대전보훈병원시설 확충
 - 전투 혹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 상이처에 대해 신체장애를 보완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휠체어 및 보장구 제공
 -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재활의지 및 사회참여 동기부여 확산
- □ 장애이동·기족지원 (여성장애인 폭력)
 - 기본방향
 - 장애이동·가족지원 사업 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 중점과제
 - 장애이동·기족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2. 장애인 보육 교육분야

- □ 보육·교육
 - 기본방향
 -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중점과제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확대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장애성인 평생교육 강화

3.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 □ 문화
 - 기본방향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방송접근권 보장
 - 중점과제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 문화센터 설치운영
- □ 체육
 - 기본방향
 -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추진

- 장애인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중점과제
 - 생활체육 및 생활체육대회지원
 - 장애인체육 정보화체계 내실화
 - 장애인 동계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 국제장애인경기대회 경기력 강화

4. 정애인 소득 고용분야

- □ 고용 및 일자리 (고용노동부)
 - 기본방향
 - 장애인 고용률의 제고
 -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제고
 -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
 - 일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중점과제
 - 의무고용정책의 내실화
 - 고용평등정책의 적극화
 - 직업재활정책의 전문화
- □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건복지부)
 - 기본방향
 - 지역 내 훈련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의 기회 확대
 - 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
 - 근로유인기제 도입의 필요성

- 중점과제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마련
 - 직업재활 사례관리 체계 마련
 - 근로유인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마련
 - 장애인 일자리 마련

5. 장애인 시회참여 인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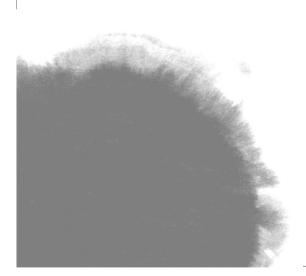
- □ 차별·인권 / 추진실적 점검
 - 기본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수준 제고
 -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 강화
 - 중점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 여성장애인 (장애여성 근로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리강화 및 삶의 질 도모
 - 중점과제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 교육 및 출산비 지원 제도개선
- □ 편의증진
 - 기본방향
 - 지역사회 생활중심의 편의성 증진
 - 장애 유형별 다양성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

- 재난과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
- 중점과제
 - 편의시설 확충
 -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이동권 보장
- □ 정보접근성 (정보통신보조기기)
 - 기본방향
 - 디지털 사회통합으로 스마트 지식정보회사회 구현
 - 중점과제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사회참여

- 기본방향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권리실현
 - 장애인 복지의 국제화와 지역적 특성 반영
- 중점과제
 - 아태 장애인 10년의 추진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주요용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다양하고 새로운 장애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됨.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수요 증기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 필요
 - 사회나 국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외 주거보장, 장애인인권보장 등에 대한 새로운 욕구도 높은 수준

〈표 1−1〉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소득보장	39.5	32.9	38.5	35.9	24.6	43.4	12.5	45.3	44.6	21.4	33.3	35.5	40.9	27.1	43.6	38.2
의료보장	30.5	41.0	28.8	35.3	28.9	17.4	11.7	24.4	34.9	48.2	35.8	52.7	32.2	51.6	30.6	31.5
고용보장	9.2	5.6	8.6	8.7	20.6	10.5	8.2	7.6	4.0	7.4	4.8	6.8	11.2	7.9	11.1	8.6
주거보장	8.1	7.2	9.1	6.8	8.3	7.4	5.2	11.9	7.3	2.8	20.8	0.0	0.0	9.1	6.7	8.0
이동권 보장	2.0	3.6	1.9	0.6	0.0	2.0	5.0	1.3	2.5	5.8	0.0	0.0	0.0	0.0	0.0	2.0
보육교육보장	1.6	1.2	2.2	2.5	5.4	9.5	29.7	0.4	0.0	13.3	0.0	2.4	2.9	1.1	2.9	2.4
문화여가생활 맞체육활동보장	2.0	1.1	0.9	1.4	6.4	1.4	2.8	0.9	0.6	0.0	0.0	0.0	0.0	0.0	0.0	1.6
장애인 인권보장	2.9	2.3	4.6	3.2	5.8	5.7	16.4	3.2	4.6	0.0	1.9	0.0	10.8	1.5	0.9	3.3
장애인 인식개선	1.4	1.2	2.9	2.8	0.0	2.1	7.8	2.5	0.8	1.1	0.0	2.7	2.0	0.0	0.0	1.8
장애예방	1.1	1.2	1.1	0.9	0.0	0.1	0.6	1.7	0.2	0.0	1.3	0.0	0.0	0.7	0.0	1.0
기타	0.4	0.8	0.3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0.0	4.0	0.4
없음	1.1	1.9	1.2	2.0	0.0	0.0	0.0	0.9	0.4	0.0	2.1	0.0	0.0	1.0	0.0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5,009	316,309	256,840	278,337	21,048	153,331	16,237	103,894	58,499	18,508	19,249	9,287	2,426	16,705	14,572	2,610,251

자료 : 김성희, 변용찬, 이민경, 이송희 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승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성책의 전반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시스템 개발 이 부족함.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요 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 과제 마련이 필요시 됨.
정부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총리훈령에 의거, 1998년부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88년에 제1차 계획(1998년~2002)이 수립·시행된 이후, 제2차(2003~2007)계획까지 마련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 2008년에는 2008~2012년까지의 3차에 해당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012년 현재 5차년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2차에 걸친「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결과, 다양한 장애인복지 분야의 체계적 틀을 갖추고, 대상자 및 수급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통합사회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됨.
그러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과제별 중간점검 결과, 많은 과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성 과지표(목표치)가 설정되지 못하였음. 또한 과제별 사업 추진의 내실화가 요구 되었음.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4개 분야(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함
- 장애인복지환경 및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한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과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 본 연구는 크게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08~2012)」의 현황 및 평가와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발전방안 및 추진 방안으로 구성됨.
 □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 및 평가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4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거시적 환경
 - 제3자 '상애인성책송합계획」의 4개 분야별 수신과제에 대한 거시석 완성 변화 및 현황을 검토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문제점 및 주요성과 검토를 통 한 평기를 실시함.
 - ─ 4개 분야는 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경제활동분야, 사회참여분야임.
- □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 제3차 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함. 이는 제4차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기본방향
 -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수립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함.

-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의 추진방안 및 과제
 -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수립을 위한 분야를 제시하고 이 에 따른 분야별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서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함.
 - 분야는 복지서비스·건강분야, 보육·교육분야, 문화·체육분야, 소득·고 용분야, 사회참여·인권분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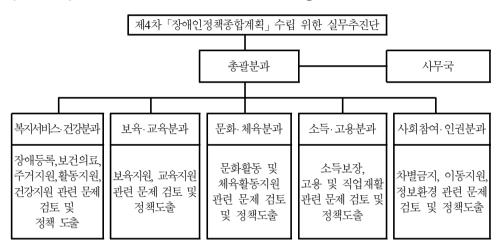
-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평가 실시
- 장애인복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평가에 근거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추진방향 및 장애인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13개 정부부처 과장급, 장애인 단체, 학계, 연구진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 계획 수립에 참여한 13개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지 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실무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에「복지서비스·건강분과」, 「보육·교육분과」,「문화·체육분과」,「소득·고용분과」,「사회참여· 인권분과」등 5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하여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 의 및 관련 부처 담당자 회의 개최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 사무국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실무추진단 운영 관련 제반 사항 협력

[그림 1-1]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수립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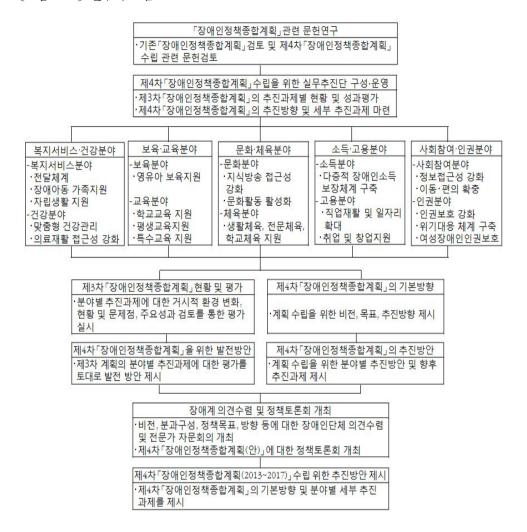
〈표 1-2〉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송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u> </u>
총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송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u>l</u>
(안국모건사회연구원) 이송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스미 11시이에지그 그스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교수	
김완호 국립재활원 과장	
복지서비스·건강분야 이영자 보훈교육연구원 박사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경	-
보육·교육분야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u> </u>
문화·체육분야 한민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소득·고용분야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홍경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투	장
민홍기 인천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사회참여· 인권분야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시 무총 장	
염형국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지하다 기계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시무총장	-
장애인단체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시무차정	-

※ 정부위원 : 관련부처 담당자

- □ 장애계 의견수렴 실시
 -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비전, 분과구성, 정책목표, 방향 등에 대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실시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장애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지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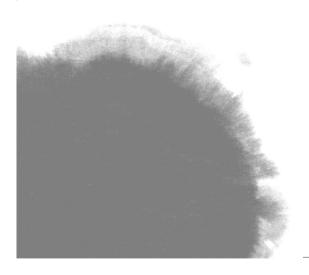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 본 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 총 5장으로 구성됨.
 - 제1부에서는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 점검 및 평가 실시
 - 제2부에서는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전방안 및 추진방안 제시
- □ 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시

- 제2장에서는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현황 점검 및 평가 실시
 - 5개 분야 :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분야
- 제3장에서는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제4장에서는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제시
- 제5장에서는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제시
 - 5개 분야 : 복지서비스·건강분야, 보육·교육분야, 문화 채육분야, 소득·고용 분야, 사회참여·인권분야

2장

제3차 「장애인정책<mark>종</mark>합계획」의 현황 및 평가



제2장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 및 평가

- □ 우리나라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음.
 - 1988년에 제1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2003년에 제2 차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에는 제3차 계획에 해당되는 「장애인정책종 합계획」을 마련하여 2012년 현재 제3차에 해당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의 마지막 5차년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4개 분야(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과제별 추진 실적을 지난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향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함으로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평가 대상은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 문화,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의 4개 분야 총 58개 과제를 대상 으로 분야별 추진성과 평가를 실시함.
 - 평가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개년도!)이며, 평가근거 자료는 연구진에서 마련한 평가틀에 따른 부처별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실적자

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년도별 추진실적 점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평 가근거자료로서 활용함²).

- 평가단의 평가위원 구성은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됨.
- 평가는 중간평가와 동일한 평가들(평가지표)³)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지표의 대분류인 '계획의 적절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성과달성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기술토록 함.

³⁾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기를 위한 평가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1)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사업필요성(배경) 및 사업목적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계획의 적절성	2. 사업내용	·사업추진동기와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명확성·타당성
	3. 성과지표(세부계획 및 성과목표) 적정성	·세부계획 및 성과목표의 적정성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4. 추진일정 준수성	·년도별 추진일정계획상의 일정 준수성
	5. 예산집행의 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집행)	·예산확보 달성 정도 ·과제추진을 위한 예산(자원)의 효율적 집행 정도
추진과정의 효율성	6.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 행정여건(장애계 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장애계) 여건·상황변화 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노력 여부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추진과정상 의견수렴 방법 및 내용 등(장애인당사자의 참여 등) · 국민/이해당사자(장애당사자)에 대한 홍보 · 모나티링 체계를 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
	7.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	·사업목적 달성여부(목표치)
성과 달성도	8. 달성률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년도별 추진계획대비 달성률
	9.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	·목표산출근거의 객관성과 합리성

^{1) 2012}년 현재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5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2008~2011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함.

^{2) 2008}년도에 발표된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자료의 성과지표 등을 활용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 1. 전달체계
-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한 개별적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지원체계 수립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강화
 - □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공공역할과 민간역할의 재정립과 협력
 - 공적 전달체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 강화 및 공적 사례관리의 도입
 - 공적 기관과 직접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발굴 확충 및 제공
 - □ 서비스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
 - 서비스의 양적 성장에서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평가제도의 구축과 적정 보상체계 도입
 - 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의 역할과 처우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중심적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과 장애인과의 협력관계 설정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4)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혁신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이용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됨.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수요에 부합되는 장애판정체계 구축으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분절적 서 비스가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장애인의 만족도 및 체감도를 제고하며, 양적으로 증가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확보와 실질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음.

□ 사업내용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발(안)의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 연구를 통한 제도 마련과 연구내용을 토대로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 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⁴⁾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08~2012)의 분야별 세부과제 번호에 따라 평기를 실시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주체

-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의 모의 적용과 2차례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관, 국민연금공단, 지방 자치단체 등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모형 개발과 적용이 진행됨.
- 2011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의 주체로 결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욕구파악, 서비스 계획,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사후 모니터링의 서비스 과정별 체계의 정비

□ 장애인 중심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도구, 서비스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 계획 수립절차,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서비스에 대한 상시적 연락체계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기반이 마련됨.

나) 문제점

□ 사업운영 주체에 대한 제도적 권한 부여 미흡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사업을 위한 수행주체의 제도적 권한이 미흡하여 일반 복지 전달체계인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과정 중 수행주체의 자체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욕구파악 및 서비스 계획 수립 그리고 서비스 제공 영역의 경우 필요한 제 도적 장치가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서비스 제 공이 작동하는 민간기관과의 협력 영역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 방안 불명확

○ 사회복지 일반 전달체계로서의 희망복지지원단이 발족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독립적 전달체계 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사업의 향후 사업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 복합적 위기를 가진 저소득 층위주의 기초적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욕구의 독특성과 장애 평가체계의 특수성 등을 담당하는 본 사업과의 연결 구조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성과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모의적용사업 실시

- 2008년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모의적용사업을 민간형, 공단형, 지자체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민간형(한국장애인개발원)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대문구
 - 공단형(국민연금공단) :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 지자체형(대전광역시 밀알복지관): 대전시 동구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모의적용 확대실시

- 2009년에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모의적용사업을 지자체내부형과 지자체외 부형으로 구분하여 확대 실시함.
 - 지자체내부형 : 중앙사무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사무소(성북구청, 광주남구청 장애인전문지원팀)

_	지자체외부형 : 중앙사무소(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사무소(송파구,	천
	안시 국민연금공단지사)		

-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연구 실시
 2010년에는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2개소(서울 은평구, 충남 천안시)에 대한 모형 연구를 실시함.
 □ 장애인 등록체계와 서비스제공 체계의 연계를 위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
 - 2011년에는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대도시형과 중소도시 형으로 구부하여 실시함.
 - 대도시형 : 서울 은평, 중소도시형 : 충남 천안
 -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과 성과분석 최종 매뉴얼을 개발함.
-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
 - 장애등급심사 개정 및 등록제 대안 연구를 제안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편 시범사업 운영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사업'은 장애 판정 기준의 객관성 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서비스 욕구를 통합적으로 사정 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며,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성 높은 사업임.

-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 기조 속에서 공공의 책무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응이며,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
- 지난 4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의 내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의적용사업과 시범사업 이후의 전국 사업 확대 방안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 사업 내용의 완결 성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5개년계획에서는 모의적용사업·시범사업의 연차적 확대에 이은 전국사업 실시, 이를 통한 서비스 전달 효율성 확보, 고객 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 등 세 가지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세 가지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은 첫 번째 성과목표와 관련한 성과지표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특정한 성과지표 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5개년계획 3년차인 2010년에 전국 사업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했던 당초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시범사업 실시에 머물러 있는 이행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그에 따른 사례 관리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거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애인복지 영역의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본 사업 준비 단계인 1, 2차 년도의 경우 5개년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이 80%를 상회하였으나, 본 사업 실시 해인 3차년도의 경우 결과적으로 시 범사업 실시 및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이 확보되어 집행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4차년도에 시범사업

의 실시 등이 다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외부 정책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측면이 발생했음을 감안할 수 있음.

○ 사업의 모니터링과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이후의 추진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례관리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라는 거시적 정책 기조 하에서 본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점과, 모의적용사업과 이후의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극복방안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임.

□ 성과달성도

- 모의적용사업의 확대를 거쳐 전국사업 시행이라는 첫 번째 성과목표의 달 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만 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성과목표 에 대해서는 특정한 성과지표가 없음.
- 지난 4개년 간 실시된 모의적용사업과 시범사업 실시 지역을 살펴볼 때, 1 차 년도를 제외하고는, 2차, 3차, 4차 년도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 치는 수준임.

나) 총평

□ 사업의 목적과 시의성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사업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 의 효율화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추진 성과

○ 사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관계 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의 어려움 등 추진과

정에서 나타난 대내외적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2. 소득보장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2010년 7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외형적인 측면에서 주요 선진 외국과 같이 다층의 장애 소득보 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음.
 -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낮은 국민연금 가입율과 장애연금 수급 요건 의 엄격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장애연금)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었으나, 다층의 장애 소득보장체계에서 1층의 역할을 수행하 는 새로운 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중증장애인 중 상당수가 소 득보전급여의 수급자로 편입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성격이 모호했던 장애수당이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비용 급여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장애가 초래하는 두 가지 영역의 경제적 비보장에 대해 다층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형식적 측면의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음.
- □ 그러나, 비장애인 기구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5)과 주요 지표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기존 급여의 확대 및 소득보장체계 재편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개혁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5)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3.4% 수준에 불과하였음.

○ 더불어 발달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보호자의 부양능력 상실 이후 장애아동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도입 여부와 함께 유력한 도입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민간보험방식의 연금이 실제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공적 지원 수준 및 나아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한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6)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근로무능력 장애인의 경우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장애로 인해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밖에 각종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평균 21만원7)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진됨.

□ 사업목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6) 5}개년계획에는 제도의 명칭을 기초장애연금으로 하였으나, 제도 도입 단계에서 '장애인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이하에서는 장애인연금으로 서술하고자 함.

^{7)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사업내용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8)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선정기준액)9)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급여의 경우 소득보전의 성격(91,200원, A값의 5%, 18~64세)을 지니며, 부가급여의 경우 추가지출 비용 보전(2~15만원, 소득계층별 차등지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 :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 551천원, 부부 881.6천원 이 하인 자
 -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국민연금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 5%(2012.4~2013.3 : 94,600원)
 - 부가급여: (18~64세) 기초(재가) 6만원, 차상위 5만원
 (65세이상) 기초(재가) 15만원, 차상위 5만원, 차상위 초과
 자 2만원

(특례자) 65세이상 기초(시설) 7만원, 65세이상 차상위 12만원

□ 2011년 말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09천명임.

⁸⁾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를 말함.

^{9) 2011}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임.

나) 문제점

- □ 중중장애인의 소득보장 계층 지원 미흡
 -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현재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56%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어 소득보전이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지원범위 확대 필요
 - * 기초노령연금 지원범위 : 소득하위 70% 수준
-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미흡한 장애인연금 지급액
 -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연금법에서 2028년까지 현행 지급기준을 5%에서 10%로 확대하도록 되어있으나.
 - 단계적인 실행방안 및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지급기
 준 확대가 불확실함
 - 부가급여는 2만원~6만원 수준(단,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15만원)이나.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23만원) 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다소 부족함.

3) 주요성과

-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무기여 장애인연금의 도입(2010년 7월)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 장애인연금 도입 후 1년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달성 및 수급자 확대
 (2010년 12월 208천명 → 2011년 12월 309천명, 49%증가)
 - *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장애인연금(사회부조식 무기여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62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역할을 구체화
 -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 □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 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기족과 국가·사회 가 함께 부양
- □ 권리성 강화
 -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 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 4) 평가
-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 계획의 적절성
 - 기존 장애 소득보장체계(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급여로서 장애인 연금의 도입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하

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소득보장체계는 주요 선진 외 국과 마찬가지로 제도간 역할 분담에 기초한 다차원적 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기초급여의 급여 대상을 유사급여인 기초노령 연금의 수급율과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로 설정하는 것을 제도 설계 당 시 목표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56%로 낮게 책 정되어 시행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는 부가 급여의 지급액이 당초
 초목표치인 최고 월 1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낮아져 기존 장애수당과 비교할 때 추가비용의 보전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2010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2008년부터 이루어져 온 연구 용역 및 관련 법률안 제정 등의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음.
-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기구인 기초 장애연금 도입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관련 법안 제출 등 장애인연금 시행을 위한 정책 당국의 일련의 추진 과정은 행정여건과 상황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됨.

□ 성과달성도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수를 장애인연금 도입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제도 시행을 넘어선 진일보한 성과지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적정 수급율을 최종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못 하고 지급대상자 수를 성과지표로 제시한 것은 이쉬움이 있음.

나) 총평

- □ 장애인연금 도입은 당초 5개년계획에 제시되었던 세부 일정을 준수하여 2010 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액 등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제도 설계 당시 목표로 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형태로 시행됨으로써 계획 이행의 완성도 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됨.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부모의 시망 등 부양상실 후 장애인자녀의 장기적인 생계 안정대책으로서 장애 이동 특별보호연금의 도입논의가 시작됨.

□ 사업목적

○ 부모 사후 장애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민 간, 장애아동 부모 등 당사자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제 도를 구상토록 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아동의 부모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그간 장애인부모연대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민간 보험으로서 중증장애이동의 성인기 소득을 보충하는 목적의 연금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도출됨.
 - 현재 장애인단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감원, 민영생 명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및 협의 중에 있음.

나) 문제점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보편적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하에서 장애아동의 성인기 전환 이후 부모 사망 등 부양능력 상실로 초래되는 장애인 자녀의경제적 어려움을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욕구로 인정할 것인가, 만일욕구로 인정할 수 있다면 국가의 지원 방안 및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 □ 그러나, 3차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해인 2012년에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및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간의 이행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 주요성과

□ 보편적 소득보장체계 하에서 장애아동의 성인기 전환 이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정부가 장애인 부모들의 실제적인 욕구를 인정함으로써 장애아동특별보호 연 금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 행하고 있는 것은 이행 수준과 별개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상품의 모형이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배제하고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보험료의 3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의 계획보다 크게 후퇴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부모 사망 등으로 가족의 부앙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소 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이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은 중증장애이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실제적인 욕구로서 이를 충족하고자 하 는 새로운 정책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존의 장애 소득보장체계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차별되는 독립적 제도로서 도입 및 운영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서 5개년계획에 제시된 3자간(국가, 민간, 장애이동 부모 등) 기여에 의한 연금 방식의 제도 운영이 타당한 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1, 2차년도 제도 준비 및 3차년도 본격 시행이라는 5개년 계획상에 제시 된 세부 계획이 지나치게 빠른 일정임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의 수행 및 관련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진 행되어 온 지난 4개년간의 추진 사항은 적극성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대체로 적절했다고 판단됨.

□ 성과달성도

- 5개년 계획상에는 2010년 제도 도입이라는 성과목표치가 제시되었으나 연 구용역 등 제도도입 검토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연차별 목표치를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독자적 제도 운영 및 최적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도입 목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총평

-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에 있어서 지난 4년은 중증장애인자녀를 보호하거 나 부양하고 있는 기족의 오래된 욕구로서 정책 당국이 이에 대응하는 제도로 서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금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 였으나, 연구 용역 수행과 장애인연금 및 성년후견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최적의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바,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 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간보험으로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상품의 모형을 개발한 것은 계획 이행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 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3. 의료보장/장애인보조기구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재활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 및 사회복귀로의 인식 변화
 - 질병 및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 발생의 증가로 지속적 재활서비스 및 건 강관리에 대한 수요의 증가
 -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신 의료재활기술의 연구 및 임상기술 발전 전략 필 요
 -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한 체계적 사회복귀로의 인식 변화
 - 장애인의 고령화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증가로 인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 강증진 프로그램 필요
- □ 통합적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적 건강권 확보로의 변화
 - 생활수준, 지역 및 장애유형 간의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급 및 수요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는 포괄적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
 - 재활의료서비스의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측면의 문제 대 두되어 인증제 등을 통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역할 설정 및 서비 스의 표준화 필요 증가
 -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의료서비스를 관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
- □ 재활의료분야의 지역적 연계 및 글로벌 협력 역할 증대
 - 재활의료 서비스 기술, 보조기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통한 개발도상 국의 지원 수요 증가
- □ 보조기술의 발전과 장애인 보조도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보조도구의 보급 및 품질 관리 향상이 사회통합에 기여함에 인식 확신

- 재활보조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보조도구의 개발 증가와 임상 적용 의 기회 확대
-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2008), 다른 복지욕구에 비해 '의료보장 욕구'가 가장 높았고, 이러한 장애인의 의료보장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사업목적

○ 국립재활원 기능 확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 강, 재활사업보건소 운영 등 의료자원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을 강화하는 것임.

□ 사업내용

- 국립재활원 재활병상 확충(200—300병상), 전문재활센터 신설, 국립재활연 구소 개설·운영을 통한 재활서비스 조사 · 연구 강화, 6개 권역 재활병원 건립 지원(150병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지역사회 중 심 거점 재활 보건소 운영
- 2) 현황 및 문제점

70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가) 현황

- □ 국립재활원 조직 및 기능 개편
 -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의료 지원 기능 및 사회복귀 지원 기능 강화
 - * 조직 내 공공재활의료지원과 및 사회복귀지원과 신설
 - 공공재활의료 총괄 역할(control tower) 수행기관으로 기능 개편
 - *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발전위원회 운영 및 권역재활병원 전문적 관리 기 준 마련 예정
- □ 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 2012년까지 6개 권역 재활병원 준공개원 예정

〈표 2-1〉 권역재활병원 준공·개원 예정

구분	경인	영남	강원	충청	호남	제주
개원 (예정)일	'10.9월	'11.10월	'12.7월	'12.9월	'12.8월	'12.12월 (준공예정)

- ※ 시행 근거: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05,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복지법 제18조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운영
 - 2012년 현재 60개소에서 2013년 70개로 확대 운영 예정

나) 문제점

- □ 급성기 환자 대상의 중간단계 재활전문병원의 부재
 - 중간단계 재활전문병원의 부재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그 역할 이 분산되어 포괄적 재활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 통합적 재활의료기관 인증 부재○ 기관간 인증 목적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재활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맞는 통합인증체계가 부재
□ 포괄적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미흡
○ 병상 수 기준으로 의료재활서비스의 양적 공급은 충족되었으나 서비스 제
공단위 간 연계체계 부재로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문제
□ 지역 및 분야별 의료재활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 발생
○ 의료재활서비스 공급의 도시지역 집중으로 의료재활서비스 취약지역 발생
○ 수익성이 떨어지는 특정 분야 의료재활서비스의 공급 부족
3) 주요성과
□ 국립재활원 기능 확대
○ 재활병상 확충(200→ 300병상) 및 전문질환센터 신설
□ 권역재활병원 건립지원
○ 6개 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427억원)- 경인권역재활병원 준공 및 진료개시(2010년 2월)
· · · · · · · · · · · · · · · · · · ·
 영남권역재활병원 준공 및 진료개시(2011년 9월)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 2008년, 증개축 1, 개보수 1, 장비보강 7개소 지원(669백만원)
○ 2009년, 증개축 1, 개보수 1, 장비보강 7개소 지원(1,419백만원)

○ 2010년, 개보수 4, 장비보강 5개소 지원(1,160백만원)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운영
 - 2011년, 전국 16개 시·도 45개소 운영 → 60개소 확대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 의료보장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및 권역재활병원 등 재활병상 확충, 지역사회의 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을 통해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은 적절함.
- 목표달성을 위해 권역재활병원 건립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운영 등 성과지표로 제시하였으나 각각 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연계성이나 구체성은 미흡함. 그러나 성과지표 로 기존 재활병상 충족율에서 권역재활병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의 변경 등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이 국립재활원 기능확대, 권역재활병원 건립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화중심재활시업 거점보건소 운영에 대해 년도별로 적절하게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권역재활병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계로 예산을 당초 3년차 분할지원에서 5년차 분할지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함으로서 병원공사계획이 변경되어 지자체에서 계약발주 지연 등 건립 지연됨.
- 국립재활원,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의 재활의료서비스 전 달체계 구축이 명확하지 않고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재활원의 역할 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상태임.

□ 성과달성도

○ 성과목표가 병상확충에만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한 지표가 수립되지 못한 점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양적인 지표에만 국한하지 않고 권역재활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 등 재활의료의 질적 향상과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총평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재활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매우 우수함. 또한, 추진일정의 준수나 예산의 확보는 년차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립재활원의 병상 증축도 계획대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추진은 원만하게 이루어짐.
- □ 하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재활의료전달체계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 추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적 지원현황이 포함되지 못함. 또한 국립재활원의 총괄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의 행정여건 개 선은 확립되지 못하였음.
-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의 적기 지원을 통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요구되었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저소득층을 포함한 보편적인 의료비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결혼연령의 증가, 결혼 후 첫 임신까지의 기간 증가 등사회적 요인의 증가로 인하여 고위험 임산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 사업목적

○ 신생아 등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출생 후 조기검진하여 치료 개입함 으로써 영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성장 발달을 도모하며, 미숙아 및 선천 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집중지원을 통한 치료로 신체적·기능적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는 것임.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법적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와 동법 시 행령 제13조이며, 사업추진방식은 지자체 보조 방식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현황

○ 장애를 시전 예방하여 영유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발생빈 도가 높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 스틴뇨증, 단풍단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을 실시하고 있음

⟨표 2-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검사인원	454,895	439,387	467,957	465,175
발견	355	397	412	482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현황

○ 선천성 난청으로 인한 언어발달 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각 선별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최근 고령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의료기술 발달로 미숙아 등 의 평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3) 주요성과

- □ 전 신생이를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6종에 대한 무료 검사 실시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특수조제분유와 햇반 및 의료비 지원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감소 및 신생아의 정상발달 도모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체중별 의료비 차등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500~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
- □ 선천성 난청으로 인한 언어 및 지능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검

사 실시

○ 저소득층 신생아 대상(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선천성 난청청각선별검 사 및 확진 검사비 지원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신생아 등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출생 후 조기 검진하여 치료개입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집중지원은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위한 필요한 사업으로서 적정하게 수립되었으나 성과목표 설정배경과 관련하여 제시한 인구자질향상 도모는 윤리적 관점과 충돌 할 수 있는 점이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청각선별검사 무료 추진이 2009년부터로 계획되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차년도로 계속 사업이 이관되고 있고,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종목을 6종에 서 43종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홍보나 의견수렴 노력이 미흡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청각선별검사 무료추진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43항 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준의 제시가 미약하고 사업의 달성을 위 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수요추계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총평

- □ 전반적으로 사업의 계획과 성과지표는 장애발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었음. 하지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도별 사업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초기에 설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추진일정에 구체적으로 무료 청각선별검사 달성상황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항목의 확대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 또한, 예산확보와 연계하여 사업의 범위나 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의견수렴이나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확보 예산을 통해 꾸준히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을 감안하여 달성율을 보통으로 평가함.
-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장애인의 89%가 후천적 장애이고, 전체 인구의 4.6%가 장애인 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 발생으로 인한 의료 및 재활치료 비용의 과다 발생, 가정파탄 및 치료·회복 불기능 사례가 발생하므로 인해 '예방이 유일한 치료'라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선천적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관 등 공 공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후천적 장애예 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는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국 가 차원에서 장애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장애발생 감시체계의 구축, 장애예 방 연구의 총괄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촉진할 수 있는 '장애예

방센터'설치가 필요시 됨.

□ 사업목적

○ '장애예방센터' 설치 등 전국적인 장애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차원 에서 후천적 장애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교육 인프라 확대와 관련하여 국립재활원내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는 재활교육훈련 시스템을 확대·개편·전문화하여 재활전문교육훈련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임. 교육 확대 제공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요원을 대상으로 재활전문 지식과 기술,최신 정보 등을 습득하게 하고, 자질을 향상시켜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훈련 및자립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의 복지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역사회 재활사업 담당자의역량강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효과적인 장애예방체계 구축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무총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의 장애예방위원회(가칭) 설치, 실행기관으로서 장애예방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장애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실시 규정 마련, 그리고 장애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애예방위원회 및 센터 설치와 장애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임.
- 재활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문화하여 재활전문교육훈련의 중심기관과 관련하여 2008년~2009년까지는 교육 인프라 확대 준비단계로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 설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2012년까지는 기반조성단계로 직제 개정, 인력·시설·장비 확보, 장애인복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2010년~2012년 사업활성화 단계에서는 교육훈련 활성화·전문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활서비스 제공 확대하는 것을추진함.

○ 이와 함께 교육 확대 제공에서는 재활전문요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 및 최신 정보 등의 자질 향상 교육 실시,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장애 인식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확산을 위한 장애체험 교육을 확대하며,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사업 관련 교육과 장애인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훈련 및 자립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및 개인욕구를 고려한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 교육을 실시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현재 시행중인 사업 내용 및 실적
 - 시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17조(장애발생의 예방)
 - 장애발생예방사업 실적
 - 장애발생예방교육(467회, 65,255명)
 - 장애발생예방강사 양성 및 관리
 - · 강사양성교육(2회, 22명)/강사연수교육(3회, 26명)/강사회의(4회, 분기 별, 연인원 59명)
 - 장애발생예방사업 간담회 등
 - · 장애발생예방 간담회(1회), 자문회의(1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워크숍(1회) 등을 통한 정보 나눔의 장 마련
 - 유공자 표창 등 사업의 활성화 도모
 - · 장애발생예방교육 유공자 표창(보건복지부장관표창 3명, 국립재활원장

표창 4명)

- · 장애발생예방교육 우수소감문 선정 표창(금상 등 30명 국립재활원장표창)
- 장애발생예방 홍보 및 기타
- · 장애발생예방 홈페이지 운영(www.noinjury.go.kr) : 정보제공 등
- 교육안내 리플렛 배부(약 6만매)
- · 교육자료(선물 등) 배부(약 6,000개)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결과(장애발생예방사업) 우수등급

나) 문제점

- □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큰 호응 및 교육확대를 얻고 있으나,
-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예방체계 및 장애예방센터 등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전국적 추진체계가 미약하고 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발생예방 확대에는 한계에 도달함.

3) 주요성과

- □ 장애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서울, 경기지역 교육 확대 및 장애예방강사 지속 발굴 및 양성
 -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장애인 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건립 추진
 - 장애인 재활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합적 재활체육교육훈련시설 건립 설계 및 착공(공사기간 : 2011년 11월~2013년 7월)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발생률을 줄이고 그로 인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장애발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예방 연구를 충괄하고 장애예방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촉진하기 위한 목표가 잘 수립되어 있고 장애예방 네트웍 구축을 위한 장애예방 위원회 및 장애예방센터 설립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절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장애예방센터의 설립과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의 설립에 대한 연도별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일정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 하고 센터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
- 교육시스템 전문화의 경우 다양한 교육자원과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부분을 활용부분을 고려하여야 함.

□ 성과달성도

- 5개년계획 사업에 명시된 장애예방센터 설립과 근거규정 마련, 장애예방위 원회 구성 등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못하나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는 장애 예방사업의 경우 목표설정에 따라 원활히 진행됨.
- 국립재활원내 장애인 종합재활훈련시설 건립은 체육시설을 중점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재활전문교육 훈련센터와 연관성이 미약하며, 국가 차원의 장애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목표가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적 사업운영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여 제도적인 접근은 취약한 것으로 보임

나) 총평

- □ 장애예방 관련 사업은 장애발생 원인이 중도장애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 있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내용도 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예방센터나 장애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교육훈련의 전문화에 대해서도 제시되어 있어 우수하였음.
- □ 하지만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계획에 근거하기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국가적인 장애예방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국립재활원에서 시행 중인 장애예방교육 위주의 사업도 그의미가 크고 특히 휠체어 장애인 강사 활용은 그 영향력이 평가됨. 하지만 예산의 확보와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 재활전문교육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 TF팀 운영 등 적 극적인 대응이 돋보였으며, 성과지표의 달성에 있어서는 국립재활원 자체 사 업 계획은 무난히 이행되었으나 5개년계획의 이행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하지 만 종합훈련센터 건립은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 을 수 있겠음. 또한 장애예방과 재활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도가 활발치 못한 점이 성과 달성도의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됨.
-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산업화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개 장애인에 게 적합한 양질의 보조기구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임.

□ 사업목적

○ 보조기구 서비스 사례관리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안전 하고 편리한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급여로 지원하는 보 조기구의 이용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우수한 보조기구를 보급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있음.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 지원사업 실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 장애인보조기구의 제품·부품을 개발 지원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 국립재활원(중앙센터)을 시작으로 5개시도(광역센터)에 시범사업을 점진적 확대* 운영
 - * 국립재활원(2009년)→대구(2009년), 대전(2010년)→광주(2010년), 부산 (2011년)→경기도(2012년)
 - 장애인보조기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광역센터에서 공적급여(장애인

보조기구교부사업) 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

- * 1.107명에 대해 상담, 평가, 보조기구적용 등을 실시
- 또한,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전문상담 및 평가), 정보제공, 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자원 발굴, 광역센터별 특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

- 품질관리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으로 품질 가이드라인(안)* 마련
 - * 욕창방지용 방석, 보행보조차, 목발, 정형외과용 구두(2010년)→자세보 조용구, 기립보조기구(2011년)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을 위해 업소 품목 등록제* 실시
 - * 자세보조용구 10개 제작업소 및 55개 유통업소 등록, 보행보조차 39 개 품목 및 욕창방지용방석 29개 품목 등록
-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등록된 업소에 대한 사용성 평가, 시험검사, 실사평가 실시
 - 등록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실시
-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 시험센터 기반 마련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차상위 이하 등록 장애인(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에게 12개의 보조기구를 교부
 - * 12개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 및 커버,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자세보조 용구, 기립보조기구,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인식기, 진동시계, 음 성탁상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휴대용무선신호기, 음향신호기 리모콘
 - ※ 시행근거(법적 근거 등):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나) 문제점

-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광역별 센터 구축의 일정 지연
 - 장애인 보조기구의 의학적 처방 및 사후 훈련의 미비
-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좀 더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지원금액의 조정이 필요함
 -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품목 및 금액의 대규모 변동은 어려움
 - 3) 주요성과
-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 국립재활원(중앙센터)을 시작으로 5개 시·도(광역센터)에서 시범사업 실시 * 5개 시·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 실시
 - 공적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품목을 우선으로 품질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업 소품목 등록제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실시
 - * 자세보조용구 10개 제작업소 및 55개 유통업소 등록, 보행보조차 39개 품목 및 욕창방지용방석 29개 품목 등록
-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 실시
 -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요가 높은 품목을 다 양화하여 지원 실시
 - * 품목 확대 : 2008년(5종 /9종), 2010년(9종 /12종)

지원금액 상향: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2009년 16만원→2010년 25 만원→2012년 35만원), 자세보조용구(2009년 45만원→2011년 80만원 →2012년 120만원), 기립보조기구(2011년 120만원→2012년 150만원)

□ 장애인보조기구 R&D 지원 실시

- 매년 평균 10개 이상의 R&D지원을 통하여 보조기구 개발 촉진
 - * 2008년(10개), 2009년(13개), 2010년(13개), 2011년(13개)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개 장애인에 적합한 양질의 보조기구 보급이 필요하므로 보조기구 서비스 사례관리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보조기구의 공적급여 확대 및 우수한 보조기구기술개발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임.
-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구 품질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세부 목표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구체적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 일정이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 으나 보조기구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 결과를 제시하지 못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연차별로 목표의 구성이 일치하였으나 양적인 지표와

다불어 시범사업 형태의 적절성이나 향후 전국 확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야 함. 보조기구 관련 제도 및 법률의 통합노력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

나) 총평

-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한 보조기구 정보제공과 보급은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향후에 더욱 확대되어야 할 부분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업내용 및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었음.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예산확보나 연도별 진행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부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
- □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여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함.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돋보였으며 상화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임상과의 연계 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4. 주택 및 주거서비스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전환 서비스 확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정상화(Normalization)로의 지향
 - 소규모 미신고시설 제도권 유입 지원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기능부여
 - 거주보호시설 및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확충

- 주거보호서비스 입소자격 확대
- □ 장애인 거주시설 효율성 제고
 - 시설 평가 시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시설 신축비 등 예산지원 시 지역별 시설분포를 고려한 균형 배치
 - 재활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15만명(전체의 4.59%, 2007년 3월), 장애인 가구수는 194만 가구(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달하는 실정이며,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 1인가구는 21만 가구(11%)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는 안전성·편리성을 갖춘 주거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장애인의 상당수가 주거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사업내용

-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속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것임.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주거복지의 필요성

-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문제는 빈곤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즉, 주거가 재산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독립이 어려워 가족 의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 가구수는 국민가구의 12.3%인 200만 가구로 주거안정 수요는 15.4%로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가구의 2.2%가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영구임대주택 이용은 5.3%로 나타남.

□ 현행 제도

- 85㎡ 이하 공공분양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장애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고, 국민주택의 2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음. 2008년 까지 6028호가 공급되었고, 맞춤형 임대주택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다가구매입 544호 전세임대 449호 그룹홈 177호를 공급함.
-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무료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경우 차상위 이하의 경우 연간 380만원을 주택개조 비로 지원하는데 연 1,000가구에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법적・제도적 문제

- 주거를 재산의 단위로 보는 것이 통상이지만 일정 주거 재산은 생활필수로 인정해야 하므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공제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함.
- 주거보급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급은 장애인 별도의 의무보급율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정책이므로 보급속도가 느린 상태이므로 장애인만을 위한 보급을 정하여야 함.

□ 사업량의 부족문제

- 탈가족, 탈시설 후의 장애인 주거지원 대책이 매우 부족하여 임시 주거시 설이 강화되어야 함.
- 장애인이 필요한 주거보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장애인은 매우 열약 한 주거환경에 있게 되므로 건강악화의 문제, 편의시설을 갖춘 환경의 미 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주요성과

□ 주택 보급

○ 85m² 이하 공공분양임대주택의 10%, 국민임대주택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함.

□ 주택 개조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 거주세대에 총 3,201건년이의 편의시설 설치

□ 주거지원 관련 법 제정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011년 12월)
- 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안전기준 제 정·공고(2011년 5월 27일)

¹⁰⁾ 한 가구의 여러 편의시설을 각각 계산한 것임.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에게 매년 2만호를 공급하되, 다가 구매입 공급계획으로 2008년 6,500호, 2010년 6,500호, 2012년 65,00호를 목표로 함.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 공급계획으로는 2008년 5,800호, 2010년 5,800호, 2012년 5,800호를 목표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사회복지와 연계된 주거서비스 향유를 가능하도록하고 편의시설을 무료설치하여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지표로 설정함.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목표가 아니라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목표 라서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추진이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부처에서 보급 숫자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지 않아 보급현황을 파악하 기 어려움.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충분히 보급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움.
- 장애인에게 주택을 보급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생활의 편리를 도모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장애인 입주자가 요구할 시 수용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음. 보건복지부 에서 농어촌 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주택의 편 의성은 시너지 효과를 봄. 집안에서의 편의시설은 갖추었으나, 공동주택의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의 편의시설의 미설치 등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기도 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노인 등의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

- 여 시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장애인 주거안정 정책을 펼 수 있게 됨.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안전 기준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 평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이쉬운 점임.

□ 성과달성도

○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보급되는 주택에는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에게 보급된 주택은 취약자 대상의 보급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장애인 주거지원의 달성도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움.

나) 총평

□ 주택보급과 편의시설 설치

○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의 악화로 주택보급이 점점 둔화된 것이 사실임. 국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여 공급하였다면 경기활성화와 복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다가구 매입 전세주택의 보급은 1층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저층으로 건축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형태의 건축이 되어 분양을 받아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됨.

□ 주거지원 관련 법 제정

○ 장애인과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큰 성과로 인정하나, 주거약자의 개념에 탈북자(새터민), 외국 이주민, 다문화가정, 노인 등 모든 약자가 포함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가 아닌 총괄적으로 복지를 위해 5%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보급받기가 어려워진 점은 미비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으로의 기능의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 반영, '정상화(Normalization)'로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사업목적

○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 및 시설 서비스 제공체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대규모 시설 개편, 소규 모 거주시설 확충,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 거주시설에 대한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생활시설과 지역사 회재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주거)서비스를 제 공히는 시설은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임. 동일한 거주기능 의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
- 시설에 대한 구분의 기준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입소기간, 비용부담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교육 또는 훈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거주시설 설치 기준

○ 거주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 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이용자 요건 및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의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 는 장애인이어야 함.

□ 종사자 기준 및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주시설 종사자 기준은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규모 또는 시설특성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나 대규모 시설에 유리한 제도 설계로 되어 있음.

□ 정부 예산지원 기준 및 현황

-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생계비, 시설운영비(인건비, 관리비), 기능보강사업 비로 구분되어 보조되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법령 및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해당 직종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며, 관리운영비의 경우 지역마다 차 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시설 당 기본 운영비는 연 약 3천만 원 정도이고 입소 인원 1인당 월 약 50만원(생계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기능보강사업은 시·도의 사업 수요량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top-down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나) 문제점

□ 거주시설 서비스 개념과 범위 측면

- 장애인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시설은 생활시설과 마찬가지 로 거주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 류되어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이나 인력기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정 책적 통합성을 저해함.
- 거주시설의 기능을 거주기능 이외에 사회재활,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의 모든 서비스를 시설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불필요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분리 초래함.

□ 공급량과 공급방식 측면

○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공급량을 확충하는데있어 여전히 대규모 생활시설 위주의 정책에 우선하고 있음.

□ 예산지원방식 측면

○ 예산지급을 정부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지원방식이 시설의 거주자 수에 비례한 인원비례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음.

□ 서비스 과정 측면

- 거주시설 입소대상자를 무연고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한편으로는 미신고시설의 발생을 용인하고 있음.
- 서비스 진입과정에서 입소 자격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고, 신청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서비스의	괴	츠며
- 1		1	7 7

○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표준서비스 내용과 기준이 부재함.

□ 이용자 권리보장 측면

- 이용자 선택이 배제된 시설이용 절차 및 서비스 내용
- '장애인 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채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용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등의 권리보장 방안은 미비함.
-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 매뉴얼이 부족함.

3) 주요성과

-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연구용역 및 거주시설 개편작업 실시 (2008년)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정 표준화체계 마련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 거주시설 개편작업
 - 장애인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거주시설로 일원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추진
-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연구용역 및 시설 소규모화 추진 등(2009년)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안내 지침 반영 작업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 마련

- 시설 소규모화 추진
 - 사업지원기준 정원 30인 이하로 사업지침 반영
 - 시설 입소장애인의 자립 및 기존 대규모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체험
 홈 확충사업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관련 정부입법 발의
 - 시설의 서비스 및 기능을 중심으로 거주시설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장애 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및 인권보호 권장기준 사업안내 지침 반영 등(2010년)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비용산정 연구 용역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 및 기능 정립
 - 서비스 비용산정을 통한 비용 분담 방안 도출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권장기준 사업안내 지침 반영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 사업안내 지침 반영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관련 의원입법 발의
 - 시설의 서비스 및 기능을 중심으로 거주시설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장애 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정하균 의원)
- □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등(2011년)
 -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거주시설 유형으로 통합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선택권 보장
 -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개편
 - 시설이용 장애인 권익보호 조치 및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산과 소득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결정 부과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09년 이후 신규 시설은 시설당 입소인원을 30인 이하로 제한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권장)기준 지침 시행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 지침 시행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비용 산정 연구 용역 실시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은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개별지원 및 자립생활모델로 전환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전환, 시설 서비스제공 체계 및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화 및 정상화 논리를 반영한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1차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정 표준화체계 마련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차년도에 서비스 최저기준의 시설 지침 반영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시설 30인 이하로의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소규모 시설로 체험홈을 확대하였음. 3차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및 인권보호 권장기준 사업 안내 지침의 정비 및 배포를 하였

고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관련 의원입법을 발의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을 위한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등 시설운영지침 정비와 시설 개편을 위한 법령 작업이 추진되었음. 4차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거주시설 개편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의 총회 및 한장협 분과회의에 참여하여 거주시설 개편에 대한 설명 회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음. 또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보호 권리기준에 대한 설 명을 실시하여 질적 서비스 모니터링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미신고 시 설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체계 일원화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강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으로 두 었으나, 장애인정책발전 계획과 사업 성과지표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으로 정량적 산출이 기능하게 됨에 따라 추후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정책발전 계획과 사업 성과지표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으로 정량적 산출이 기능한 부분으로 잡았으며, 정성평가 부분에 대한 정량 평가 도입 을 통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나) 총평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은 장애인복지 환경적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 및 사업달성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거주시설 개편으로 당초에 목표로 했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기결 정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며 이러한 문제는 양적인 소규모화를 달성해 나가는 것 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적 삶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을 던지고 있음.

5. 자립생활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자립생활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관심 증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진전된 자립생활의 가능성 확보
 - 성년후견서비스의 제도화로 법률행위 영역에의 자립생활 확대 가능성 진전
- □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전환 서비스 확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돌봄의 사회화 추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64세 이하의 장애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 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2010년 6월까지 장애인 장기요양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국회에서 부대결의(2007년 4월)됨에 따라 추진됨.

□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신변처리·이동보조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일상생활 등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운영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 방향을 결정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운영(2008년 2월~) 및 시범사업(1차: 2009년7 월~2010년1월, 2차: 2010년 9월~2011년 3월)을 거쳐 활동보조사업을 확 대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방향 결정(2010년 6월)
-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2007년 4월)를 공식적인「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도입하고자,「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4일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2010년의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제공서비스도 기존의 신체활동·기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등의 활동보조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추가됨. 또한, 급여규모도 월평균 58만원에서 69만원으로 확대됨.

나) 문제점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 어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자체의 도입이라는 제도의 시행 자체에 대한 문제 점은 없음.

3) 주요성과

- □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2008년 1월)
 - 2009년 하반기 시범사업실시 위한 모형 마련
 - 2010년 6월 장애인종합복지대책 국회보고 기초자료 제시
 - 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운영(2008년 2월~12월)
 - 정책토론회(2008년 6월), 공청회(2008년 11월), 여론조사(2008년 12월) 등 실시
- □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도입 추진(2009년)
 - 1차 시범사업 실시 6개 지역 539명 대상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 운영 전체 회의 3회, 총괄운영반 회의 8회 실시

- □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모형의 적정성 검증 및 실시방안 마련(2010년)
 - 장애인은 요양 외에도 자립 및 사회참여 욕구가 큰 점을 고려하여 활동보 조사업 확대 모형으로 추진 방향 결정(2010년 6월)
- □ 도입 방안 국회 보고(2010년 6월) 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및 2011년 예산 777억원 편성 (2010년 12월)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국회의 노인장기요양법안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의 요양욕구에 대응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 본 사업의 목적은 5개년계획의 목표와 일치함. 특히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학계, 장애계 등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1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2안)의 2개의 방식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 고,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모형의 적정 성 및 본 사업의 실현기능성을 검증함. 평가결과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1안)으로 도입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2차 시범사 업 실시 및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연착륙방안 등을 검증하고 준비하였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시범사업 시행 및 본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 장애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이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운영매뉴얼 제작, 지자체 공무원, 관련전문기관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진행되도록 노력하였음.
- 공청회 및 전문가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및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 및 본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기회를 적절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시범사업 진행과정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급판정도구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인정조시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요구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였음. 시범사업 진행과정 중 이용자 대상의 모니터링 등의 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본 제도 도입에 반영토록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달성도

- 본 사업은 활동보조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최중 중 1급 장애인 중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 비율로 설정하고 있으나 향후 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지표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목표설정의 근거가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하여 목표 산출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나) 총평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있어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

인의 자립생활이라는 목표가 사업목적에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며, 특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장애 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마련하였고, '장애 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시범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 절치를 거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한 점, 이러한 논의 절차와 결과 보고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었으며 이에따른 후속조치도 추진되 었던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함.

- □ 시범사업 지역의 관련 전문기관의 실무자들과 지자체공무원, 서비스제공기관 종사 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 였으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시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 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도 좋은 평기를 받을 수 있음.
- □ 다만, 목표산출의 근거에 있어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서비스 이용 장애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산출 근거의 객관적 제시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의 한계가 있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장애,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스스로 법률 행위가 어려운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고자함.

□ 사업목적

○ 성년후견서비스 도입(민법 개정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자'로 한정된 범주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확대하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또 는 일시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2010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2011년 민법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로 개편
 -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어 실제적 권리보호가 어려웠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로 개편
 - * 민법개정안(성년후견제) 공포 및 시행(2011년 3월 7일, 2013년 7월 1일)
- □ 현재 성년후견제 시행을 대비한 준비 시행(2013년 7월 1일)을 위하여 성년후 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 방안,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계 법령 정비 등을 비롯하여 법무부대법원 및 부내 관련 부서 등과 지속적 논의 중에 있음.

나) 문제점

□ 민법 개정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인이 있어, 성년후견서비스 시행 시성년후견서비스의 제공 범위 확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수렴이 필요하여 환경적 요인의 제약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

□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개정민법은 개략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대법원 은 후견심판 절차, 등기관련 후속조치만 준비 중이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3) 주요성과
 □ 복지분야의 성년 후견제도 도입 논의(2008년) ○ 복지분야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모형 개발 ○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사례 수집 등
 □ 복지 분야의 성년후견제도 정책연구 지원(안) 마련 등(2009년) ○ 민법개정위원회 중 무능력자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운영 ○ 공청회 개최(법무부 주최) ○ 복지 분야의 성년후견제도 정책연구 지원(안) 마련 - 법무부 제출
□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2010년)
 □ 민법 개정 통한 성년후견제 도입 등 실시(2011년) ○ 민법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 도입 -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어 실제적 권리보호가 어려웠던 금 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로 개편 ○ 성년후견제 시행대비 추진과제 선정 - 성년후견인 양상교육 체계구축, 후견업무 수행 및 이용 지원, 성년후견
인 관리·감독 체계구축, 법·제도적 기반마련

-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법령정비 검토 착수
 -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법령 중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 한 규정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의 한계로 성년이 되었음에도 장애,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스스로 법률 행위가 어려운 이들의 권리보 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도입을 계획한 것은 의의를 지님.
-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자'로 한정된 범주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확대하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또 는 일시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성년후견서비스를 도입(민법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로서 기존 법률안, 법무부 용역안, 법원 시안 등을 비교 분석하고 성년후견제에 관한 보건복지 분야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세부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성년후견서비스의 도입을 성과목표로 설정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성년후견서비스 도입을 위해 단계별 일정에 따라 복지분야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모형을 개발하고, 민법개정위원회 중 무능력자 제도 개선 분과의 운 영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안을 마련하 여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됨.
- 복지분야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선 진사례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특히, 민법개정안이 2011년

2월 국회에 통과되는 성과를 보임.

□ 성과달성도

- 본 사업은 성년이 되었음에도 장애,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스스로 법률 행위가 어려운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 기 위한 것으로 성년후견서비스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하여 민 법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사업성과를 적절히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계획 수립 당시의 성과목표는 장애인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판단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나 신상관리 등 성년후견인 서비스에 대한수요부응 및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인권과생활보호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성과목표에 대한제시가 필요함.

나) 총평

- □ 성년후견인 제도의 경우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견 수렴, 대안 마련 및 민법의 통과 등으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그러나 성년후견인 제도가 장애인 분야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노력도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의 주요한 성과로 측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영역에 대한 노력과 성과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 초창기 도입 배경에도 장애인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판단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나 신상관리 등 성년후견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부응 및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인권과 생활보호라고 기술되어 있어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제시가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됨.
- □ 사업내용
 -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0~100시간(2011년)의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 보조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의미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2007년 시작된 활동보 조서비스 제도가 모태가 되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의 논의를 거쳐 정 착된 제도임.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내용
 -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0~100시간(2011년 기준)의 신변처리·가사지 원·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 독거장애인의 경우 최대 180

시간 지원

- 2008년 20,000명, 2009년 24,000명, 2010년 28,000명, 2011년 32,000 명으로 매년 대상자의 지속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함.
- 수급자 선정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 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하며, 시군구 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함.
- 월 급여량은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로 구성됨
 - 기본급여 :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
 - 추가급여 : 1인가구, 출산·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8~66만원
 - * 급여량은 바우처로 생성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급여내용은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이동지원),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부과되고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의 교육(총 50시간) 이수 후 활동보조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나) 문제점

- □ 수급자격 신청자격자 대비 자격취득자 비율이 34%로 너무 낮고 자격취득자 중 실제 이용자 비율도 74.6%에 불과함.
 - 수급자격 신청자격이 있는 1급(6~64세) 장애인 : 145,177명(2011.12.31)
 - 이용률 : 장애인활동보조 85%(201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83%(2012. 2월)
- □ 2급 이하 장애인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현재 는 1급 장애인에게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 2급도 신체·정신적 기능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이 필요하나 인 정조사 기회도 주지 않고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음.

- □ 장애이동은 통학 및 재활치료 등으로 활동보조 시간이 많이 필요하나 지원시 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제한
 - 아동(월 42~62시간), 성인(월 42~103시간)
 - 1~2급 장애아동의 69%가 발달장애(지적장애 49%, 자폐성장애 20%)로 이들은 매일 여러 곳에서 특수교육,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이동과 신변처리 등의 활동지원 필요도가 큼

3) 주요성과

- □ 이용자의 여건에 따른 지원 차등화(2008년)
 - 독거 특례지원 신설을 통한 지원 확대
 - 도서 벽지 지역 이용자를 위한 교통지원금 실시
 - 서비스 단가 인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 확대(2009년)
 - 각 등급별 10시간 추가 지원 확대
 - 독거장애인 월 20시간 추가지원 확대
- □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2010년)
 -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서비스 선택권을 존중하여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제공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 * 만족도 점수가 80.6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2010년.12월 한국갤럽)
 -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
 - 노인장기요양 제외자(65세 도래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시행

- □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활동지원제도의 안정적 전환(2011)
 -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제고
 - 활동보조인 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조
 - * 이용자 만족도의 지속적 상승(한국 갤럽): 80.6점(2010년 12월)→ 82.6점(2011년 12월)
 - 분기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활동보조사업에서 활동지원제도로 안정적 전환
 -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방문조사 주체 및 적용기준 변화, 급여량 변화,
 서비스 다양화 등의 결과를 제도에 반영
 - 기존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자동 부여
 -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 행정적 준비사항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적 혼란 사전 예방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0~100시간의 신변처리·기사지원·이동보조 등 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였으며, 독거장애인의 경우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하였음.
-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충족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확대로 설정한 것 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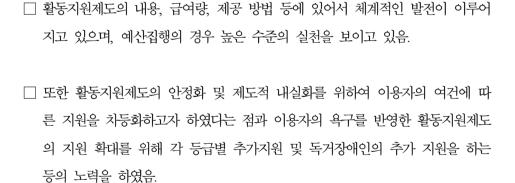
□ 추진과정의 효율성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연차적 확대를 위해 단계별 일정 등이 년차별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예산집행 실적도 양호함.
-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안정화 및 제도적 내실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여건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하고자 하였음.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각 등급별 10시간 추가 지원 및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 20시간을 추가지원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 성과달성도

- 성과목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격 대상자인 1급 장애인 의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 자격 신청의 등급 제 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대상자의 확대와 관련하여 매년 4천 명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나) 총평



□ 이에 비해	대상자를 1급	장애인에 한정시]키는 문제와	활동보조인의 >	처우에 관
한 사항의	경우도 주요한	· 노력 이슈임에]	도 불구하고 여	이에 대한 충분형	한 논의가

함께 진전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작용함.

6. 국가유공상이자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국가유공자의 인구학적 속성

- 2011년 기준 보훈행정대상자는 약 87만7천여 명이나, 독립유공자,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이들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됨.
 - 2011년 보훈연감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국가유공자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69세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만성질환의 비중이 커지고 요양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삶의 터전 인 재가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국 가유공자를 위한 노후복지지원(요양, 주거, 가사·간병 등)이 강화되어 야 함을 의미함.
- 신규로 등록되어지는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30대 미만의 젊은 경상이자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취업지원 욕구에 대비해야 함.
 - 2000년 국가유공자 등급에 포함된 7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7급이 처음 신설된 2000년에는 9,338 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47,356명으로 전체 전·공상군경의 46.2%를 차지하고 있음.
 - 군복무 혹은 공무 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보훈대상자가 된 이들 젊은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나 고령의 국가유공

상이자들과는 달리 취업이나 재활 등에 있어 상이한 생애주기별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 신체 및 심리적 재활, 사회참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연령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보훈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개인별 속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의료(치료와 재활), 보건(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예방 및 건강증진), 복지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가 단절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함.
 - 또한 고령가구세대의 증가를 염두에 두더라도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 보면 도시근로자 가계비의 100% 미만인 생계유지층의 비율은 43.8% 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보상금의 현실화 방안 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반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및 확대에 따른 보훈제도의 상대적 박탈감

- 형시영 외 7인(2010)에 의하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진행된 일반사회복지의 발전 속도를 보훈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들은 일반사회복지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함.
-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게 된 신체적, 심리적 후 유증을 극복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더욱 다양화, 다원화되어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국가유공상이자 들의 특성에 맞는 보다 특화된 보훈정책의 개발 및 일반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가 절실한 시점임.

□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의료와 복지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의료와 복지는 매우 산발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훈시스템 내에서도 중복과 배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
 - 의료 : 보훈병원(보훈공단위탁운영, 5개소), 위탁병원(전국 약 300여개소)
 - 복지: 보훈요양원(보훈공단위탁운영, 5개소), 노후복지 재가복지서비스(국가보훈처 직접 운영)
 - 이러한 서비스 지원체계는 서비스 지원 직종간의 연계가 어렵고 대상
 자의 욕구 및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상이처치료 후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거점을 마련하여 각종 보훈관련 자원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사례관리사 혹은 상담사가 상주하며 국가유공상이자들의 PTSD에 대한 상담에서 의료, 요양, 여가 등에 대한 자원연계를 실시할 수 있는 보 훈복지관련 원스톱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야 함.

□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제 선정

○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국가유공상이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확"에 ① 노후복지지원 강화, ②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실화, ③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를 세부과제로 선정함.

[그림 2-1] 국가보훈처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제



-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국가유공상이자의 급격한 고령화와 전·공상 상이처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사업목적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 강화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지원을 강화하고 노후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고령 국가유공상이자의 노후복지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저소득 거동 불편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노인·의료용품 지급, 1~2급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자원연계를 통한 재가복지지원 확대 및 노후복지지원 강화
 - 자원봉사단체의 국고보조지원을 통한 가사·간병서비스지원 확대
 - 공공기관·기업체·자원봉사단체 등의 후원과 연계한 소외된 보훈기족지원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나눔문화 확산
- □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인프라 확충
 - 기존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운영 및 대구보훈요양원 개원(2011년 7월)
 - 대전지역 추가 개원(2012년 10월) 및 경기 남양주지역 건립을 위한 부지 선 정·매입 등 추진
 - 국가유공상이자(1급~3급) 주택편의시설 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과 통폐합 실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나) 문제점

- □ 보훈섬김이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내용의 질적, 양적 부족
 - 국가유공상이자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단순 가사(일부 간병)서비스 뿐 아니라 장보기 대행, 기능재활서비스 등 서비스의 질적 확충이 요구됨.
 - 보훈섬김이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에서 서비스의 평가, 환류체계의 부재로 적재 적소에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 선행연구(이영자, 2010)에서는 보훈섬김이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만족 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횟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70세 이상의 초고령 대상자가 전체 보훈행정대상자의 45.9%인 것을 감안하면 보훈섬김이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확충하고 70세 이상의 독거 혹은 부부세대 서비스 지원자에 한해서는 보훈섬김이 서 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

3) 주요성과

□ 보훈섬김이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보훈섬김이의 정원대비 높은 현원율 유지 및 대상자 발굴지원으로 가사·간 병서비스지원 강화
 - 가사·간병서비스지원 : 13,089명(2010년 대비 2011년 2,921명↑)
 - 보훈섬김이 정원대비 현원율 : 99.7%(2010년 대비 2011년 1.7%↑)
- 서비스 지원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
 -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훈섬김이 휴대용품의 내용연한 설정(3년)
 및 구입단기(45천원→100천원)의 현실화
 - 보훈섬김이에게 손목보호대 및 허리보호대를 지급함으로써 근골격계
 부상 예방과 사기진작을 도모
- 노인·의료용품 지원
 - 느 노인·의료용품지원: 11,162명(2010년 대비 2011년 4,342명↑)

□ 주거개선사업 실시

-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편의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내 목욕탕 개보 수, 핸드레일 설치, 문턱 낮추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 1가구당 4백만원 한도 내 지원
 - 2011년 사업실적 : 국가유공상이자(1급~3급)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103가구(392백만원)

□ 보훈복지 인프라 확충

- 기존 보훈요앙원(수원 광주, 김해) 운영 및 대구보훈요양원 개원(2011년 7월)
 - 대전지역 추가 개원(2012년 10월) 및 경기 남양주지역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매입 등 추진
 - 2011년 사업실적 : 민간시설 장기요양 급여 2,737명 지원(재가 1,794명, 급여 943명)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노후복지관련 서비스의 질적, 양적 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나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자원과 외부자원의 연계 활동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사업내용면에 있어서도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양적 확충 노력과 더불어 질 적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인력의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음. 국가유공 상이자가 지금껏 생활해온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가사·간병사업은 사업 초기인 사업 2~3년차에 예정된 전문인력인 보훈섬 김이와 보훈복지사의 인력충원을 마무리하였고, 사업목표로 설정한 서비스 지원 인원 역시 현재 2배 이상의 인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노인· 의료용품 지원도 목표로 설정한 지원인원 대비 2배 가까운 인원에게 확대 ·실시하였으며, 시설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요양원 건립이 순차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주택편의시설 지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과 통폐합하여 서비스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함.

○ 요양시설의 건립비 추가 및 복지 전문인력 충원 등에 따라 미세한 예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계획된 예산과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령보훈 대상자의 건강한 노후생활 활성화를 위한 5개권역별 상이군경 복지문화대 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저소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시설요양 급여지원 확대, 5개 보훈요양원 외에 경기 남양주지역 추가 요양원을 건립하는 등 보훈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성과달성도

○ 모든 사업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부진했던 주택편의시설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과 통폐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 려는 노력을 하는 등 상황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였음.

나) 총평

- □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복지사업이 매우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면 본 장애인 정책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립된 재가복지서비스 및 요양시설복지 서비스 지원은 향후 보훈복지서비스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계획의 적절성 부분에 있어 사업목적이 매우 명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추진과정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2009년 6·25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편입에 따른 서비스 전문인력의 강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 다고 판단함.
 -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목표치로 설정한 서비스 지원인력을 점차적으로 증가 시켜 현재는 목표치의 약 2배에 달하는 인원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 나 국가유공상이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

면 본 사업은 향후에도 양적, 질적으로 보다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재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사업목적

○ 국가유공자의 증가 및 노령화에 따른 서울보훈병원의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1,400병상 규모의 3차 진료기능이 가능한 중앙보훈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훈련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재활체육시설을 건 립하여 재활체육활동 지원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중앙보훈병원 건립,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재활체육활동 지원임.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서울보훈병원의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계획한 3차 진료가 가능한 1,400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을 2011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급성기 600병상 신축 및 기존 병동 800병상 개·보수 실시

- □ 젊은 경상이 국가유공상이자의 증가에 따른 재활체육 지원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의 종합재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활체육센터를 2011 년 완공하여 운영함.
 -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 및 체육센터 운영비 확보와 우수 선수 단의 국제척수장애인 체육대회 재활체육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보훈중앙병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신규로 건립한 병동 외에 기존의 800병상 상당의 병동에 대한 개보수 공 사완료 후 보훈병원의 허브로서 중앙보훈병원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이 필요함.
- 일반 병원과 달리 국가유공상이자에 특성화시킨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차별화 전략이 마련되어져야 함.

□ 재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 보훈병원, 재활체육센터 등의 시설건립만으로 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운영에 대한 효과성(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체육을 위하여 보훈재활체육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일 반 국가유공상이자들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용이 저조한 실정임. 현재는 우수 선수진의 훈련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상이자의 재 활체육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3) 주요성과

- □ 3차 진료기능을 갖춘 서울보훈중앙병원 개원
 -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이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보훈가족의 특성에 맞는 병상운영 및 전문 진료센터, 클리닉 운영
 - 병상 증설에 따른 의료인력 정원 조정(정원 208명 순증)
 - 첨단 의료장비 구입(153종 385억)
-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종합재활체육시설 개원
 - 2011년 5월 보훈재활체육센터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비 지원(15억) 및 재활체육 장비 구입(13억)
 - 체육관 운영규정 및 전문체육인 육성 지침 등 마련
 - 보훈재활체육센터를 통해 국가유공상이체육인들의 각종 국내 외 대회 지원
 - 국제척수장애인체육대회 (2011년 4.2억)
 -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2011년 1.78억)

□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

- 각 지역의 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건강교실, 문화 교실, 복지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복지회관 운영: 국가유공상이자가 목욕탕,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오락실 등 이용
 - 1, 2급 중상이자 편의제공을 위해 리프트버스 운영
 - 무료급식 시범 운영 : 서울복지회관(75백만원)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3차 진료기능이 가능한 중앙보훈병원의 개원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훈 련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체육센터 개원 등 인프라 구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므로 본 사업의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나 상이군경복지회 관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등 복지회관 활성화 에 대한 목표설정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계획에 따라 중앙보훈병원과 보훈재활체육센터가 완공되어 개원하였고, 재활 체육대회지원 등에 대해서도 매년 설정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 반면 각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원만 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없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 성과달성도

○ 시설건립과 관련한 계획은 이미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목표가 달성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 상이군경복지회관의 2011년 무료급식 사업을 시범실시한 점은 인정하더라 도 아직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나) 총평

- □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문제해결과 국가유공상이자들을 위한 재활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의료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은 적절하였음.
 - 하지만 시설건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료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 각 지역의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훈관련 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유공상이자들의 보훈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는 생계보전 개념 의 보상으로 경상이자가 중상이자보다 상대적으로 우대되고 있으며, 신체 적 희생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상수준의 정합성 부족으로 개선이 필 요하기 때문임.

□ 사업목적

○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수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상이자와 경상이자 간 보상을 상이정도에 비례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중상이자에 대 한 실질적 보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중상이자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고 1급1항 상이자의 보상금을 국민의 평 균 소비지출액으로 인상 추진하며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호수당을 혐실화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상수준 조기 현실화를 위해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물가상 승률 등 사회지표를 반영하여 상이1급1항 보상금을 전년 대비 4.0% 인상함.
 ○ 이와 더불어 보상금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 상이등급1급 특별수당을 신설함.
- □ 상이 1급1항 중상이지는 24시간 항시 개호를 필요로 하고 있어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가족 등 기타 간병인의 철야 간병료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3%씩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문제점

- □ 선진국 중상이자 정책에 비해 보상수준이 낮으며, 하후상박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경상이자가 중상이자보다 상대 적으로 우대되고 있는 실정임.
- □ 국가를 위한 신체적 희생으로 사회적 불리를 겪고 있는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사회복지분야나 산업재해 장애급여 수준과 동등하거 나 보다 예우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함.
 - 현실적으로는 법정지출 항목으로 예산확보의 한계가 있으며, 희생과 공헌 의 정도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설정의 한계로 관련 단체 간 상당한 이 견이 존재함. 이를 해소하기 위한 타당성 및 근거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주요성과

□ 보상금 지급 수준

- 2011년 상이등급 1급1항 상이자 보상금(2010년 2,077천원→ 2011년 2,160천원)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신설(312천원, 보상금의 15%)
- 2012년 상이등급 1급1항 상이자 보상금(2011년 2,160천원→2012년 2,246 천원)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2011년 312천원→2012년 1,011천원) 지급

□ 간호수당

- 2011년 상이등급 1급1항 상이자 간호수당 1,919천원(2010년)→1,977천원 (2011년)
- 2012년 상이등급 1급1항 상이자 보상금 1,977천원(2011년)→2,036천원 (2012년)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상이자(특히 상이등급 1급 1항)의 보상금을 일반 국 민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그에 합당하는 인상을 추진해 왔으며, 간 병료 역시 노동부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현실화를 추진해 왔음. 국가를 위 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개편사업은 목적이 명확하고 적절한 계 획으로 판단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물가상승률 등 사회지표를 반영하여 상이1급1항 보

상금을 전년 대비 4.0%씩 인상하고 간호수당을 매년 3%씩 인상하여 추진 과정이 효율적이었음.

□ 성과달성도

○ 연도별 추진계획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내외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상한 점을 고려하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며, 보상금 인상과 관련하여 제시한 목표산출 근거는 객관적이고 적절하였음.

나) 총평

- □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로 특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상이자의 경우 이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1급 1항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간호수당 역시 노동부 고시에 따른 지급기준 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매우 객관적이며 타당한 지표라 고 판단됨.
 - 2011년부터는 상이 1급 특별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연차적 인상을 통한 산 업재해 장해급여 1급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중상이 자의 보상금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7. 장애아동가족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폭력방지 및 피해자)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 제정

- 장애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적 지원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욕구 증대
-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족지원체계 확립 에 관한 요구 증대
- □ 장애이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장애아동의 가족 양육부담 경감 및 사회적 돌봄 문화 정착
 - 장애아동에 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및 부모 휴식지원 서비스 확대
- □ 소비자의 자유선택권 강조와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대두로 욕구 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대
 - 기관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강화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1-5) 장애이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 부모가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와 교육, 재활서비스 제공 부족으로 장애 및 빈곤의 대물림이 초래되고 이와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책 간 연계의 부족, 장애인 기족해체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예방적 차 원의 지원 미흡,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법 등의 시행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목적

○ 장애이동과 그 기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장애이동의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정도를 완화시키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임. 그리고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의 안정성을 제고토록 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내용은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돌봄서비스 로 구성됨.
- 재활치료사업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지적, 뇌병변 등 6종)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16만원~22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등의 바우처를 제공(16만원~22만원 지원)하는 것이며, 셋째,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연 320시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뇌병 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장애)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 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부모 상담 등 각종 심리사회적 재활치료서비 스를 제공함. 1인당 월 16~22만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함.

□ 언어발달지원사업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이동으로 서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언어등록 장애인인 경우 언어치료, 독서지 도, 놀이지도 등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함. 1인당 월 16~22만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함.
- 전국사업자(대교)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 전국기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이동 양육가정으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 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 소득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가정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 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됨.
-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은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이론교육 40시간, 실습 20시간)을 수료 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에게 1인당 연간 320시간 범위 내에서 학습, 놀이 활동,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외출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전액 국비로 지원됨.
- 돌봄서비스 지원 절차와 방법은 서비스 이용문의 및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에서 이루어짐. 돌봄 도우미 파견은 전국 16개 지역 사업시행기 관(장애인부모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됨. 돌보미 수당은 1시간 당 6천원, 교통비 2,000원을 지원함.
- 휴식지원서비스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을 대상

으로 1가구당 연간 20만원 이내를 지원함. 지원내용은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기족상담 서비스, 가족캠프, 장애이가족간 자조모임 결성 등이 지원됨.

나) 문제점

□ 장애이동 재활치료서비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치료 바우처와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함. 부 처간 합의와 조정이 필요함.
- 언어재활사 이외의 치료영역별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난 립으로 전문자격기준이 통일되지 못함. 재활치료사의 4대 보험 가입 및 주 요 활동기관 지정의 필요성 있음.
- 도시와 농 어촌, 산간지역 간 서비스 격차해소의 문제가 있음.
- 기관방문 형태의 치료와 재가방문 형태의 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 해소가 필요함. 특히, 농·어촌·산간지역의 재가방문형태의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언어발달지원사업

-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부모의 노령화 된 연령으로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서비스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시각 및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체 정도를 인식하는 시기가 초 등학교 입학 이후 시기가 대부분임. 6세 이전에 시각 및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정도에 관한 조기 언어진단 서비스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비장애자녀의 연령별 언어발달 정도를 고려한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 6 세 이전의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하는 언어진단 서비스 제공 및 언어치료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학령기 이후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언어발달 촉 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일부 놀이지도, 독서지도, 학령기 이후 자녀의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는 사회서비스의 사회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돌보미의 장애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교육 참여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음.
- 돌보미 수당이 1시간당 6천원, 교통비는 2천원 지원으로 지원 금액이 낮아 참여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음.
- 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장애등급, 소득기준) 완화가 필요함.
- 휴식지원서비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음.

3) 주요성과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지원대상이 확대됨. 성장기 장애이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함. 2009년 18,005명, 2010년 32,712명, 2011년 38,250명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 2010년도에 801개소의 서비스 기관이 운영되었으나 2011년 994개소로 증가되어 운영함. 전년대비 193개소가 확대 지정되었음.
- 서비스 품질이 개선됨.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함. 2011년 8 월 4일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 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함. 2011년 12월 28일 장애아동 재활 치료시설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

○ 장애이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2010년도 79점에서 2011년도 82.8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증가함.

□ 언어발달 지원사업

- 지원대상을 확대함. 시각·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1,037명에게 언어발달서비 스를 제공하여 이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인 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함. 2010년 169명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1,037명을 지원함.
- 사업내용을 확대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독서지도, 놀이지도 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국사업자(대교)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대상을 확대함. 2010년 중증장애이동 68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였으나, 2011년 2,500명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이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함
-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를 긴급 돌봄서비스로 운영함. 2011년 12월 기준 82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장애아 기족 1,376명을 대상으로 가족 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이동 재활치료 서비스

- 사업목적과 시행배경 측면에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정도를 완화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은 적합함.
- 주요 시업내용 측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장애아동
 의 신체기능 회복과 행동발달촉진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효과적임.
- 주요 성과지표 측면에서, 지원서비스 유형 확대를 통한 이용자 증가!!)로 서비스 이용자의 포괄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임.

○ 언어발달지원사업

- 사업추진배경과 사업목적 측면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와 같은 감각장애 부모의 자녀들에게 언어발달을 촉진시켜 주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목표설정은 적절함.
- 사업내용 측면에서, 언어치료 이외에 독서지도, 놀이지도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고, 2012년부터 자녀교육에 취약한 발달장애 부모의
 19세 미만 비 장애아동까지 확대 지원키로 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자녀양육 지원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임.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 서비스와 장애아동의 부모 휴식지원서비스 목적은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기족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임. 성과목표로 장애아 동과 기족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및 확대 는 적절함.

^{11) 2008}년도 8,000명, 2009년도 10,0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초과달성하여 2009년도 18,000명 달성 2012 년 31,000명 목표 설정함:

- 성과목표 측정방법도 서비스 효과와 만족도 등 정성평가를 성과목표로 제시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를 고려하여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에 주력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됨.
- 사업내용도 장애이동 부양가족 양육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휴식지원, 긴급보호 등 다각적인 장애이가족지워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 준수면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고, 성 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이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차 년
 도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였고, 전국
 확대실시를 위한 사업설명회 및 지자체 수요조사, 현장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사업지침 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13억을 확보하여 696명에게 서비스를제공하였음. 2차 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음.
 - 장애아 양육지원사업도 1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585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수행기관 평가 및 3차년도 정책반영을 위한 지자체 의견도 수렴하였음.
 - 3차 년도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2010년도 대비 160.3%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고 31,661명을 지원하였음. 3차 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감각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음. 4차 년도 장애아기족 양육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40억을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예산집행의 효율성면에서 1차 년도의 예산집행 비율은 100% 달성, 5개년 계획 목표대비 예산확보율은 105%, 5개년 계획 목표 대비 예산집행 비율 은 105%임.
 - 2차년도 예산집행 비율은 90.5%, 5개년 계획 목표 대비 예산확보율은

126.8%, 5개년 계획목표 대비 예산집행 비율은 114.8%임. 3차 년도 예산집행 비율은 83.4%이고, 5개년 계획목표 대비 예산확보율은 191.7%, 5개년 계획 목표 대비 예산집행 비율은 159.8%임.

- 3차 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조정된 이유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2010년도에 소득기준이 70%에서 100%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인원도 18,000명에서 31,450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지원인원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중 점증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예산은 연말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불용이 예견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조정한 것으로 파악됨. 상황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파악되며, 장애아동 및 기족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확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측면에서 평가하면, 각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황과 여건변화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를 사업수 행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차 년도에 전국 확대실시를 위한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단가, 대상자 확대, 서비스 범위, 치료사 자격요건 등 서비스 공급자 기준에 대한 논의 등 쟁점사항에 대해 당사자 및 관련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종 추진방안을 확정함.
 - -2차 년도에는 전국확대 및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 또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재활치료 전문인력 자격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함. 사설치료시설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현장점검 및 교육을 실시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확대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 확대실시를 위한 장애인 부모 및 관련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욕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11년도지원대상자 확대(688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

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목표달성 비율을 평가하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2009년 10,000명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달성실적은 18,005명으로 100% 달성하였고, 5개년 계획목표 10,000명 대비 180%를 달성함. 2010년도는 서비스 31,000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달성실적은 32,712 명으로 104% 달성함. 이는 5개년 계획 목표 15,000명에 비해 218%의 추진실적을 나타내는 것임. 2011년에는 38,250명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2010년도 대비 19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994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였음.
 -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중 돌봄 서비스 지원은 2008년도 목표 637명 대 비 763명이 이용함으로써 119.8%의 이용 비율을 달성함. 휴식지원서 비스는 16개 기관 17회, 1,054가정이 이용함. 2009년도 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은 688명 목표 대비 585명이 이용함. 휴식지원 서비스는 2,155가정에 대해 63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이는 전년대비 1,506 가 정이 증가한 것임. 2010년도는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 목표치가 688 명 대비 714명 이용하여 103.7%의 이용률을 달성함. 휴식지원서비스 이용가정은 3.527가정이며 서비스 횟수는 396회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1,708 가정의 이용이 증가함. 2011년은 중증 장애아동 2,500명을 대 상으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이동을 보호하고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 공함. 이외에도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를 긴급 돌봄서비스로 운영함. 2011년도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는 826명으로 목표대비 33.04% 달성함. 또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장애아 가족 1,376명을 대 상으로 가족 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조기 안정화되고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되며, 긴급 돌봄지원 서

비스의 경우는 이용자의 급박한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시각 및 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6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초기 이용률은 낮았
 으나, 2011년 이용자 수는 1,037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

나) 총평

□ 계획의 적절성은 사업배경과 목적, 사업내용, 성과지표의 적정성 모두 계획단계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적합한 계획이라 평가됨. 추진과정의 효율성은 전국 확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됨.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소득기준 변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확대 및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또한 추진과정에서 장애아의 부모 및 전문가, 협회 등의 민간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 및 목표달성률을 고려할 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2007년 및 2010년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연계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폭력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안정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가 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활동의 내실회를 통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피해 장애인 지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지를 위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활동 내실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함.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의 기능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시무소'로 전환추진 중임.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 확충
- 장애아동 및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를 확 대 실시함.

나) 문제점

-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여성장애인이 받은 성폭력 유형으로는 강간미수 0.7%, 가벼운 성추행 3.5%, 심한 성추행 0.4%, 성희롱 3.9%, 음란전화 등 18.6%, 성기노출 2.8%, 스토킹 3.2%로 나타남
 -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지난 1년간 가구원 사이의 가 정폭력 발생률은 42.4%, 정서적 폭력 38.6%, 신체적 폭력 19.8%, 경제 적 폭력 12.1%로 나타남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함.
-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장애인상담소의 설치·신고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 시설 설치·신고에 제한규정이 없어 설치신고가 되어도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음
 -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시 지방비(기능보강비) 확보 및 장애인시설 설치 기피 분위기 등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3) 주요성과

-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방지활동 내실화
 - 제도개선, 예방교육자료 제작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3 건씩 실시함.
 - 여성장애인 전담 상담소와 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08년 6억4천만원, 2009년 6억5천 3백만원, 2010년 6억8천만원을 지원함.
 - 아동 및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전담센터를 2008년 4개소, 2009년 5개소 추가 개소하여 총 9개소, 2010년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3개소의 아 동 성폭력 상담센터를 확충함. 2011년에는 해바라기 아동·여성 통합센터

2개소를 신설하여 총 15개소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확대 노력을 하였음.

- □ 성폭력 피해이동 및 장애인 진술조사 전문인력 배치(10명)
 - 2011년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의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술조사 전문인력 10명을 배치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문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목표를 수 립함. 피해 여성장애인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 화하기 위한 목표수립이 적절함.
- 사업내용이 피해여성 및 아동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기 능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
- 성과지표로서 시설 수 확충 및 기능강화, 이에 따른 예산증액은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지역별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적절 한 노력으로 평가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세부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단계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1 차 년도에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활동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 선, 예방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꾸준히 실시 함. 2년차에는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종사자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성폭력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3년 차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안전보완대책 수립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1년차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설치, 2년차에 장애인보호시설 개설, 3년차에 성폭력 전담센터 및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4년차에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업추진일정을 준수함.

- 예산집행 효율성은, 계획대비 효율적으로 집행됨. 2008년 28억, 2009년 38.8억, 2010년 48억의 예산 계획 대비 집행예산은 2008년 28.6억, 2009년 79.6억, 2010년 82.4억으로 집행율이 2008년 116.3%, 2009년 205.7%, 2010년 100% 달성함. 2011년은 83.5억을 집행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은, 증가하는 이동 성폭력 범죄문제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여 아동성폭력전담센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확보함으로 써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2011년에는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 의 진술조사에 참여할 전문인력 양성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 적인 문제에 신속히 대응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일치하고 사업목표 달성률이 높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아동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은 건수로 측정하였음. 1차년도 목표는 3건, 달성은 4건으로 133% 달성, 2009년도 목표는 3건, 달성 3건으로 100% 달성률, 3차년도 3건 목표, 6건 달성을 200%로 센터 개소 증대로 인해 상황변화에 맞게 초과달성함.
- 장애인전담 상담소와 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기능강화는 1차년도 6억4천만 원 목표, 8억3천5백만 원 예산집행, 집행률 133% 달성함. 2차년도 6억5 천3백만 원 목표, 9억5천9백만 원 예산집행, 집행률 147% 달성함. 3차년

도 6억8천만원 목표, 10억8백만원 예산집행, 집행률 148% 달성함.

-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수는 1차년도 3개소 목표, 4개소 설치, 133% 달성함. 2차년도 5개소 목표, 9개소 설치, 180% 달성함. 3차년도 7개소 목표, 13개소 설치, 186% 달성함.
- 목표산출근거는 피해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필수지원시설 설치확충과 예산증대임. 이는 목표치 달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산 출근거임.

나) 총평

- □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대되는 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응한계획이 적절함.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목표 및 계획수립은 적절함.
 - 장애인 전담 상담소와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설치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
-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연도별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추진일정을 준수하고 효율적,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상황변화에 잘 대응함
- □ 성과지표는 적절히 수립하고 성과달성률도 높음.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1. 보육·교육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통합교육의	내실화	필요성

-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강조됨
 - 예) 스마트 러닝, 병원학교 운영 및 시각·청각장애와 중도·중복장애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필요성 등
- 통합된 장애학생의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체 제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
- 특수학급 증설 및 통합된 장애학생 지원체제 강화(예: 감각장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요구 증대

□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성과 강조

- 고등교육에 대한 장애학생 및 부모의 요구가 높아짐(장애 대학생 수 증가 추세).
 - 입학 정보 제공 및 상담, 대학 생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적 정책지원이 요구됨.
-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학습시기를 놓친 장애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

□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구축

○ 장애학생 및 특수교사의 인권 침해사례 보고가 늘어남에 따른 대책과 지원 강화 추세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질적 제고를 통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관련서비스 분야의 제도적 정착 미비 ○ 장애아동 복지지원과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현을 통해 특수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제기됨.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2-1-1) 장애이동 보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아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아 보육 시설 이용률이 일반 영유아보다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인 관련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장애아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아서비 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차법 시행에 따라 장애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제공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장애아 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 장애인차별금지 법 시행에 따른 장애아의 보육시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및 신축비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장애아 통합보 육 활성화, 장애아동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적절한 보 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2011년 12월말 현재 어린이집 4,640개소에서 14,405명의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3,562명은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이용하여 모두 17,967명으로, 2007년 12월말 20,783명에 비해 장애이동수는 감소 추세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 중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이용비율 상향
 -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이용비율 : 2007년도 $52.3\% \rightarrow 2011$ 년도 67.1%

나) 문제점

- □ 유치원 특수교육 기관에 비해 각종 지원이 부족하여, 질 높은 장애아 보육서 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아를 보육하는 교직원에 대한 처우가 동 직종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하 여 교직원의 자질 제고 및 확보에 어려움

3) 주요성과

- □ 장애아 보육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 개선
 - 장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발달지체 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이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
 - 지역별 균형있는 장애아어린이집 확충으로 장애아동의 이용권 보장 및
 시설 접근성 제고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 : 2008년 159개소→2011년 169개소

○ 장애이통합 활성화

- 장애이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로 장애이동의 일반아
 동과의 통합 보육 활성화
- ※ 장애아통합보육교사 인건비 예산 : 2008년 9,574백만원→2011년10,039백만원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아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육 시설 신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은 장애아동 보육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통합에 대한 요구와 효과가 높은 영유아기의 보육지원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특수학교 유치부의 학생 수 감소 등 최근 장애 영유아의 통합교육 요구가 높음에 비추어 볼 때,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어린이집 확충 및 통합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과정이 계획에 기 초하여 충실히 이루어졌음.
- 장애아 보육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육교사 교육 실시, 교과부와의 협조를 통한 장애아 교육 및 보육의 공동 발전 노력이 잘 이루어졌음.

	성과달성도
--	-------

○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높은 편임.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 사업도 성과지표에 포함되어있으나 목표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나) 총평

- □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우수하고 명확하며, 세부적 추진과정도 일정을 준수하 여 잘 이루어졌음.
 - 새로운 전담 시설의 신축과 기존 통합보육시설의 환경 및 인력 지원이 수 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근거하여,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

(2-1-2) 장애아동 교육 지원 강화(교육과학기술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발견과 교육 간의 연계성 미흡 및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 부재로 장애아 가정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의 시행체계가 필요하게 됨.

□ 사업목적

○ 장애영아 조기 진단 및 평가체제 구축, 무상교육 제공을 통한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라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시행 체계 필요
 - 장애 영아 조기 발견 및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지침서 개발 및 특수교육지 원센터와 지역 병원/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조기진단 및 배치체계 구축
 - 장애영아 학급 증설을 통한 무상 교육 실시

나) 문제점

□ 학급 중심 장애영아 지원 체계 이외에 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가정방문형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

3) 주요성과

-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시행 체계 수립
 - 장애 영아 조기 발견 및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지침서 개발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요구 기초조사 실시
 - 장애영아 학급 증설을 통한 무상 교육 실시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평가체계 구축, 무상교육 제공을 통한 적절한 교육지원은 사업배경 및 목적 면에서 모두 우수함. 사업의 성격상 보건복지부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급 중심장애영아 지원체계 이외에 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가정방문형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진단/배치체계 구축 사업과 무상교육 실시, 새로운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전체적으로 추진 일정이 잘 준수되었음.

□ 성과달성도

- 지침서, 기초조사 등 세부사업들이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치로 제시되어 실 행 정도를 평가하기에 적절함
- 전반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임

나) 총평

- □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 및 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이 잘 작성되었으며, 실행 정도도 우수한 편임.
 - 검사도구 개발에 따른 보급이나 실제 영아 학급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등 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임.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1) 계획의 주요 내용

ネス	Ыļ	경
T1.	וייי	l′ 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5월 25일)」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추진됨.

□ 사업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의무교육 실시방안 수립과 교원 확보 및 학급 증설을 통한 연차별 의무교 육을 실시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5월 25일)」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나) 문제점

- □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교원 확보
 - 2011년 특수교육 교원 확보율 전국 평균 56.5% 에 불과하며, 수요에 맞는 증원이 어려움.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5월 25일)」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유 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만 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010년)
 - 만 4세 이상 유아 의무교육 실시 (2011년)
 - 만 3세 이상 유아 의무교육 실시 (2012년)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법적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는 의무교육을 교원 확보 및 학급 증설을 통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내용면에서 타당하고 우수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기초조사, 방안 수립 및 의무교육 실시가 단계적으로 실행됨.
- 증설된 특수학급에 비해 특수교사가 적절히 증원되지 않았으며, 연수만으로 '의무교육'에 준하는 서비스를 모든 장애 유아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성과달성도

○ 수립된 계획상의 사업은 모두 진행되었으나, 의무교육 실행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세부적 목표 산출(예: 교원수급율, 전체유아의 배치율 등)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달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임.

나) 총평

- □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우수하나,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사업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이 우수하며, 학급 증설 및 교원 확보를 통한 의무교육 실시라는 사업 내용 또한 우수함.
 -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준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교원확 충 부족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대학생 수의 지속적 증가 및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 지원등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시 되고 있음.

□ 사업내용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의 사업내용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2008년, 2011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 터 설치 확대 등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학생 교수-학습 활동 증진을 위한 도우미 지원 및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

지평가 실시를 통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역량 평가
○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2011년 233개교 2,316명)
○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실시 (2011년 전국 4년제 대학)
□ 장애 대학생 수 증가 및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나) 문제점
의) 교계급
□ 국가 차원의 다양한 장애대학생 지원책 부족
○ 장애학생 지원센터 미설치 대학의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취약
○ 일부 대학의 지원 책무성 및 역량 부족
3) 주요성과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확대
○ (2008년) 1,957명 2,695백만원 → (2011년) 2,316명 3,670백만원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 평가 실시 대상 확대
○ (2011년) 전국 331개 대학 (최우수 10.3%, 개선요망 64%)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7 1) 02 1 Jan 11 41 C 02 1
□ 계획의 적절성
○ 장애대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때 장애대
학생의 교육 활동 및 편의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표와 부합함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의 시업 내용이 장애인 고등교육의 목표에 맞게 타당하며, 성과목표 역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대학 교직원의 장애 이해를 위한 지원 및 입학부터 졸업·취업까지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면 좋을 것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 실시계획과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장 애학생 교수-학습 지원도우미 증원의 기준이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율이 비교적 우수함.

나) 총평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 장애학생 지원센터 확대 및 교육 복지 실태평가 실시 등이 계획대로 적절히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고등교육 강 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 계획임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이 증가하

고 있으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교육활동에서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학습기회 보장 및 학교 환경에서 의 적절한 적응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포함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보급 등을 통한 장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과 통합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

□ 사업내용

○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및 자료 보급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식 개선 예술행사 개최 (1회 이상)
 - 대상별 장애이해영상물 제작 및 보급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수업 실시 및 UCC 공모전 개최

나) 문제점

□ 일반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 관련 연수, 자료 보급 등 확대 필요

3) 주요성과

- □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및 자료 보급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식 개선 예술행사 개최
 - 대상별 장애이해영상물 제작 및 보급 (중고등학생용, 유치원 아동용 및 TV 다큐멘터리 제작)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실시 및 UCC 공모전 개최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수적 증가와 이들에 대한 차별 시례를 예 방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의가 큰 우수한 사업 목적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지표도 구체적으로 잘 설정되어있음.
- 단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변화에 얼마나 영 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더라면 더 적절한 계획이었으리 라 사료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세부 계획대로 각종 행사 및 자료 제작의 진행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 성과달성도

- 정량적인 목표에 대한 달성율이 매우 높음
- 이러한 정량적 목표의 달성이 실제 일반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어떠한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있었다면 더 바

람직했을 것임

나) 총평

- □ 사업 과제의 배경과 목적이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의 목표와 잘 부합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 달성도도 매우 우수함.
 - 본래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식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다 면 좋았을 것임.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5월 25일)」 제정에 따라 장애성인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체제 구축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및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계속교육이 요구되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미비로 교육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사업목적

○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 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확대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기화를 확대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	-----

기	-)	현	횡
′	,	·	. 0

-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장애성인 문자해득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2011년) 초등학교용 12종, (2012년) 중학교용 6종,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9종
-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5개)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 등) 지원

나) 문제점

- □ 장애 성인의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 그램 부족
 - 문해교육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경험에 이르기까지 장애 성인의 개인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 장애 성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부처(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미흡

3) 주요성과

-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실태조사 실시(2009년)
- □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10년 9월) 마련
- □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연도별 지원내용 : (2009년) 61기관, 19억원 → (2010년) 125기관, 28원
 → (2011년) 127기관, 31억원

- □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5개 기관을 통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2011년~2013년)
 -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2012년~2013년)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시설 운영지원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선정기준에 대한지표, 즉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계획대로 세부과제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였음.

□ 성과달성도

○ 계획의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일치하며, 평생교육 기관 운영지원 기관 수에 서는 초과달성을 보여주었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장애성인 평 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음.

나) 총평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아직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바,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 시범 운영 및 기관 지원 등 장애성인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사업 계획과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요 구가 증가하고 있음.

□ 사업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2008년 67.3%에서 2009년 68.3% 그리고 2010년 70.0%로 증가하고 있어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특수학급 증설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 교사 배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 회교육 지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과 수요에 의한 지원 및 순회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임.

2)) 현황	민	무지	조
4	1 1 70	ス	エニニリ	ם ו

가) 현황

-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 특수학급수가 2008년 6.532학급에서 2011년 8.415학급으로 증가함
 -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3,963명이 지원을 받음
 - 일반학교 배치 감각(시·청각)장애 학생지원을 위한 점역, 확대자료, 수화 및 관련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일반학교 감각장애학 생 지원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음
 - ※ 거점센터 설치 지역 : 대전(시각장애), 경기도(청각장애), 부산(시·청각 중복장애)
-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일반학급의 담임교사가 학년별로 바뀜에 따라 특 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있음
 -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급 교사의 3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연수 이수율: 28.8%

나) 문제점

- □ 특수학급 증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수교사 충원의 어려움
- □ 일반학교에 배치된 감각장애 학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미흡

3) 주요성과

- □ 2008년 이후 매년 특수학급을 500학급 이상 증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치하고,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함
 - ※ 연도별 특수학급수 : 2008년 6,532학급 → 2009년 6,924학급 → 2010 년 7,792학급 → 2011년 8,415학급 → 2012년 8,941학급
-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의 순회교사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지원
 - ※ 연도별 지원학생수 : 2008년 611명 → 2009년 524명 → 2010년 5,059명 →2011년 3,963명
 - ※ 연도별 순회교육 교시수 : 2008년 707명 → 2009년 763명 → 2010년 1,407명 → 2011년 1,436명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지 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사업 계획의 방향성은 매우 적절함.
- 특수학급 증설 및 순회교사 배치 외에도 실제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맡는 일반교사들의 인식 및 장애학생 교육역량, 특수교사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특수학급 증설 및 순회교육 교사 확대 , IEP 시행 등이 계획한 대로 시행 되었음.

□ 성과달성도

○ 특수학급 증설'의 내용만이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고, 목표 부분에 기재 된 '순회 특수교육 지원' 'IEP 작성/운영'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성과목표 및 순회 특수교육 지원은 적절히 달성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IEP 작성/운영에 대한 성과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으 나 전면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음.

나) 총평

-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순회특수교사 배 치 및 IEP 작성 등은 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의 충실성 면에서 우수하게 이루 어졌음.
-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통합교육의 분위기 확산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이 증가 하고 있고,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됨.

□ 사업목적

○ 일반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한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제고 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하고 통합교육정책 연구학교를 운 영하는 것임.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및 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보급
 - 통합학급 담당 교사 대상 60시간 이상 연수 확대
 - ※ 특수교육 관련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율 : 2008년 13.6% → 2011 년 24.2%
 -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결과 보급을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 추진
 - ※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2008년) : 10개교(유치 2교, 초 3교, 중 3교)
 - ※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 2008년 69개 → 2009년 59개 → 2010년
 49개 → 2011년 42개
 - 교사 양성대학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과목 필수 이수 조치
 - ※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 취득 시 교직소양으로 특수교육학 개론 2학점 이상 의무 이수 시행(2009년)

나) 문제점
□ 시도교육청의 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제공의 불균형적 추진
3) 주요성과
□ 교원 양성기관의 특수교육 관련 학점 의무 이수 조치 시행.
□ 일반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한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일반교육 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는 사업목적의 의의가 매우 크며, 성과지표도 적절함. ○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결과의 활용방안(예: 모형개발 및 보급 방안 등) 도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일반교원 연수, 정책연구학교 운영,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과목 필수 이수 시행 등이 적절히 추진되었음.
□ 성과달성도○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일치하며, 비교적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나, 일반교원

의 특수교육 연수율은 달성도가 높지 않음.

나) 총평

-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목표는 적절성이 있고, 구체적 실행 계획도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었음.
-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학업성취 평가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국가, 지역 또는 학교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유 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실시로 학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목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 등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교육과 관련된 제반 교육여건 이나 내용을 개선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시·도별 의무시행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하며 장애학생 학력평가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수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참여(2009년~2012년)
□ 특수교육대상학생 국가 및 단위학교 평가 참여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정책연구 실시
나) 문제점
□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에 대한 관리자 및 일반 교사의 인식 미흡, 지원체계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어려움
3) 주요성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 특수교육대상학생 평 가 참여(2009년~2012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 국가 및 단위학교 평가 참여 방안 마련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단위 평가 방안 마련 을 위한 장애유형별 정책연구학교 운영

※ 2011년 : 특수학교 5교, 초·중·고 일반학교 6교 / 2012년 : 초·중·고

○ 특수교육 대상학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현황 및 결과 활용 방

일반학교 6교

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011년)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평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력 관련 자료 파악 및 학력 제고 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명료하게 제시되었으나, 일부 특수교 육 대상학생뿐 아니라 대체평가(진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계획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평가 참여가 '독려'차원의 사안이 아닌 교육 대상자로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의무사항'의 과제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성과 지표로 고려되지 않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계획 내용이 일정에 따라 준수된 것으로 보임. 단, 정책연구학교 운영 결과 등으로 모색된 평가조정은 시범운영 단계에 머무름. '08 ~'10년에는 예산계획이나 집행이 없었음.

□ 성과달성도

○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현황 및 결과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 실시(2011년) 및 장애유형별 정책연구학교 운영(2011년 ~2012년) 등을 통한 평가조정방안 모색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음.

나) 총평

□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력 평가 및 평가조정의 기초 단계가 이루어졌음

0	평가조정	대상학생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장애유형별	방안	모색	노력이	이
	루어졌음.										

- □ 정책연구학교 수준을 넘어선 보다 보편화할 수 있는 평가조정 방안 수립 및 보급 노력이 필요함.
-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효율적인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사업내용

○ 가정, 시설 및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순회교육지원 제공, 장애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교 재·교구 지원,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거주지역 중심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 영,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 유지, 타지역 센터와 정보 상호교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후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임.

2)	현황	및	문저	점

フ	H	현황

-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2008년 180개소 → 2011년 187개소)
-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운영 예산(2008년 23,302백만원 → 2011년 78,963백 만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2008년 572명 → 2011년 1,432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 (2008년) 전문직 0명, 순회교사 260명
 → (2011년) 전문직 33명, 순회교사 315명

나) 문제점

-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중 계약직이 많아 잦은 이동과 책무성 부족 등으로 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
 - 3) 주요성과
- □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진단평가, 관련서비스, 가족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센터 운영예산이 2008년 대비 약 3.4배 가량 증가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실행의 타당성이 높고, 진단기관, 교육기관, 자문기관, 서비스조정기관, 지역사회 내 정보기관 등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역할 수행을 사업내용으로 구성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각 사업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성과목표가 사업내용과 연계되지 않음(예: 사업 내용에는 없는 치료지원 포함, 사업내용에 포함된 순회교육에 대한 성과목표는 불포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다양한 사업내용 및 사업운영 제고를 위한 사업이 함께 병행되었으며, 추 진일정 준수 및 효율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성과달성도

○ 기자재 확충, 순회교육, 진단평가, 보조공학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성과달성도가 우수한 편이되, 각 사업별로 세분화된 분석 결과 제공이 함 께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임.

나) 총평

- □ 지역사회 내에서 요구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고려한 사업내용 등으로 구성된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내용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 성과목표와 사업내용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외 추진과정의 효율 성과 성과달성도는 우수한 것으로 사료됨.

-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장 애학생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평가, 직업훈련, 적성직종 파악, 취업 알선 등 관련 기관과의 연 계가 필요하게 됨.

□ 사업목적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기회확대, 질 향상,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궁극적 복지인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관련 기관간 협력지원체계 구축,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진 로 및 직업교육 기반 강화임.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
 - 시·도별 지역차원의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추진
 - ※ 시·도 협약체결 : 2010년 6교육청 → 2011년 11교육청 → 2012년 16 교육청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확대(2010년 10
교 → 2011년 20교→ 2012년 30교)
○ 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 확대(2009년 5교 →2010년 10교→2011년 20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강화
○ 지역별 「진로·직업교육 연구회」육성 운영 (2010년 16개→2011년 32개→2012년 48개)
나) 문제점
□ 특수학교의 학교기업 설치·운영 및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안정적 예산 지원 확보의 어려움
3) 주요성과
□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지원체제 구축 강화
○ 관련 기관 간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1개씩 총 16개교 선정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범학 교 운영(2008년)
○ 전환교육 모형개발 연구 1종(2009년) 및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지정·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기반 강화
○ 「진로·직업교육 연구회」육성·운영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보시스템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는 사업의 목표로서 적정성이 높으며,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강화는 사업내용으로서 우수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세부사업별 단계적 실행이 충실히 이루어졌음.
□ 성과달성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도가 높고, 성과산출의 구체적 근거도 잘 제시되었으며, 달성도도 우수함.
나) 총평
□ 전체적으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실행 정도가 우수함.
2. 교육기관 정당한 편의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정당한 편의 제 공 확대함.

□ 사업목적

○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의 개별 신변처리, 교수·학습보조 등 학교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성과 제고와 장애인차 별금지법 홍보, 보조공학기기 제공, 일반교사용 지도서 개발 등을 통해 장 애학생의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 치 지원,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단계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학원 지정 권장 등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현재 시행중인 사업 내용 및 실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보조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장애대학생을 위한 도우미 지원
 - 지역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센터 운영 예산 : 2008년 233억 → 2009년 438억 → 2010년 508억 → 2011년 790억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자료 개발·보급
 ※ 초등학교: 2008년 20종 → 중학교 2009년 12종 → 고등학교 2010년 12종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지원 : 2009년 106억 → 2010년 79억
나) 문제점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배치기관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3) 주요성과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정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학습편의 보장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환경 개선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 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었음

○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잘 추진되었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일치하며, 전체적인 성과달성도가 우수함.

나) 총평

□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보조원 및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 목적을 잘 성취하였음.

제3절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1. 문화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제도적 환경 변화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되었고, 마침내 200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었음.
-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법과 제도의 정비에 발맞추어 장애인 문화권 에 바탕을 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문화적 환경 변화

-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실용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 인 복지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장애인들도 스스로의 정체성 확보와 자아 성취를 달성하고픈 욕구가 문화 적 차원에서 강하게 분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욕구는 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증가(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등), 장애인 예술제(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장애인나눔연극제, 장애청소년문화제, 장애인근로자문화제 등), 장애 예술인/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한빛예술단, 극단 휠, 농미회, 영혼의소리합창단, 춤추는 허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예술 창작 권리를 복지적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 요구에 발맞추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 문화프로그램의 강화 등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 시키고, 문화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장애인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창작 및 표현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 며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이 전문 예술 강사와 함 께 문화예술을 체험, 학습,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또한 영화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서 장애인의 문화 향수권 확보 및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있음. 그리고 한글자막상영, 화면해설상영과 함 께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에 게 여행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관광수요를 확대하는 데 있음.

□ 사업내용

○ 장애인문화예술향수사업 및 창작 지원,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예술강사 지원,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등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정책적 현황

- □ 장애인 문화예술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장 애인문화예술정책 마련
- □ 찾아가는 장애인음악회, 문화학교 및 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을 통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 수도권 이외	지방	지역에서도	장애인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펼쳐	장애문화예술
의 저변확대							

□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등에 의거 다양한 장애 인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사업현황

-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사업 및 창작 지원 등
 - 장애인단체의 특성화 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창작활동사업 지원 (2009년 44개사업: 14억5천만원, 2010년 50개사업:15억 5천만원)
 - 장애인문화예술 축제지원 및 찾아가는 음악회, 국제미술교류지원등 (2009년~2011년 축제: 9억5천, 2011년 찾아가는음악회 미술교류: 4억원)

□ 문화바우처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에게 5만원 한도의 문화예 술프로그램 관람 지원
 - 지원금액 : 개인별 50.000원 한도
 - 대상 프로그램 :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 장애인 관람실적 : 2008년 33,334명, 2009년 41,159명, 2010년 64,106명

□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예술강사 지원

- 장애인 복지관 이용 지적장애 아동 및 부모 대상 무용, 음악 분야 예술강 사를 통한 연간 30회 문화예술교육 및 현장학습 지원
 - 2008년 32개 시설, 예술강사 28명 파견, 수혜자 343명
 - 2009년 30개 시설, 예술강사 31명 파견, 수혜자 300명

□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상영 및 장애인 영화제 개최
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추진
— 시업예산(영화7금) : 2009년 340백만원, 2010년 340백만원 , 2011년 650백만원
○ 사업실적
장애인 영화제 : 2008년 40백만원 지원, 총 37편 상영, 2,000여명 관람,
2009년 80백만원 지원, 총 73편 상영, 2,500여명 관람(전년대비 35% 증가)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상영 : 2008년 13편 482회, 2009년 9편 456회
상영(2008년 200백만원, 2009년 260백만원 지원)
□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 : 2008년 7억원(국고 신규)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2008년 10억원(국고, 2007년 10억)
□ 장애인 복지관 예술강사 파견 : 2011년 5억, 2010년 5억, 2009년 3억, 2008년 5억
□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 : 자막·화면해설 상영을 위한 장비지원, 장애인영화
제 개최 경비 지원
사업예산(영화기금): 2009년 340백만원, 2010년 340백만원, 2011년
650백만원
3) 주요성과

□ 문화바우처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 2010년 47개 시설, 예술강사 47명 파견, 수혜자 628명

- 2011년 58개 시설, 예술강사 48명 파견, 수혜자 722명

- 수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327만명 중, 37.3%인 122 만명(카드사업 106만명, 기획사업 16만명)이 혜택 수혜
 - * 2010년 67억원 → 2011년 347억원(518% 증가, 지방비 102억원 포함)
- '문화카드'제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 문화카드로 자유롭게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 증가
- 기획사업을 통해 카드사업을 보완하여 문화바우처사업의 실효성 제고
 - 2011년 자발적 문화예술 체험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400 여회의 기획사업을 실시, 총 16만명이 혜택을 받음
-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문화시설의 장애인접근성 강화 (2007년~2012년 현재까지 29.5억, 80여 개소 지원)
-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휴 기회 확대와 삶의 질 제고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시작함
 - 최근에는 장애인관련 예술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문화예술교 육 활성화 사업에 장애인복지관도 참여하여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 원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임.

나) 문제점

-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문화향유 실태는 비장애인의 평균적 문화향유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특히,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한 상태임
- □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들이 단체 유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한계
 -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이 주로 장애이동에 집중되어 있어 성인, 노년기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확장이 필요함.
 -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복지시설 외에 대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지원에 한계가 있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사업배경 및 사업목적은 대표적인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높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음
 - 다만 지속적으로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축제
 등 일회성 사업보다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보다 많은 사업과 재원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세부계획 및 성과목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문화향수 증진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예를 들어 2011년 장애인 문화향유권지원사업으로 44개 사업을 시행하였음. 15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장애인문화예술단체 특화사업, 음악, 미술, 무용등 장르별 지원)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준수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5개년 세부계 획에 따라 추진일정이 잘 진행되어 왔음
-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주어진 예산이 100% 잘 집행되었음.
 - 다만 양질의 문화창조와 공급을 위해 장애인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지원금 분배가 상향될 필요가 있음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상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모 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과 관련하여 성과지표인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수와 참여자 증가율 10%가 목표치와 거의 일치하 고 있음
- 달성률은 5개년 계획상의 목표치가 매년 100% 이상 달성률을 보이고 있 음
-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목표치와 달성수준, 목표 달성 검증방 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목표산출근거가 적절함

나) 총평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필요성 및 목표, 사업 내용, 성과지표의 적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추진과정의 효율성 측면과 관련하여 추진일정의 준수 및 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짐. 또한, 성과달성도 측면에서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와의 일치성과 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도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도서관법 개정(2006년 10월 4일)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 인도서관지원센터를 신설(2007년 5월 22일)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시책 수립 및 총괄,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등의 제작·배포,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또한 장애인의 언어해 득력 신장, 독서환경구축,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장애인 문화향유활동,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키고자 함.

□ 사업목적

○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을 통한 정보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함.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개발·보급,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보급·확 산, 전국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정보자료실 설치·보급 확대 추진

2)) 현황	및	문제	점

가) 정책적 현황

- □ 장애인 문화접근권 신장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독서환경 구축, 언어해득력 신장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 지원 등 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의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정책 추진
-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음.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4조에 명기된 '문화예술의 차별금지'에 근거하여 2010 년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평등권에 침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적용받게 될 예정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이 마련되었음.

나) 사업현황

- □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개발·보급
 - 2009년 460종 → 2010년 2,000종 → 2011년 3,000종

- □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보급·확산
 - 장애인 포털 구축(2009년 5월25일), 장애인 대체자료 온라인 서비스(9,711종)
 - 국제 표준인 DAISY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제작도구 개발(2010년 4월~11월)
 - 시각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 한국표준 제정(2010년 12월15일)
 - 디지털파일 납본 기증을 위한 소리책나눔터 사이트 개설(2010년 11월18일)
 - 장애인 대체자료 종합목록 DB 구축(18만건)
 - 책 읽어주는 전화음성서비스「통신요금바우처」제도 운영(2010년 7월~):
 매월 15시간 무료 제공(2010년 8월19일~), 우수 이용자 30시간 추가 제공 (2011년 3월~,423명)
- □ 전국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정보자료실 설치·보급 확대 추진
 - 장애인정보누리터 준공(2008년 12월 29일) 및 개실(2009년 4월 13일)

⟨표 2-3⟩ 연도별 이용자 수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이용자수	2,003명	3,633명	2,993	8,629명

- ※ 2011년 7월 31일 기준
 -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자료실 설치 확대 지원
 - 2009년 5개관 → 2010년 11개관 → 2011년 16개관

나) 문제점

- □ 장애인 문화접근권에 대한 무관심, 인식 미비 및 법 경시
 -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음.
 - 이와 같이 오랫동안 뿌리박힌 무관심과 인식 미비는 강제력 있는 제도나

법이 만들어졌더라도, 집행해야 할 기관이 법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경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설계도면 무시

○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관심은 시설 시공자가 시설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예산부족

○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더라도 예산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루어지는 경우도 빈 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보 및 도우미 부족

- 장애인이 공연장에 가서 관람을 할 경우 장애인 주차장에 도착해서 내려설 때부터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 장애인이 공연장 출입을 위해 설치된 안내판, 예를 들어 승강기 이용 안내 판 등이 필요하며 출입한 뒤에도 좌석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장애인의 눈높이 에 맞게 설계되지 않아 부실한 경우가 많으며, 도우미가 적절하게 제공되 지 않고 있음.

3) 주요성과

□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특수언어 표준화, 독서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저작툴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사업배경 및 사업목적은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 증진은 장애 인 문화복지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 증진의 사업배경과 사업목적이 잘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 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독서 환경 구축, 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등의 구체 적 사업이 잘 집행되었음.
- 성과지표(세부계획 및 성과목표) 적정성과 관련하여 3~5년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성과목표를 잘 설정하였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준수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연도별 계획 을 세워 진행 내용을 연차별로 세분하여 추진일정을 준수하였음.
-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매년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90% 내외의 높은 예산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 여건과 상황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과 관련하여 성과지표인 대체자료 개발 등이 목표치와 일치하고 있음.
- 달성률은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100%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음.

○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당해연도의 목표치와 5개년 계획상의 목표치로 구분하여 목표산출을 당해연도 달성률과 5개년 목표 달성률로 목표산출을 적절히 하였다고 판단됨.

나) 총평

□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필요성 및 목표, 사업내용, 성과지표의 적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추진과정의 효율성 측면과 관련하여 추진일정의 준수 및 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여겨지며, 예산집행 및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이와 함께, 성과달성도 측면에서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와의 일 치성은 매우 우수, 달성율과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방송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완화 및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권 향상을 위해 방송수신기의 보급 및 장애인방송의 제작·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시 됨.

□ 사업목적

○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및 방송수신기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적

으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보급하여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시키고, 방송사업자에게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시청권을 향 상시키도록 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2006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SO, PP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장애인방 송(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제작비 지원
 - ※ 시행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표 2-4⟩ 연도별 지원방송사 현황

방송사 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앙)지상파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지역지상파	3개사	15개사	22개사	26개사	33개사	39개사
SO	-	-	-	2개사	3개사	10개사
PP	1개사	2개사	1개사	4개사	5개사	3개사
합 계	9개사	22개사	28개사	37개사	46개사	57개사

○ 장애인방송의 법적 의무화(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제 도 운영을 위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구성 및 평균 제작비 산정기 준 등 장애인방송 제공 및 편성실적 점검체계 마련

□ 방송수신기기 보급

- 2000년부터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수신기 를 제작 및 보급 지원
 - ※ 시행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표 2-5⟩ 연도별 수신기 지원 현황

구 분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합계
2000	1,725	-	-	1,725
2001	2,500	-	3,180	5,680
2002	2,362	1,000	5,000	8,362
2003	2,500	1,000	5,000	8,500
2004	3,000	1,800	4,000	8,800
2005	2,000	2,052	6,041	10,093
2006	5,000	5,000	10,075	20,075
2007	6,000	6,000	10,083	22,083
2008	5,000	1,524	10,532	17,056
2009	7,373	4,000	5,276	16,649
2010	7,505	4,000	5,672	17,177
2011	9,000	4,300	3,000	16,300
합계	53,965	30,676	67,859	152,500

나) 문제점

-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에 따라 장애인방송의 제작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나, 장애인방송 제작사 및 관련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초기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난청노인의 수도 증가하 고 있어 난청노인용 수신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나 이에 따른 방송수신기기 보

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주요성과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제작에 157.6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막방송 편성비율 목표를 초 과 달성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

〈표 2-6〉 중앙지상파 4사 장애인방송(자막) 편성비율

(단위: %, 억원)

	_	-			_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막방송 편성비율	목표	85.0	87.0	88.0	89.0	90.0
	실적	92.8	94.6	96.0	96.9	-
	달성률	109.2	108.7	109.1	108.9	-
제작지원금	157.6	30.0	30.	30.0	33.07	34.57

□ 방송접급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송법(2011년 7월) 및 동법 시행령(2011년 10월)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송접근권 확대

○ 지난 5년간(2008~2012년)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위한 수신기 제 작에 125.4억 원을 지원, 총 86,852대의 수신기를 보급해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들의 방송접근권 확대

⟨표 2-7⟩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단위: 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막방송수신기	5,000	7,373	7,505	9,000	9,170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524	4,000	4,000	4,300	7,500
난청노인용 수신기	10,532	5,276	5,672	3,000	3,000
합 계	17,056	16,649	17,177	16,300	19,670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사업배경 및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에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획득기회를 증대시켜 정보격 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사업배경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제작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에게 자막방송수신 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및 난청노인용 수신기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 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한 사업목적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방송수신기기 보급 등의 사업 내용이 사업목적과 부합하고 있음
- 성과지표(세부계획 및 성과목표) 적정성과 관련하여 시청각 장애인 수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12년까지 자막방송수신기 보급률을 15%로 증대하 고 자막방송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성과목표는 적절히 설정되 었다고 판단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준수성과 관련하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세워 진행내용을 연도별로 세분화하여 추진일정을 준수하였음
-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주어진 예산이 매년 100% 집행되지는 않 았지만 90%내외의 높은 예산집행율을 보여 자원의 집행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지는 않음
- 행정여건·상황변회에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여겨짐. 예를 들어, 2010년 수신기 보급단체 및 방송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일치성과 관련하여 2012년까지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률을 15%로 증대시키고 자막방송 편성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성 과지표가 목표치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
- 달성률은 성과목표가 수화방송 편성비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과 달성되었음
-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목표치와 5개년 계획의 목표 치로 구분 목표산출을 당해연도 달성률과 5개년 목표 대비 달성률로 나누 어 설정함으로써 목표산출을 적절하게 하였음.

나) 총평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은 계획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전반 적으로 사업필요성 및 목표와 성과지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추진과정의 효율성 측면과 관련하여 추진 일정의 준수 및 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매우 우수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과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또한, 성과달성 도 측면에서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와의 일치성과 달성율 그리고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2. 체육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인문사회적 환경 분석
 - 등록 장애 인구수의 매년 지속적인 증가
 - 선진국형으로 장애 범주의 지속적인 확대

□ 장애인체육환경 분석

- 장애보다는 스포츠에 관점을 둔 패러다임의 변화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지속적인 증가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나 행사의 확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에 있어서의 통합에 대한 관심 증대
- 장애인 경기단체와 등록선수의 지속적인 증가
-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법적 지위 요건 개선
- 장애인체육 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 장애인체육의 수요 예측

- 지방 장애인체육조직의 역할 증대 및 수요 욕구 분출
- 주요 국제대회의 지속적인 유치
-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증가와 시간적·공간적 정보 공유의 욕구 증대로 정보 장하정책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장애인체육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시 되고,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전국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화경 개선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업목적

○ 체육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체육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체육시설을 장애인이용가능 시설로 개선하여 접근성을 제고함.

□ 사업내용

- 포탈사이트에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장 제공, 포탈사이트 선정 후 장애인체육정보 제공 및 참여 가능 커뮤니티 제공, 장애인체육 정 보센터 운영 및 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시스템 구축, 장애인종합체 육시설 건립 및 운영임. 또한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이용 불기종목 훈련장 확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임.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포탈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각종 생활체육 정보, 생활체육 육 동호인클럽 현황,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대회·행사정보, 스포츠용품임대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및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음.

□ 장애인체육종합시설 건립 및 운영

○ 장애인체육종합시설의 1단계 공사가 완공(2009년 10월 15일)되어 보치아, 골볼 등 14개 종목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1단계 공사(건축면적: 21,776㎡)에 이은 2단계 공사(12,264㎡)가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종목별로 상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문제점

□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측면

○ 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유형 별 건강체력검사에 대한 기초연구만 진행되고 있고, 체력관리시스템 구축 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사업내용이 없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동계종목 훈련장 기반 조성 측면

○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유치에 따라 장애인 동계종목 훈련장 기반 조성 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현재 건립계획이 휠체어컬링과 아이스슬 레지하키 전용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부종목인 스키종목에 대한 훈련장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3) 주요성과

□ 장애인체육 정보화

○ 장애인체육 정보화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블러그 개설을 완료하고, 16개 시도지부와 30개 가맹단체의 인트라넷과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 장애체육인의 숙원 사업인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이 개관함에 따라 장애인 국 가대표선수 상시 훈련을 위한 장애인체육종합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블러그를 구축하고 장애인체육정보센터를 통한 상담과 각종 정보지표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됨.
-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16개 시도 지부와 30개 가맹경기단체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축되었으며, 홈페이지 관리 및 웹접근성 강화, 서버 보안체제 구축, 행정표준화 구현 및 사용자 교육,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장애인종합체육시설 2차 건립을 위한 장애인선수들의 요구가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 시 설 증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는 장애인체육 정보화로 정보접근성 향상, 장애인 체력관리 온라 인시스템 구축,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립 및 운영,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개선으로 설정되었으나, 성과달성의 목표 내용을 정보접근성과 장 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중심으로 설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성과달성도는 높게 나타나나 장애인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환경 개선 등 미진하게 기술되어 있는 사업내용은 추후 수정·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나) 총평

- □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체계 및 기능 강화로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시간적, 공간적 정보 접근이 많이 개 선되었으며, 수요자 위주의 콘텐츠 제공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사업 중 장애인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은 사업은 기초연 구만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장애인체력인증제 시행에 대비한 사업내용 보 완이 요구되는 실정임.
-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건립을 통하여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동계 장애인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동계종목 전용 훈련시설의 추가적인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장애인

체육 시설의 구심점 역할 및 발전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생활체육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축 및 지도자 양성과 활용 등 생활체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선수권 대회 정비, 클럽활성화, 운동팀 창단 환경 마련 등 생활체육시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애 및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 그램 제공 및 교실형 프로그램 확대로 연령별, 장애별 참여계층을 확대하 고 선수등록 관리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선수의 경기 력 향상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종목별 경기대회를 다양화하고 대회 의 위상 제고, 대회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확 대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및 여성체육 활성화, 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종목별 국내대회 개최 정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체계 개선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으로 매년 프로그램 개발, 강습회 등이 연중 개최되고 있으며, 청소년교실, 어울림캠프, 생활체육교실 등이 시·도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지원 사업으로 동호인대회, 어울림대회, 종목별축제 등 각종 대회 지원과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및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 회가 개최되고 있음.

나) 문제점

-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족
 - 현재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가 16개 시·도로 배치되고는 있으나 배치인원이 지극히 부족하고 특히, 기금 및 지방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시·군·구 단위 까지 지도자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효과적인 지도활동에 애로점이 있음.
-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부족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체육시설이 적고, 비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 시간의 선점으로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의 확 보가 어려움.
 - 3) 주요성과
-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지속적 증가

○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동호인 클럽 및 동호인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연도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을 보면 2008년 6.3%에서 2012년 10.6%로 매년 참여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 생활체육의 사업내용을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생활체육클럽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울림클럽 결성 수 및 교실 개최를 성과계획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연도별로 성과목표를 증가시켜 최종 연도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한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호인클럽 지원, 생활체육교실 지원,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등 사업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도 효율적으로 시행되었음.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 관련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향후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법적 제도화의 방안이 마련되었음.

□ 성과달성도

○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 배치하는 사업은 매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달성되어 왔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지원, 신인선수 발굴 및 교실운영, 어울림체육 활성화 사업, 가맹단체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등 도 목표치를 초과하는 성과가 있었음.

나) 총평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동호인클럽 지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및 대회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체 육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IPC의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장애인스포츠 추진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IPC & IOC협약체결 2000년 →2016년)하고, 장애인체육의 문화부로의 이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체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게 됨.

□ 사업목적

○ 우수한 훈련기법 도입 및 장비의 공공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동계종목의 경 기력 향상 및 활성화,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참가 및 국제장애인스포츠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 사업	내용	-
------	----	---

○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제고,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 지원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 및 참가,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종합국제대회 참가지원 및 우수성적 달성
 -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종합 13위, 런던장애인올림픽 종합 12위 등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으며, 광조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종합 3위를 달성 하였음. 또한 뱅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 역대 동계대회 사상 최고 성적을 올렸음.

□ 종목별 경기단체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지원 및 개최지원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등 종목별 국제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였음.

나) 문제점

- □ 국가대표 선수 고령화 등 전문체육 기반 약화
 - 장애인 전문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실업팀 창단지원 및 선수 세대교체를 위한 체계적 후보 선수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함.

□ 장애인스포츠 외교 전문가 부족

○ 급변하는 국제스포츠 정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됨.

3) 주요성과

□ 국제스포츠외교를 통한 국제 영향력 강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이 유치되었고, IPC 및 APC 등 국 제기구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위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KPC가 지속적으로 국제스포츠 교류를 진행하여 총 24개 국가와 양해각서(MOU), 18개국과 교류의향서(LOI) 체결이 이루어졌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국제대회의 유치 및 참가 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국제장애인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계량적 목표로 설정한 것은 국제스포츠의 위상제고 측면 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국제대회 유치 및 참가, 국제장애인스포츠외 교력 강화 등의 세부계획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국가대표 선수훈련 지원, 국제체육교류,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훈련장비 확보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

□ 성과달성도

○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장비,

지도자 배치 등이 목표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임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음.

○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부분은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의 유치라는 상황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결과 상에서는 미진하게 기술되어 있어 추후 이 분야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총평

- □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선수 훈련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 있었으며,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장애인체육의 국제 경쟁력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가고 있음.
 -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 기대회 등 주요 장애인종합경기대회의 유치로 한국의 국제스포츠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IPC·APC 등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스포츠외교 인프라 구축 및 강화에 계기가 마련됨.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1. 고용 및 일자리 (고용노동부)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양극화 심화
 - 취약한 인적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제한 및 경제적 곤란 상대적 심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2차에 걸친 장애범주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급격히 증가(경증비중의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의 고 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 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이 필요함.

□ 사업목적

○ 경영계, 장애인계 등의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부담금·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운영을 강화하는 것임.

□ 사업내용

○ 경영계, 장애인계 등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 개편, 중증장애인이 우대받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재설계,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중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과 및 유예조치를 규정, 의무고용률 미달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등 중점 이행 지도를 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고용의무제도의 의의

○ 고용의무제도는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고용 실태와 일자리 수

- 3차 계획 기간동안 정부는 고용의무제도의 운영을 강화하여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가 47천개(43.9%) 증가했고(2007년 107천개 → 2011년 154천개), 장애인고용 인원은 2007년 8만9000명에서 2011년 13만3000명으로 49.4%(4만4000명) 증가했음.
- 2011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24,083개소에 고용인원은 133,451명으로 고용률은 2.28%임. 이 수치는 의무고용 일자리 수인 2011년 154천개의 약 86%에 해당하는 비율로 2014년 의무고용률이 2.7%로 상향되면 189천개로 증가됨.

나) 문제점

□ 민간부문 고용율 미달

○ 2011년 말 의무고용대상 기업(5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는 매년 대비 소폭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전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준수율은 49.8%에 불과함.

□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저조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특히 30대 기업집단은 소폭 상승(2010년 1.69% → 2011년 1.80%)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경증장애인 쏠림현상 지속

- 고용의무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동해 왔음에도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의 다양화, 차별금지법의 도입 등 외부환 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의무고용 일자리는 경증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함으 로써 경증장애인에 의한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의 경증장애인의 고용상황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우수한 편이나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함. 2000년 중

증장애인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중증장애인 고용비중은 20%에 머물고 경증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 정책대상의 포괄성

- 2011년 말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 2,517천명 전체를 의무고용 정책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노동시장과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임.
-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고용정책과 같은 보편적 정책원리보다는 정책대상의 표적(policy target)을 명확히 하여 정책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패 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
- 장애인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의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의무고용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주를 축소하여 정책표적을 명확히 함으 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투자해야 함.

3)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의무제도 개편

-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관련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 제도를 도입했고,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2.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2010년 2.3%, 2012년 2.5%, 2014년 2.7%)했음.
-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수가 2007년 1만 3천여 명에서 2011년 2만여명까지 증가하였고, 여성장애인 근로자는 2007년 9천여명에 서 2011년 1만 7천여명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냄.

□ 고용의무제도 운영강화

○ 여성·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하여 고용장려금을 상향(경증여성 25% → 33.3%, 중증남성 25% → 33.3%, 중증여성 50% → 66.7%)하였음.

- 부담기초액을 조정하여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하여 월 51만원에서 월53만원(2010년) → 월56만원(2011년) → 월59만원(2012년)
 ○로 단기를 상향조정했으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고용 부담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2011년 1인당 56만원 → 90만원)했음.
- 부담금 납부·신고서 제출기한 변경(3월말 → 1월말)으로 조기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 이행점검 및 명단공표를 연 1회 → 연 2회로 확대함. 명단공표 대상도 300명 →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구했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본 과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등 3차 5개년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무제도를 개편하고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확대의 성과를 일정정도 기대할 수 있는 계획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이 사업내용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추진과제가 계획상의 기한 내에 완료되었음.
- 특히 의무고용률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간 담회, 공청회, 포럼 등 다단계 절차를 마련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노력성 은 높이 평가됨.

□ 성과달성도

- 실제 다양한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고, 달성수준을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설정하여 실제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성과지표로 활용하 기에는 제한적임.
- 추진실적과 관련, 법률개정 및 시행과정을 연도별 달성수준으로 제시하였고 추진과정상의 노력여부나 상황변화에의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도개선(더블카운트 제도, 여성 및 중증 장애인 우대조치 등)의 효과인 장애인고용은 성과지표에서 누락하여 달성도를 평가하는데 저해요인이 됨.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목표 산출 근거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본 과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재설정이 요구됨.

나) 총평

- □ 장애인구의 증가와 높은 장애인 실업률, 낮은 경제활동인구 비율 등 열악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했다는 측면에서 성과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계, 경제 계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민감한 이슈임에도 다단계 절치를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 노력성이 인정됨.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라는 거시적 목표로 설정하여 그 달성치를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포 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을 통한 여성 및 중증장애인 고용률 변화정도 와 같은 장애인고용 확대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제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결합(policy mix)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이 증대된 성과(헌법기관, 지자체 등 정부부문 법정의무고용률 3% 상회, 정부부문 일반근로자 법정의무고용률 2.3% 초과달성,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 법정의무고용률 3% 초과, 2차 계획기간 대비 전반적인 장애인고용률 증가)가 나타났지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증대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냄.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구의 증기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부문은 적용제외율 완전 폐지, 미고용 시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으나 정부부문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사업목적

○ 사회 전체적인 장애인 고용확대에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 및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문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 등을 확대하여 정부부문이 장 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제도 를 개선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 이상 장애인 채용의무 (단, 장애인 공무원 수가 3% 미달하는 기관은 100분의 6 이상)가 있음.
 -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

○ 2011년 말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으로 전체 고용률은 2.52%임. 분야별로 자치단체 3.78%, 중앙행정기관 3.20%, 헌법기관 2.29%, 교육청 1.44%의 고용률을 보임.

나) 문제점

- □ 자격요건이 필요한 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성
 -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선도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교육 청·헌법기관 등 자격요건이 필요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함:

□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미흡

○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인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이 각각 14.7%, 11.5%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중증장애인 비율인 17.6% 와 비교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따른 수혜는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어졌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역시 각각 17.2%, 8.7%로 여성장애인의 경활참가율(4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적용제외율 상존

○ 민간부문과는 달리 직업의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을 제외하는 직군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이 여전히 남 아있음.

3) 주요성과

□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 확대 제도개선

-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시행 및 구분모집, 특별채용제를 도입했음.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 2% →3%(2009년)로 상향조정 했고, 구분모집 비율 역시 6.5%(2009년) → 6.6%(2010년) → 6.7%(2011년)로 상향했음. 또한 민간과 마찬가지로 정부부문에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도입했음(2010년 1월 1일 실시).
- 2011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 신규 채용 시 '구분모집 예외'를 폐지하여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 인원에 대해 비장애인 채용을 허용하던 것을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토록 제도를 개선함(시행시기 2015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 확대 적용 및 시범사업 실시

-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확대 적용하였고 (2010년 1월 1일),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했음.
- 2011년 일반 채용절차로 공직 진출이 어려운 지작정산자폐중증장애인 채용 시범사업을 실시했음(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 16명).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 제도개선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함(2010년 1월 1일).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여(0.16점 →11년 0.4점)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독려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정부 및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 과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의 매우 의미있는 과제로 5개년 계획상의 상위목 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추진동기 및 목적이 일치하며 세부목표가 대체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사업 추진동기가 적합하고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다만 사업내용상 정부의 선도적 역할에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뿐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 2배수 인정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를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대표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세부사업별 성과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법 개정 및 국무회의 보고 등 과정을 중심으로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매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경각 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제도개선의 동기를 유발하는 노력이 인정되지만 해당

노력이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홍보 수행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달성도

○ 당초 계획상의 목표와 연차별 목표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5개년계획 목표 대비 추가적인 조치들도 있었음. 대표적 성과목표로 제시한 의무고용률 상 향조정은 2009년 이미 달성되었고, 그 이후 연차별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 하지 않아 남은 과제들에 대한 목표신출 근거로서의 적절성은 미흡함.

나) 총평

- □ 본 과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점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의 매우 의미있는 접근임.
 -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족한 장애인고용 열악성을 감안할 때 정부 등 공공부문의 고용확대 및 시범사업을 통한 직무개발 등의 선도적 역할 상 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높이 평가됨.
- □ 적용제외 직종 축소,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등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해당 과제에 대한 많은 추진실적들이 있음에도 평가자료에 충실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치와 측정가능한 성과 지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임.

(3-3)	장애인	취업지워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シーショ	יווי ס'	11 11 11 11 11	$\overline{}$	1 0 0 0 1 0 1 1 1 1 1 1 1	O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과 구직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주가 장애 인 고용을 희망하여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유형, 정도, 성별, 연 령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애유형, 정도별 특성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취업률을 증가시 키는 것임.

□ 사업내용

○ 구인·구직상담,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을 확대하고 2011년 장애인국제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전체의 64.0%로 전국민의 비경제활동율 보다 24%가 낮은 상황이며, 선행연구들은 동태적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동기 및 직업의식이 제한적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비판하며 장애인구가실제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음.

□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기관인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훈련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전체 훈련인원의 70% 이상을 중증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음(2009년 기준, 2,434명 참여, 취업률68.5%).
- 그 외에도 40여개의 공공훈련기관 및 20여개의 민간훈련기관과 위탁계약 을 체결하여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의 취업가능성 향상 및 취업이후 임금상승 효과

○ 중증장애인 특화훈련을 통해 취업가능성이 2.43배, 임금은 7.7% 상승(장애인고용공단, 2008), 특성화훈련 이후 취업률은 매년 상승(2008년 77.4% → 2011년 99.2%)하는 효과를 보임.

□ 맞춤훈련을 통한 기업의 장애인고용

○ 맞춤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참여(2008년 183개 → 2011년 417개)가 확대되고 있음. 맞춤훈련을 통한 기업의 장애인채용도 증가하여 2011년 맞춤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취업률은 99.7%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나) 문제점

□ 취업알선 초점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취업서비스 진입 시 '취업알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담시 바로 취업연결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에 한계가 상존함. 따라서 구직장애인의 근로능력, 직업적성 등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능력개발 및 구인사업체 제공정보의 기초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구직장애인 인력 및 정보의 부족

○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과 구직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해도 채용이 어려움. 실제 사업체 조사에서도 장애인 미채용 사유로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이 부족하고 구직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체감도 높은 직업능력개발 미흡

○ 구직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취업, 실업, 훈련)에 대한 정보의 제한으로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갖게 됨. 장애인 개인의 상황(재직, 실직, 장기실업 등)에 따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고용서비스 개발이 더욱 요구됨.

□ 근로능력 평가기준 부재

○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종류별, 장애등급별로 각 직무와 연계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직무사정체계를 갖추어야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연계시킬 수 있음에도 장애인의 근로능 력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및 제도 하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 지 않고, 장애인의 근로능력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에 의존하여 직무와 무관하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 지원고용 운영의 한계

- 지원고용이 취업 취약계층인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수요에 비해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의 부족으로 사업 수행이 제한적임.
- 또한 장애인의 장애특성, 직업능력 수준, 직업적 장단점, 직업 욕구 등 개 별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단기간의 획일화된 훈련기간을 설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현장훈련은 3주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연장사례는 거의 없음.

3) 주요성과

□ 취업지원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훈련 확대, 대기업과의 연계 강화로 '08년 이래 맞춤훈련(2008년 529명 → 2009년 688명 → 2010년 750명→ 2011년 777명)과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2008년 146명 → 2009년 332명 → 2010년 341명) 이수자가 연차별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취업 제고

 ○ 장애인 개별 능력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단계 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시범 도입과 현장훈련 중심의 지원고용 및 시험고용 을 통하여 직무 적응력을 제고하고 취업을 일정정도 확대함(2010년 7,079 명 → 2011년 10.509명).

□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한 취업 양성과정 운영

 ○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 양성과정을 통해 1,126명의 수료자 중 1,112명이 취업으로 연결되고(취업률 98.8%), 대기업(300인 이상) 맞춤훈련 비율도 증가{2010년 40%(300명/750명) → 2011년 53.7% (417명/ 777명)}하였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유형, 정도, 연령, 성별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절 실한 상황에서 본 과제의 목적은 상위목표와 부합하며 그 필요성이 절대 적으로 인정됨.

- 사업 추진 동기는 타당하며 지원고용, 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수 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등은 장애인 고용확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업임.
- 다만 성과목표를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률 변화로 설정하고 있는데 고용률 의 변화가 과연 직접적으로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나타난 것 인지에 대한 관계성을 규명하기 어려움. 과제명이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 발 서비스 제공이므로 관련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 바람직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관련 세부계획은 예정된 일정대로 준수되었으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다만 취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 황에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건전성 확보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연차별로 예 산확보 및 집행이 축소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에 다소 차질이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됨.
- 수시로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맞춤훈련 안내, 지원 고용, 시험고용, 특성화 훈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황변화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달성도

○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대상은 매년 점증하였으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청년장애인 시험고용은 연차별로 답보 혹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음. 고용률 달성률의 경우 중증장애인 증가비율이 반영되어야 적절할 것이

며 특히 2010년 이후 2배수 고용제 도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였지 만 본 과제를 통한 순인원 증가 비율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연차별 장애인고용률을 목표산출근거로 상정한 것은 결과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본 과제의 목표와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목표산출의 근거 설정이 요구됨.

나) 총평

- □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장애인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훈련, 맞춤형 훈련 등이 실시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일정정도 고용증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 본 과제의 성과지표로 제시한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은 성과의 필요조 건에는 해당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으므로 타당한 지표로 인정하기에 다 소 무리가 있음.
 - 지원고용 및 시험고용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맞춤훈련과 장애유형의 특성화 훈련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별 도로 모색해야 함. 구체적으로 맞춤훈련 참여자의 취업률, 장애유형별 특 성화 훈련 참여자의 취업률이나 수료율, 이들 비율의 연도별 변화량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 취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차별로 예산확보 및 집행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였음. 이는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삭감되어서는 안 될 핵심 사업영역에 해당되므로 향후 동 사업에 투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구 증가로 장애인의 정책수요가 증가함에도 관련통계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서 일부통계가 생산되기는 하나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관련 통계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 효성을 제고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신설, 장애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위한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 인 관련 주요통계를 생산하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고용 통계의 생산 및 관리

○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기반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장애 인의 경제활동실태와 기업체의 고용실태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주기적 으로 생산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함. ○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보급함.

나) 문제점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2010년 처음 실시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재승인 불가 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문항 일체를 통합 해 실시하며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 분석은 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함.

3) 주요성과

□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했고, 장애인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조사를 2008년 이후 4차례 실시했으며, 장애인 산재현황 조사, 기업체 실태조사 및 장애관련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파급효과

○ 2012년 제4차 조사까지 완료(4,397명, 패널유지율 86.4%)하였고, 원자료 공개를 통해 장애인고용 통계에 대한 학계와 실천현장의 관심을 유발함으 로써 매년 다각도의 관련 연구결과물들이 생산되고 있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관련통계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수립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높고 목 표가 명확함.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경제활동상태 조사, 산업재해현황 조 사 등 핵심적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고용 정책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계획에 대한 성과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조사 실시로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성과목표의 설정근거로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조사주기 단축, 항목 조정 등 변화 추세들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연차별 계획상의 일정을 예정대로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활동 실태 조사의 경우 1회에 한한 조건부 승인으로 이루어졌으나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함.
- 연도별 예산확보 달성정도 및 예산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통계청의 관련 통계 승인이 미뤄져 2009년도 예산확보율은 51.9%에 머물러 미흡합.
- 과제 추진시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였지만,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장애인 당사 자, 관련전문가 등)의 참여와 욕구파악 등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흡함.

□ 성과달성도

○ 장애인고용 관련 기초통계를 개선한다는 5개년 목표와 연도별 설정목표치 가 일치하며, 조사 종류별 실시여부를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했음. 향후 통계자료에 대한 활용의 내용이나 정도가 성과에 추가적으 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총평

- □ 장애인 고용관련 핵심적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취약 분야로 지적받았던 기초통계의 취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고용 정책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기의 목표가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었음.
 - 통계자료 구축은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며 조사가 단절되거나 축소될 경우 전체 통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통계자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임.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의 장기비전 아래 일정예산의 고정적 확보노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 은 있으나, 물품제조·구매 입찰 등의 지원이 미흡하여 장애인 다수 고용기 업의 판로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사업목적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등을 통한 판로를 확보하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허용을 추진 (2008년)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고용 기업체의 일반적인 현황

- 2010년 현재 전국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체는 21,897개이며 이중 200인 미만인 기업체가 80%, 10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체가 50%이상이며, 10,000인 이상인 기업체는 26개임. 고용의무 기업체 중 70.3%인 15,384개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
- 산업별로 제조업 기업체의 71.4%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비중이 가장 높으며, 반대로 서비스업(69.5%)이 가장 낮음. 장애인 고용률은 서비업이 1.98%로 가장 높고, 기타 업종(1.385)이 가장 낮음.
-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비율이 가장 높으나(50.3%),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53.8%로 가장 낮음.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기업 체의 비율이 높은 반면, 300인 이상의 경우 1.67%로 가장 낮음.

□ 장애인고용 기업체의 인식변화

○ 2010년도 장애인고용공단의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로 '의무고용이행(36.9%)'과 '업무상의 필요(29.5%)'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이들 이유는 각각 3.2%와 3.1% 감소한 수치임. 오히려,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중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성실한 것 같아서'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2008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각각 4.1%와 3.3%씩 높아졌음.

-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기업체가 증가하는 등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요구됨.
- 한편 기업체의 입장에서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기업체 지원 확대(35.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31.1%)',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능력 함양 (22.5%)'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 기업체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이 있는 정부의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저조한 수준이며, 이용경험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더욱이 사업주 지원제도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이용절차의 까다로움(22.8%)', '경제적으로 실질적 혜택 없음(14.7%)', '제도가잘 알려지지 않음(5.7%)', '사업예산이 적어 선정되지 않음(5.4%)' 등으로 조사됨('10년 기업체실태조사).

나) 문제점

- □ 재원의 제약으로 사업주 지원사업 개발 및 확대 한계
 -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투입의 부족으로 사업주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법률에 표준사업장 미적용

○ 지난 국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표준사업장의 생산 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3) 주요성과
□ 2008년부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 조달청 수의계약, 우선구매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디수고용업체를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표준사업장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 법 제85조의 6 개정(2010년 12월 27일)으로 표준사업장에 대해 4년간 분인세와 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2011년 381,088명)하였으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강호 하기 위해 부정행위 횟수에 따라 추징금액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함(201 년 3월 16일 시행).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2011년 수화통역사 지원사업을 근로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체(1,089개소)에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 4,519명을 지원함.
□ 중증장에인 근로지원인 지원

○ 법령 근거 마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 2 신설(2011년

평균 220명)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함.

3월 9일)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갖추어 중증장애인 365명(월

□ 장애인 고용기업 시설자금 지원

○ 장애인 고용창출 및 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해 시설·장비 설치 자금 무상·융자사업을 실시, 2011년 164개 사업체에 시설융자 및 무상지 원 함(8,939백만원).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주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추 진동기와 목적이 명확하며 5개년계획의 상위목표와 부합함.
- 사업내용은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장애인 기업 생산 품에 대한 우선구매 허용 등으로 사업추진 동기와 부합하며, 내용면에서 명확성과 타당성이 있음.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우선구매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여 부에 대한 성과목표는 적정하며 세부계획에 부합하지만, 성과지표가 타당 성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이 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과제의 연도별 계획이 5개년 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적시에 체계적으로 추진됨.
- 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고, 시행과 정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는 장애인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허용 등 기업에 대한 지 워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위목표에 부합함.
- 달성률 측면에서 2009년 국회에 상정했던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이 해결되고 있지 못하나, 당초 계획에 비해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나) 총평

- □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면 본 과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본 과제는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사업으로 5개년계획의 상위목표와 부합하지만 성과지표가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함.
- □ 향후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다수고용기업 생산품 구매 증가 건수나 비율, 우선구매건수 증가율, 세제혜택 증가율 등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가 추가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센터(서울)를 비롯하여 광역권 중심으로 6개 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장애인창업의 허브 구축이 필요시 됨.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기 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성공적인 창업과 창업 이후 안정적인 경 영활동 영위를 위한 창업보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적극적인 장애인기업 경 영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장애인 비즈니스센터를 전국 6개 권역에 시범설치·운영하고 시범운영결과 에 대한 성과분석 및 센터운영 표준모델을 개발한 후 시·도 단위지역(센터 5개소)으로 확대설치·운영 추진하는 것임.

가) 현황

□ 장애인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

○ 일반 창업보육센터는 전국에 286개소(2010년 말) 있으나, 장애인이 입주하 기에는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장애인 창업 보육실로는 부적합함.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는 일반 창업보육센터에 비하여 장애인의 창 업장벽 완화와 편의시설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음.

□ 추가설립 현황

○ 3차 계획기간 중에 6개의 지역(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경기)에 센터 를 확대 설치함.

□ 시행중인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내용

○ 창업기초 및 특화교육, 창업인턴, 심층상담, 개별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2-2]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내용



나) 문제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족과 장애인고용률 미흡

- 전국 3만2천개의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비하여 장애인전용 창업보육센터(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부족한 상태임. 공실 발생 시 보육실 입주경쟁률이 2008년 20대 1, 2009년 22대 1, 2010년 26대 1 등으로 점차 증가하였음.
- 장애인고용 실적에 대해 5개년 계획상의 목표치를 1,425명으로 설정하였으나, 2011년 말까지 1,425명을 고용해 목표대비 71.2%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소 미흡한 상태임.

□ 장애인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미흡

- 장애인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부재로 관련기관 간 교류를 통하여 정 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이 미흡함.
- 사업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의 이원화로 사업주관기관인 센터와 사업수행기

관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복잡성으로 인해 교육생 및 사업담당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수행기관에 부가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역편중의 문제

○ 교육의 지역편중적인 문제로서 대도시 위주로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교육의 편의성 및 접근성 떨어짐. 2011년 7개 권역 12개 교육기관에서 2012년 10개 권역 13개 교육기관으로 점차 확대하여 교육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3) 주요성과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확대설치

- 연차별로 장애인 인구본포 현황에 따라 시·도 단위지역에 6개소를 확대설 치·운영하여 창업보육실 입주율 100%를 유지함.
-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은 21% 증가(2010년 11월 7,372백만원 → 2011년 11월 8,953백 만원)되었으며, 최근 입주기업 고용자 수는 4.5% 증가(2010년 157명 → 2011년 164명)했음.

□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우수창업 아이템을 발굴 (2010년 30개, 2011년 30개)했고, 원스탑 창업지원서비스 및 기술형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2011년 기초교육 660명, 창업자 87명)함.
- 장애인기업의 자금 건전성 제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인 기업 활동지원 자금 편성 및 확대를 도모함(2011년 150억 편성하여 441 건, 180,088백만원 지원).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목적은 사업추진 동기와 필요성이 명확하며 상위목표와 부합함.
-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신규창업 및 고용창출 수치를 성과지표 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연도별 계획상의 추진 일정이 준수되었으며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추진함.
- 예산측면에서 당초계획 대비 예산확보 및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졌으며, 2009년 추가적 노력으로 복권기금에서 1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할 수 있었음.
- 관련기관 협의, 대국민 홍보, 설명회,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실시해 행정여건이나 상황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달성도

- 5계년계획과 연도별 목표치가 일치하며, 센터설치 여부라는 단순한 성과목 표를 초월해 해당사업 추진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 노력성이 인 정됨. 연도별 목표신출근거도 비즈니스센터 설치, 실제 장애인고용 변화량 등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비즈니스센터 설치 실적은 100% 달성했으나 센터를 통한 장애인고용 실

적은 4년간 당초 계획 대비 71.2%에 머물고 있음. 부가적으로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매출 증가와 지역별 정책순회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성이 높이 평가됨. 다만 본 사업을 통해 정부의 복지예산 절감효과, 국민화합 및 빈부격차 해소라는 성과에 대한 평가는 측정기준의 부재로 유보적임.

나) 총평

- □ 본 과제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주체화, 복지예산의 절감, 복지환경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
 - 특히 본 과제는 복권기금 10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그 성과를 배가할 수 있었음. 실제 시업측면에서도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사업의 효과 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타당하게 설정되었고 실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음.
 - 다만 비즈니스센터 설치 실적은 모두 달성했으나 센터를 통한 장애인고용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진단 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상 차별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차 별금지법이 정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됨.

□ 사업목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 방하여 장애인의 고용상 차별이 감소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 는 것임.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활용한 사업장내 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예 방활동 실시(2008년), 사업장내 차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장애인이 배려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수정·보완(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시행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장애인고용시 설·장비 지원사업, 수화통역사 지원 등 고용관리비용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실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권 리의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차별진정건수 1,058건중 645건 (61%)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2010년에는 2,674건 중 1,677건(63%)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차별영역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영역(기타제외) 중 고용 영역이 6번째로 진정사건이 많았음. 즉 정보통신·의사소통(506건), 재화용 역(285건), 시설물 접근(262건), 괴롭힘 등(172건), 이동 및 교통수단(99 건), 고용(81건), 보험·금융(65건), 교육(55건), 문화·예술·체육(36건), 사 법행정(21건), 참정권(13권)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은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2011년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직장생활 내의 차별경험(동료와의 관계, 승진 등)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2-8〉 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취업	39.1%	35.0%	34.0%
소득(임금)	23.7%	20.8%	20.7%
동료와의 관계	18.9%	13.1%	16.9%
승진	16.5%	9.1%	14.2%

○ 한편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7.5%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 비율은 12.3%, 경증장애인은 5.7%였음.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20.0%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합당하지 못한 임금을 받았다고 했으며, '응시자격 제한' 17.6%,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 11.8%의 순으로 응답함.

나) 문제점

□ 장애인의 고용차별 상존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은 물론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가 요망됨.

□ 고용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고용환경 개선노력 부족

- 장애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3차 계획기간 중 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 측면에서 지원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출퇴근지원, 이동지원, 작업지원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아(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에 대 한 배려가 부족한 편의시설 설치와 장비의 보강,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 조 성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3) 주요성과

□ 차별예방 및 관련 자료 제작·보급

○ 차별예방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발간·보급하여 사업장에 대한 차별예방 지도·감독을 수행함. 또한 장애인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수정·보완함. 또한 「장애인 고용차별 체크리스트」 개발(1종)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 공모 및 사례집(1종)을 제작하여 배포함.

□ 차별금지 교육 및 설명회 실시

○ 장애인 고용(예정)사업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집합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함. 특히 사업체 인사담당 대상 순회 장애차별 예방교육 및 사업체 임직원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사업내용은사업장내 차별 예방,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보완, 고용관리비용 지원 확대 등 3차 5개년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타당함.
- 성과목표 및 지표는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전적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시해 당초 사업내용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식개선을 지표로 할 경우에도 인식 개선 정도 등 변화량을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차별예방 안내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차별금지 교육 등에 관한 세부 진행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당초 계획에 포함된 고용관리비용지원에 대 한 추진사항은 확인이 어려움.
- 5개년 계획상의 예산대비 확보예산의 비율이 높고 집행률도 높아 노력성이 인정됨. 상황변화 대응결과로 매뉴얼 수정, 인식개선 교육, 고용차별 상담 실시, 고용차별 상담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 요 추진내용은 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타 사업의 대응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성과달성도

○ 실제 본 과제와 관련된 다수의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5개년 계획상의 목표 에 비해 연도별 목표치가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일치성이 부족함. 또한 성 과 달성도에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도모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황변화

- 에 대한 대응성 항목을 통해 추정해 볼 때 고용관리비용지원 확대 이외에는 일정정도 목표의 달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목표산출근거 측면에서 사전적 인식개선 도모라는 성과목표치나 달성수준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면 본 사업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동 성과목표치를 설정한다 해도 달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바, 교육실시에 따른 사전사후조사나 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식비교 등을 통해 목표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나) 총평

- □ 본 과제는 장차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더욱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임.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여러 가지 이유 중 무엇보다 장애라는 외형적 기준 으로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업주의 막연한 선입견과 인식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의 개선과 아울 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 실제 차별예방 안내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수정 보완, 사업체 인시담당자 대상 순회 장애차별 예방교육 및 임직원 장애인 식개선 교육실시, 고용차별 상담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고용차별 체크리스 트 개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사업실적을 갖고 있음에 도 평가실적으로 제시된 근거가 불충분함. 사업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도 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추진계획에서 차별교육 및 상담의 목표량, 전문인력 양성 인원수 등이 2010년 이후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다소 소극적인 목표량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본 세부사업들이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보다 적

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예산확보에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당초 계획에 포함된 고용관리비용지원에 대해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 립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에 반대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전개가 요망됨.

2. 직업재활, 일자리 (보건복지부)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생계의 보장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장을 열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줌.
 - 이미 복지선진국의 경우 장애인복지 중심은 직업재활이며 직업재활은 동
 등한 권리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는 장애인차
 별금지법으로 보호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은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로 인해 도입된 의무고용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의무고용제는 1%로 시작되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에는 2.3%,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2.5% 그리고 2014년부터는 2.7%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사업의 경우 의무고용제에 의해 미고용한 장애인의 수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반면, 의무고용비율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체에는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
 - 의무고용제도는 전반적인 장애인고용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고용 이 중심이 되는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 시 되는 경향이 높 아줘.

- 실제,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42%이나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6.0%이며 실업률은 6.6%임. 이에 비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7.8%이며 실업률은 11.8% 로 조사되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음.

□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직업재활 정책의 핵심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활성 화임.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추진시책으로는 2004년 부터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14조가 있음.
 - 이 법안에 의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6일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규정이 마련되었음. 이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장시간 근무하기 어렵거나 치료 등의 사유로 인해 탄력적 근무가 필요한경우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중증장애인 고용제도를 수행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체로 실시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166개소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008년 9월부터 시행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다수고용장도 그 목적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활성화임.
- 그러나 현재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
 -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양 그리고 보호고용의 중심인 직업

재활시설 유형재편 등의 변화를 겪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 활 인프라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직업재활관련 사업들의 운영예산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결과를 낳고 있음. 직업재활사업의 지방이양은 시설의 현대회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경우라 해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들이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임.
- 시설의 유형개편을 통해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이 있지만 훈련기간이 3년과 3년 연장으로 정해져 최대 6년 이후에는 전이해야 부분과 시설의 생산성과 근로장애인들의 임금향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작업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직업교육적 기능을 강화시켜나가면서 치료적,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능도 가져야 할 것임. 한편 근로사업장은 훈련적 기능보다는 임금수준이 향상된 보호고용이실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방향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논의되어 져야 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한 소득 이하를 대상자로 함에 따라 근로
 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중요한 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만, 소득활동 기피로 근로의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시 고용을 통해 복지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로 복지인센티브 제공방안 모색을 통해 일하는 장애인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져야할 것임.
- 직업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대 다수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

-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들에 게 적절한 직업재활지원서비스 체계의 정립으로 실질적인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직종개발과 진로탐색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취업 후 관리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기위해서는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근로지도인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고등교육 수혜율이 저조하여 질 높은 직업생활을 하 기에는 자격자체가 미달에 되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직업재활국의 경우 학습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 외 고등교육 지 원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는 능력 있는 장애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 교육 그리고 복지 등 관련 부처 간의 취업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기존 정책의 시너지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3-6-1)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고용노동부)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공적인 장애인고용기업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2 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사업장은 기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 위주로 설립되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도입(2008년 1월 14일)하였으나, 대기업의 참여는 저조 하고, 장애인의 의무고용률도 저조함에 따라 추진됨.

□ 사업목적

○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 될 것으로 전 망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내용

○ 「1사 1자회사」설립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 설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여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장려하도록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을 완화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적 제도 강화

○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118개소가 운영 중임. 장애인 근로자 2,857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2,029명(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 71.0%)임.

〈표 2-9〉 표준사업장 현황 및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선정	설	립	설립중	예산액	결정	지원	의무	상시	장애	중증	장애인	
	취소	운영*	결심장	함정 에건틱	금액	금액	인원	인원	인원	인원	고용률	
	165	47	118	-	73,505	70,930	49,644	2,205	5,419	2,898	2,055	53.4

^{*} 운영: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02년부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08년부터 누적건수임

○ 2011년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로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나) 문제점

□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장애인단체는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주요성과

□ 사업성과(2011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의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 도가 시행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해 2011년 과세 년도 분 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 25개소(일반형 15개소, 자회사형 10개소) 신규 설립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379개 창출함.
 - 고용의무사업체 10개소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12개 기업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함.

⟨표 2-10⟩ 표준사업장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명, %)

										(-	1. TEU	
	신청	선정	취소	유지	예산액	결정	지원	의무	상시	장애인	중증	장애인
	1218	[건경	TIT.	ㅠ시 메인력	금액	금액	인원	인원	원	인원	고용률	
일반형 표준사업장	59	15		15	5,865	5,795	5,795	206	483	222	177	46.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0	10	-	10	4,795	2,790	2,004	154	245	157	90	64.1

※ 2011년 12월 말 기준

□ 사업성과(2012년)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설립을 기 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무상지 원금 지원 시한을 연장하고 「1그룹 1자회사」설립 운동을 추진하였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하고, 설립 기업에 대한 금 융지원을 지속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비율을 60% 이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1사 1자회사」설립운동을 위해 2008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1차년과 2차년은 당해년 예산집행률 100%이나 3차년인 2010년 에는 97%임. 5년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은 1차년에는 53.9%, 2년차에는 100% 그리고 3년차에는 79%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성 이 있음.
- 2011년 3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시업주가 공동투 자형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시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 였음.

□ 성과달성도

○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증대하였음. 중증장애인 고용 율이 매년 조금씩 상승되었으며 원래 목적인 60%보다 높은 결과가 나 타남.

나) 총평

- □ 본 사업은 2002년부터 표준사업장으로 시작되어 자회사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출자해 설립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이중 중증장애인 50%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동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공동투자형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조정하여 사업 확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개정으로 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 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아 사업의 효율성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3-6-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보건복지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경쟁고용 및 보호고용제도의 한계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증 위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제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시 되었고, 또한 능동적·맞춤형 복지로의 패러 다임이 전환되고 국가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인력 창출의 다각적인 모색 이 필요하게 됨.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임.

□ 사업내용

○ 현재 소규모 직업재활시설 운영형태를 탈피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장」으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2011년도의 경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2개 지역을 신규로 공모·선정하였음. 서울 도봉, 경남 양산을 선정하여 총 55억원(국비 27.5억원, 지방비 27.5억원) 설치비 지원을 하였음12).

¹²⁾ 원래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음. 초기에 장애인 100명 이상(중증장애인은 60% 이상)고용하고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을 최저 임금의 80% 이상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기능보강시업 예산확보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함.
 - 2010년 118억 → 2011년 243억원
- □ 2012년 현재 선정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13개소이지만 실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8개 사업장임.
 - 매분기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한 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나) 문제점

- □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의 다수고용사업장 운영기준 충족 미흡
 - 2011년 중증장애인 디수고용사업장 장애인 평균고용 34명, 평균임금 582 천원으로 기준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음과 같음.
 - 시범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이 신규 창업사업장으로서 안정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 최저임금 80% 이상 지급 및 근로장애인 고용 목표 달성에 상당시간 소요
 - 사업장 운영주체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경영 능력·마케팅·수 익 창출 등에 한계 노출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부담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결과 장애인 고용 등에 있어 기
 존 직업재활시설과 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영 능력 등에 있어 한계가 있음.

3) 주요성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장애인 고용 목표 완화를 100명 → 70명으로 조정하였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새로운 운영모델 모색
○ 기존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개별
화·분절화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조직화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의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다수고용 확대를 위한 시
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업종 다양화를 위한 노력
○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의 장이
인직업재활시설 육성을 통해 장애인 디수고용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판로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소득향상 및 고용기회 증대
4) v3-7L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본 사업은 기존의 경쟁고용 및 보호고용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계획되었음. 또한 경증 위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인한 중 증장애인들의 고율률 정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중증장애인들 을 고용하여 기존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 추진되었음.
- 사업계획 취지는 바람직하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직업재활시설 의 운영방안과 큰 차별성이 없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원활할 사업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적 성과결과에 따른 결정은 적절치 않을 것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본 사업은 원래 취지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률이 50%인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시기별 신청 편차 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정부예산 우선 확보식 신청으로 사업 내용변경 등 빈발 및
 사업추진 지연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시범사업과 관련 워크숍들을 추진일정에 맞게 진행하였음. 또한 운영평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본 사업 운영방안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개선방안을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으 며, 새로운 직업재활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성과달성도

- 본 사업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의해 초기 계획했던 사업소 개소보다 1개소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음. 그러나 사업수 추가는 있었으나 예산중액에 의한 추가가 아님으로 원래 사업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하야 할 것임.
- 달성율은 매년 계획대비 사업소 선정 개소가 많아 1차년 150%, 2차년 125% 그리고 3차년 150%의 달성율을 이룸.
- 그러나 성과달성도와 관련하여 사업소 개소에 대한 결과물은 있으나 실제 고용인력에 대한 통계 및 임금 등에 대한 보고 결과가 없어 사업의 타당 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나) 총평

□ 구체적인 사업실적의 필요성

○ 기존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 운영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로 개발된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의미 있는 사업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의 평가는 몇 개소의 사업소가 설정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와평균 임금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나 평기근거로 제시하지 못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실적 및 내용이 조사되어져야 할 것임.

□ 다수고용사업에 대한 모델제시의 필요성

-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초기 취지와 는 달리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계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업장이 있음.
- 기존 직업재활시설 운영과는 큰 차별 없이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 임.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으로 단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성 패를 가리는 방향성이 아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래 취지에 맞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일반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통

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활성화하고자함.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도입·추진되고 있으나, 우선구매품목 및 비 율이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공공기관의 구매 가 미흡한 실정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생산품을 믿 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선구매대상 품목 확대 등의 정 책 개발 및 시행의 변화가 필요시 됨.

□ 사업목적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재활, 소득보장 등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우선구매 대상을 서비스·용역부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장애인생산품 인 증제를 본격 실시(2008년)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활성화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및 우선구매제도 강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정(2008년 3월)을 계기로 우선구매 제도 및 구매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2010년에는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우선구매의무 강화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 * 2010년까지는 18개 품목에 한정하여 품목별 5~20%씩 구매하는 방식

□ 우선구매제도 관련 인프라 강화

- 업무수행기관 운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육성사업의 효율적 수행 도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확대 : 196개소(2010년) → 260개소(2011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운영(2회, 2011년 4월, 10월)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절차 및 기준" 결정,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2011년 8월)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공공기관 대상의 우선구매제도 홍보 강화

- 전 공공기관을 권역별로 나누어 구매담당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인지도 제고 (2011년 5월, 11월)
- 구매담당자 교육 시 장애인생산품 전시회를 열어 제품홍보 및 구매유도

□ 사업 실적

○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이 상승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 을 가늠할 수 있음.

〈표 2-11〉 2007년~201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단위 : 억 원)

					(ਦਸ - ਸ ਦ)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매액	1,557	1,320	1,658	1,902	2,358

- 중증장애인생산품 신뢰도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구매담당자 및 종사자 교육 실시(종사자들에게는 경영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확대
 - 품질인증(ISO,KS 등)획득 지원
 - 생산품 포장디자인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장애인생산품 홍보(전시판매전, 키탈로그제작, TV 등)

나) 문제점

- □ 낮은 실적과 생산품 품질에 대한 문제점
 - 2011년의 경우 법정구매비율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55%를 달성하여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군수물품·의약품·건설자재 등 특정 품목이 총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함. 따라서 장애인우 선구매를 필수화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등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 불만이 장애인생산품 전체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품질관리 대책이 필요함.
- □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실적관리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유통·정보제공 등 미흡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유통 및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집계를 위한 유통정 보 시스템 부재

- 웹기반 시스템 부재에 따른 구매실적 저하가 우려되고, 엑셀서식을 이 용한 실적 집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신뢰도 문제 초래
-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불구하고 구매담당자의 무관심·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관리가 미흡함.
- 구매수요가 큰 공공기관에 대한 유통·정보제공 등 전문적 서비스가 미흡하 여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마련이 필요함.

□ 본 제도 운영상의 한계 노출

○ 공공기관 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의무구매비율 적용에 따른 일부공공기관의 불만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기 관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심층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을 하 여야 할 것임.

□ 수의계약을 위한 법적 근거부재

- 수의계약 대상 시설을 우선구매특별법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한 정함에 따라 기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음. 즉, 계약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지정시설 중 다수가 환경이 열악한 영세시설로써,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등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별도의 구매시스템이 필요함.

3)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 2011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평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확대로 장애인근로자 고용증대

- * 지정 생산시설 수 : 196개소(2010년) → 260개소(2011년)
- 2012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안) 수립(4월)
 - * 전년 실적 대비 5% 이상 구매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세부지정기준 근거 마련
 - * 장애인고용비율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절차 및 기준" 고시)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통계관리 전산화
 - * 공공기관별 실적 관리를 위한 국기(D-brain) 및 지방(e-호조) 시스템 개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실무 매뉴얼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신뢰도 및 시장경쟁력 제고

- 특히, 2011년도의 경우 생산시설종사자 교육이 상·하반기 2회 실시(267명 참석)하였으며, 품질인증(ISO, KS 등) 획득 지원(동천 등 27개소), 포장디 자인 지원(가브리엘작업장 등 23개소)을 하였으며, 이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38개소 점검 실시 : 16개소 시정 명령 조치, 2개소 지정취소 유예, 4개소 지정취소)함.
- 이밖에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구매관련 정보제공,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 및 지정관리 온라인 접수, 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기준강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ISO, KS, HACCP, 친환경 등) 획득지원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역 량강화 교육 실시 등 추진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과 중중장애인생산품 신뢰도 및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계획하였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5개년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 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이 확대되었고, 장애인 생산품 공동브랜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품질표준화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시행에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어 공동브랜드는 도입하지 않았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예산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음.

□ 성과달성도

○ 본 사업의 달성율을 살펴보면 2008부터 지속적으로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고 있음. 특히, 2008년도의 경우 서비스 용역을 포함한 우선구매대 상 확대로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입 및 품질 인증지원 확대함. 2010년도의 경우도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였음.

나) 총평

□ 본 사업은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일정 비율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구매담당자의 낮은 인지도와 생산품 부가가치 저하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사업의필요성으로 인해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정책적 보완이 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를 뒷받침할 인프라 부

족 및 세부적인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본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꿈드래'라는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음. 그 외실무자 교육 등도 주관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유통 및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집계를 위한 유통정보 시스템이 없음. 따라서 웹기반 시스템 부재에 따른 구매실적 저하가 우려되고, 엑셀서식을 이용한 실적 집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신뢰도 문제도 초래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나, 여전히 경제활동실태는 열악하며, 장애인의 실 업률도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축이 되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장 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수급권 자로 전략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생활함으 로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게 됨.

□ 사업목적

○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임.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등을 실 시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기 여하였음. 전체 5,000명(2008년) → 10,300명(2011년)
 - 장애인행정도우미 : 2,000명(2008년) → 3,500명(2011년)
 - 장애인복지일자리(연계형 포함) : 3,000명(2008년) → 7,000명(2011년)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2010년 신규추진(2011년 기준 300명)
- □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과 안 마사 자격증을 소유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장애인안마 사 파격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음.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매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적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나) 문제점

- □ 일자리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참여자의 근로조 건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일 수 또는 시간을 줄여 조정함에 따라 참여 장애인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 참여자 사후지원 미비

-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유형 개발, 신규 일자리 개발 및 참여 독려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참여 종료자에 대한 일반고용 전이 체계가 미흡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2011년)에서 시급한 사업개선사항으로 고용전이 대책마련이 32.2%로 높게 나타남.
- 공공부문에 한정된 일자리로 다양한 시장여건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연계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일부 참여 자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원하지 않고 현 일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적극적인 취업전이 대책이 필요하고, 신규참여자의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득변화에 따른 수급권 박탈 및 감소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남.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주요성과

- □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도모
 -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통해 총 10,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사업별 추진내용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 전국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및 보건소 등 공공기관 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기회 제공 및 소득증진에 기여함.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일반사업장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함.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 란한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로당 등 노인여가 시설 이용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함.

□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수 확대

⟨표 2-12⟩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구 분	일자리 침	증가율	
l 也	2010년	2011년	0/12
계	6,717	9,461	40.9%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2,529	3,264	29.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3,952	5,907	49.8%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236	290	22.9%

-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발굴 및 적용 확대
 - 타 장애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적합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2-13〉 2011년 신규개발 장애인복지일자리 유형

사업 유형	시범사업수행기관/배치기관	추진 결과		
Food은행원 (푸드뱅크 업무도우미)	선린종합사회복지관 / 북구사랑나 눔 푸드마켓, 푸드 뱅크	* 계획 대비 추진 결과 우수 * 정신장애인대상 푸드마켓 및 뱅크에 적 합 직무로의 보급 및 확대 가능성 확인		
실버케어팀 (경로당지원서비스연계 일자리)	천안시 정신보건센터 / 송학당, 목련경로당	* 계획 대비 추진 결과 우수 * 정신장애인대상 경로당지원서비스 적합 직무로의 보급 및 확대 가능성 확인		
버스청결도우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구청셔 틀버스, 복지관버스차고지	* 계획 대비 추진 결과 우수 * 지적장애인대상 버스청결도우미 적합 직 무, 전국적 보급 가능성 확인		

- □ 사업유형별 참여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
 - 장애인일자리참여자, 담당공무원,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교육(3회)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주요직종에 대한 직무매뉴얼 제작 및 배부(1회)
 - 장애인일자리 정책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분야에 대한 정책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장애인일자리 확대 적용방안 분석(2건)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임. 장애인일자리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안정적 고용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적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계획되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2008년부터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시각장애인안마 사업 그리고 직종 확대 등이 추진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음. 중증장애인 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우체국우편물 분류, 도서관사서보조, 관공서청소도우미, 보육도우미, 병원린넨실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등 21종의 일자리가 개발되어 중증장 애인들의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예산계획과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 예산 대비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봄.

□ 성과달성도

○ 2008부터 2011년까지 성과달성도를 분석해 보면 2008년 목표 대비 달성 율은 모든 영역에서 100%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점차적으로 달성 율이 높아지는 성향을 띄고 있음. 성과목표를 장애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을 잡는다면 성과달성도 목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총평

□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고용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011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955,187명(39.0%)이며, 그 중 중증장애인은 95,010명으로 9.9%에 불과함.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취업장애인 중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6.6%에 불과하며, 93.4%의 취업장애인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일반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들의 일반고용, 지원고용 등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 증장애인들은 아직까지도 타 취약계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특성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이 매우 어려움. ○ 특히, 중중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장애로 인한 고용 불안이 가중되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취업 전 훈련과 보호고용, 취업후 적응지도 등 맞춤형 통합직업재활서비스 등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대책이 필요시 됨.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하는 것임.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186개 소, 2011년) 이외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조사연구, 직업재활전문가 교육훈련, 직업재활관련 대외 홍보사업 등 추진 등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현장중심 사업추진

○ 현장 중심의 내실화 있는 사업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인의 취업 및 취업장애 인들의 (고객) 만족도가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등 양적·질적 성과가 나타나 는 사업임.

⟨표 2-14⟩ 연도별 사업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백만원)	16,300	16,664	16,664	16,664
취업인원(명)	4,846	5,385	5,500	6,069
고객만족도	80.4	81.5	84	84.5

- □ 사업수행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 2009년 '평가체계개편 연구'를 통하여 기관유형별, 특성별 개선안 마련
 - 3년 주기 평가체계 및 매년 성과평가제도 도입
 -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예산차등 지원
- □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등
 - 시각·청각 중증장애인 직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시각 디지털영상속기, 청각 양말직조 등
 -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직업재활프로그램 지원
 - * 모바일 웹, 봉제, 양초공예 등
- □ 현재 시행중인 사업 내용 및 실적
 -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재활 관련 인프라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함.
 - 2011년 166억원 예산으로 직업상담 및 직업재활계획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32,823명, 직업적응훈련 9,511명, 지원고용 1,342명, 취업알선 10,182명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취업 6,069명 달성하였음.
 - 공공영역의 중증장애인 안정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28명 고용을 목표로 카페·매점 7개소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 취업 후 근속유지, 직무민족 제고를 위한 '직무보조인' 60명을 사업체 현장에

배치하여 취업초기 업무요령 습득, 시업주와의 의사소통 지원을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예산동결

○ 예산동결에 따른 지역의 신규기관 선정 등 서비스기반 확충이 어려워 서비 스 지역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수혜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표 2-15⟩ 연도별 사업수행기관 및 직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실적

(단위 : 개소, 건)

			(611.712, 6)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수행기관 (개소)	186	186	186
직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실적 (건)	104,713	105,300	102,810

□ 취업유지를 위한 지원 부재

○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 이후 직무적응, 직장생활적응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취업 유지율이 낮아 취업보다 취업유지 지원이 더 중요함. 따라서 취 업 후 취업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직장적응 및 직무적응지원에 비중을 두고 직무보조원 지원을 통해 지속적, 집중적 직무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 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3) 주요성과

- □ 2011년의 경우 지원금액은 166억원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사업수행기관 187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였음.
 - 중증장애인 취업인 수 증가 : (2010년) 5,500명 → (2011년) 6,069명

⟨표 2-16⟩ 중증장애인 취업인 수

(단위 : 건)

							· - · -/
구인등록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확정	적응지도	지원고용 (취업)	적응훈련 (수료)
16,388	32,823	16,054	10,182	6,069	10,441	1,342 (676)	9,511 (3,462)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접근성 및 취업유지율 제고하고, 다양한 지역사회기관(복지-교육-고용)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취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취업 후 직무보조원을 추가 지원함.
- □ 장애청소년의 취업전 교육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 런 기관 확대, 수행기관 중심 사업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직업재활수 행기관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등 추진
-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중중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장애로 인한 고 용 불안이 가중되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취업전 훈련과 보호고용, 취업후 적응지도 등 맞춤형 통합 직업재활서비스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실임.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의 취업인원의 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사업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임. 다만 예산 증감없는 사업계획 확대는 사업의 질적 저하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계 획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한 재원집행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한 직업재활프로그램(서비스)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호고용, 일반고용,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계획임.
- 공적영역에서의 신규일자리 발굴 및 확대
 - 지자체 등 공공기관 건물의 카페·매점 설치 지원으로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봄.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직업재활시설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임.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역 안배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추가 사업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나) 총평

□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기여

○ 우리나라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현황은 경증장애인들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현저하게 낮음.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현황은 27.5%로 경증장애인들의 72.5%와 비교하여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외국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은 쉽지 않은 과제임.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은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본 사업은 166여억 원 사업예산으로 약 6,069여명의 취업실적을 내고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임.

□ 체계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 들13)도 꾸준하게 진행함. 본 사업의 효과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증액이 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개수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의 업무는 수익모델이 아닌 관계로 민간재원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제5절 장애인 시회참여분야

1. 차별·인권 / 추진실적 점검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장애개념의 변화

¹³⁾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발전방안연구,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연구, 장애인정책포럼: 중증장애인일자리 창출방안 등

- 장애 개념이 개인의 의학적 손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하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사회적 억압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확대되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ICF를 통해 '생심리사회적모델 (bio-psycho-social model)'의 채택을 통해 장애 개념에 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조합을 시도하였음.
 - 2006년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일뿐만 아니라 또한 장애란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태도적, 환경적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

□ 국제사회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로 범주화하면서, 이는 '인간의 모든 권리와 근원적 자유를 장 애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하고 보호하며 보장하기 위함이 며, 더불어 장애인의 타고난 존엄을 존중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라 고 명시하였음.
 -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법,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 조직들과 협 의할 것과 또한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하여 '정 당한 편의제공'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존경과 인권의 향유를 받을 만한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1990년 미국에서 장애인법(ADA)이 제정된 이후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독자적인 법률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차별금지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혹은 헌법 및 일반 법률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틀 을 마련하는 노력이 국제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또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을 선도적으로 비준한 국가로서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정하 게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의 제정(2007년 4월)·시행(2008년 4월)에 따라 동법의 홍보 및 이행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목적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기 위함임.

□ 사업목적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장애인이 편견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기 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행율을 제고하고자 함. 홍보 및 인식개 선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및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있음.

□ 사업내용

○ 차별금지법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등 실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차별개선, 법·제도 등의 정비,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2008년) 및 평가 실시(2009년), 장차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포스터, 홍보동영상, 교육자료 등 제작·배포), 장차법과의 상충 소지가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정비 등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이행 모니터링 시행
-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운영, 장애체험교육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실시
-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및 상충 법령 정비

나) 문제점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 문화예술분야 관련 부처는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는 실정임.
 - ※ 장차법 모니터링시 적정편의제공율 : 문화시설 (51.1%), 체육시설 (54.6%),특수학급 있는 학교(86.1%), 특수학급 없는 학교(64.4%)

-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장애인의 79.6%가 장애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함.

3) 주요성과

□ 법령 이행상황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이행 모니터링 시행
 - 연구용역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2008년 11월~2009년 5월) 및 4차에 걸친 이행 모니터링 시행(2009년~2012년)

□ 법령 홍보 등 국민인식개선사업 실시

- 공공기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신규적용기관 대상 교육실시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행
- 장애에 대한 차별 인식 정도 개선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실태조사에 비해 장애인의 차 별 인식 정도 개선

⟨표 2-17⟩ 장애에 대한 차별 인식 정도

차별 인식 정도	2008년 실태조사	2011년 실태조사
매우 많다	41.1%	31.3%
약간 많다	38.6%	48.3%
별로 없다	5.3%	19.3%
전혀 없다	0.1%	0.9%

□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위해 연구 용역 시행

(2010년 7월~2011년 2월) 및 시정 권고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동법의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 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 본 사업의 추진동 기 및 필요성은 매우 적절함.
- 본 사업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인식개선교육 등 실시, 이행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차별개선, 법·제도 등 정비로서 본 사업의 추진목적 에 부합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본 사업은 크게 법 이행상황 관리체계구축 및 평가실시, 법령 홍보 및 국 민인식개선사업 실시,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의 계획 하에 추진되어 옴. 이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라 하겠음.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이 실시되었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상충법령 정비를 위한 사업 등이 5개년 계획상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음을 볼때 사업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본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여러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시 되는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 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성과달성도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를 상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세부계획 중 '법령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사업 실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표로 평가됨.
- 본 사업의 달성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지도로 측정되었는데, 당해연도 목표치의 88.2%(2009년), 108%(2010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 나 이러한 달성목표치가 5개년 계획상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당해연 도 목표치인 설정한 후 수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5개년계획 마련시 매년도 목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매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나) 총평

- □ 이상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잘 실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오랜 기간 장애계에서 염원해 오던 사항이었고, 3차 5개년계획의 이행 시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시기와 일치 하여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계획의 실천 수 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요인으로 파악됨.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1996년 12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 인복지발전 5개년계확"을 수립토록 결정함에 따라 제1차, 제2차 장애인복 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매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만을 단순 작성·제출함에 따라 체계적·효율적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목적

○ 추진실적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잔여 계획의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만족 을 높이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임.

□ 사업내용

○ 매년 1회 5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중간평가(2010년) 및 최종평가(2012년)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매년 추진실적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2011년에는 중간평가 가 이루어졌고, 2012년에 최종평가가 진행되었음.

나) 문제점

- □ 현재 추진실적의 점검은 매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만을 단순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내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업부서의 노력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제시되지 못하는 등 성과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에 예정되었던 중간평가가 명확한 근거없이 1년 미루어졌으며, 모 니터링센터 운영이 실무위원회로 대체된 것은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주요성과

□ 지난 1~2차년도 5개년계획이 매년 추진실적이 취합 보고된 것과 비교해 3차년도 5개년계획에서 처음으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계획의 실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제1차,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미흡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실적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의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고 효과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동 사업을 5개년계획의 주요 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음.
- 매년 1회의 추진실적 점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로 이루어진 사업 내용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매년 1회 5개년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진행을 하였고, 중간평가의 경우 당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되어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센터 운영은 실무위원회로 대체되었음. 이는 정당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함.

 □ 성과달성도 ○ 계획내용의 일정 조정 및 일부 사업내용의 변경 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년 1회 추진실적 점검, 평가단 구성을 통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의 성과목표의 달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나) 총평
□ 5개년계획의 실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과제로서 3차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로계획대비 이행 수준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장애여성 근로자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참여 증대 ○ 여성장애인 교육기회 요구 증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요구 증대 및 자녀양육부담 완화 요구 증대 ○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증대 요구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장애이동복지지원법(2011년) 제정 ○ 장애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적 지원 강화 ○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부담 완화
□ 소비자의 자유선택권 강조와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대두로 욕구 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대
- 기관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강화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여성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지원 강화가 필요시 되고, 가중되는 육아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여성근 로자에 대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소통방식 지원 및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사회적 배려를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확산, 장애여성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장애여성 근로자의 차별금지, 그리고 육아지원을 위해 이용 대상사업장을 매년 10%씩 지속 확대 추진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위해 1년차에 직장보육서비스 476개소(설치 269, 위탁 47, 수당 160), 2년차에 523개소(설치 284, 위탁 44, 수당 195)를 설치함. 3년차에 578개소(설치 312, 위탁 58, 수당 208)설치함.

□ 직장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

- 4년차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기준을 완화함. 2011년 4월 「영유아보육 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충수를 3층에서 5층까지 완 화함. 인근놀이터 인정기준도 완화하여 도로 횡단금지에서 왕복 2차선 이 내차로 횡단 가능하도록 조치함.
-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함.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주체를 사업주 조합에서 산업단지 공단·입주자 대표까지 확대함. 보육실은 1층 설 치가 원칙이나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공동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 이상 5층 이하에 설치를 허용함
-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공동설치 등 의무이행 독려(1분기, 3분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을 강화하여 교재 및 교구비 월 120~480만원 신규 지원함(2011년 3월, 고용노동부).
- 재정지원은 1년차에 설치비를 무상 1억, 공동 5억원, 융자 5억원 지원함. 운영비는 무상 1인당 월 80만원 지원함. 2년차에 무상 1억원, 공동 2억원, 융자 5억원 지원함. 3년차에 무상 2억원, 공동 5억원, 융자 7억원으로 지 원 확대함.

○ 세제지원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100분의 10으로 확대함. 부동산 관련 세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나) 문제점

- □ 장애여성 근로자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확산의 필요성
 - 장애여성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
 - 직장보육 서비스 이용 접근성 확대 및 장애여성 근로자에 관한 차별금지
- □ 직장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위한 재정, 세제혜택 지속 및 지원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 이행 사업장에 관한 규제방안 마련

3) 주요성과

- □ 장애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양육부담 완화
 - 직장보육시설 확대 매년 확대함. 1년차 25개소 목표대비 36개소 설치로 144% 달성, 2년차 27개소 목표 대비 47개소 설치로 174% 달성, 3년차 30개소 목표 대비 55개소 설치로 183% 초과달성함. 직장보육시설 확충노 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기반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 직장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편의 제공 내용 홍보,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용 역 실시,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전문가 회의 등 현장 의 문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는 장애여성의 인적자원 활용과 사회참여 활동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으로 사업배경과 목적이 적절함.
- 성과지표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 그리고 재정 및 세제지원 강화는 성과지표로서 적정함.
- 사업내용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뿐 아니라 향후에는 직장보육시설 내에서 제공해야 할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유연한 보육시간 확보 등 구 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맞게 단계적,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1년차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직장보육서비스 제 공사업장을 확대하고, 설치비 및 세제지원을 하였음. 2차 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직장어린이집 편의내용 홍보와 직장보육서비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함. 3차 년도에는 사업장의 직 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를 독려하고, 인가기준 합 리화를 추진함. 직장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조성 및 재정·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함.
-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임.
-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의 대응성면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해 1년차에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연2회 정기 실 태조사를 실시함. 의무이행실태조사 및 독려사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함. 2 년차에 민간·직장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인가기준 합리화,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많은 사업체들의 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일치함.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목표치와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달성률은 5개년계획 목표 대비 달성률은 낮은 편이나, 당해연도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은 매우 높은 편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의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목표달성율은 높음.
- 목표산출근거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직장보육시설 확대라는 목표산출근거가 뚜렷함. 일반적인 직장보육시설 확충과 뚜렷이 구분되는 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양육지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목표산출근거가 필요함.

나) 총평

- □ 계획대비 높은 성과를 나타낸 사업으로 평가됨. 장애여성 근로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비 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시설설치규제 완화와 재정적·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점도 사업의 노력성 면에서 높이 평가됨. 직장보육시설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문제점 발견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점 검과 관리강화에 노력함. 이러한 노력성은 서비스 질 개선과 높은 성과를 나타낸 요인이 됨.
- □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설정한 목표인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도 적절한 계획이었음. 다만 사업내용 부분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장애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연도별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였고, 지속적 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짐.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달성율도 높게 나타남.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여성장애인의 성·장애 편견과 이중차별, 저학력 및 고립생활 등으로 비장 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장애여성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지원기반이 미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참여 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여성 특성에 맞는 전문 지원기반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참여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유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목적

○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여성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10년부터는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 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등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함양하고자 함. 또한 의료·법률·취업알선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노동

시장 진입의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도모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가정·사회·경제·문화적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여성 특화교육, 지역사회 기관연계(건강·의료, 법률, 취업 알선 등), 자조모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 화함. 특히, 2010년부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해 상담에 서부터 생활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고, 여성장애인 취업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 여성장애인 리더 발굴 및 DB 구축
 - 여성장애인 리더 DB 1,859명 구축
 - 국가인재 DB 시스템에 등재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화, 장애인정책관련 정부내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임원 채용시 추천 등 여성장애인 인력자료 제공에 활용
-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운영
 - 여성장애인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국 22개소(서울 4개소, 경기·인천·전남 2개소, 기타 지역 1개소) 운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고충 및 진로상담, 기초역량 강화교육, 지역사회 기관 연계(교육·의료·법률·취업알선 등) 및 사후관리 등 ONE-STOP 종합 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
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 여성침	, 아이를 위하여 새일 여성인턴 의무
연계 비율 신설(연계 인원의 10%) 및 즉	식업교육 훈련과정 교육생 선발 시
우선선발	
○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사업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 운영	
○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5개과정,	고학력 미취업 청년장애인 취업지
원 2개 과정 운영	
○ 여성장애인 특화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나) 문제점	
□ 여성장애인의 성·장애 편견과 이중차별, 저학	격 및 고립생활 등 취약한 사회 환
경 개선을 위한 지원기반이 미비하여 여성장이	내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전국적으로 22	개소에 불과하여 여성장애인의 접
근성이 미흡, 센터 추가 지정이 필요함.	
□ 새일센터의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으	로 취업교육은 강화되었으나, 실제
취업연결 성과는 미흡함.	
□ 우리나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의 고령	층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
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필요함.	

3) 주요성과

- □ 여성장애인 인력 현황 파악
 - 1차 년도 여성장애인 리더 1,859명 DB 구축함.
 -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 국가인재 DB에 등재한 여성장애인 리더들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여성장애인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경제역량강화 등 73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 2011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지역사회기관 연계(교육·의료·법률· 취업알선 등) 및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
- 2009년도 고충 및 진로상담 4개 지역(서울, 인천, 경북, 전남) 956명 지원 함. 특화교육은 4개 지역(서울, 경기, 경북, 광주) 533명 지원함.
- 사업운영실적(2011년, 12월 31일 기준) 총 52,169명 지원함. 상담 20,972 명, 역량강화교육 19,029명, 지역사회연계 3,756명, 사후관리 1,172명, 자조모임 7,240명임.

□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지원

- 2008년도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76명 교육, 43 명 취업함.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은 33명 교육, 9명 취업함.
- 2009년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97명 교육, 47명 취업함. 고학력 미취업 청년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34명 교육, 4명 취업함.
- 2010년부터 2011년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장애인 특화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하여 240명 취업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목적관련,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사회적 배제문제 해결에 적합하 사업목적을 수립함.
- 사업내용관련. 여성인력관리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새일 센터 등의 사업내용은 여성의 고충처리 상담, 역량강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교육, 취업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적절한 사업임.
- 성과지표는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구성됨. 각 추진사업 별 사업실적 건수와 참여인원이 명확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 준수성은, 여성장애인 인력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적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와 새일 센터 등의 세부 추진 사업들이 단계적,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되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예산집행 효율성은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꾸준한 신규사업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예산을 확보한 노력성이 높게 평가됨. 사업특성별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짐. 2008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예산편성은 3.5억원이나 실제 편성예산은 4.27억원으로 예산확보율은 122%로 초과달성함. 집행예산은 4.12억원으로 5개년 계획 목표대비 117.7%를 달성함. 2009년도 계획 예산은 3.1억원이나 실제 편성은 10.29억원으로 5개년 계획대비예산확보율은 331.9%로 초과달성하였고, 집행예산은 10.24억원으로 5개년 계획 목표대비 330.3%를 달성함. 2010년도 계획예산은 5.8억원으로, 실제 예산편성은 12.26억원으로 5개년 계획목표 대비 예산확보율은

- 211.3%로 초과달성함.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으로 12.6억원과 여성장애인 직업교육훈련으로 12.6억원이 편성되어 지속적인 사업확대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여건, 상황변화에의 대응성 관련, 2009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이어 여성장애인 고충처리 및 사회진출상담, 특화교육지원 등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요구의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로 평가됨. 2010년도 예산 확보율이 2배로 증가한 것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신규 개소로 인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추진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구, 현장지도점검 및 관련전문가 등과의 수시간담회 진행,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상황을 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한 대응의 평가됨.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매년 각 사업의 이용인원과 프로그램 건수를 통해 파악하였고 목표치와 명확하게 일치함.
- 달성률은 각 사업마다 100% 달성함. 첫째 요인은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둘째 요인은 어울림센터 수나 새일 센터 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낮아서 여성장애인 이용의 편의가 낮은 것에 기인함. 향후 여성장애인의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나 새일 센터의 신규 추가확충이 필요하고, 이용인 개발을 위한 적극적 개입(outreach) 및 지역별 여성장애인 인구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목표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한 과학적 개입시 도, 현장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워크숍 등 협의를 통해 명확 한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여성장애인 참여율을 높이는 명확한 목표산출근

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나) 총평

원이 필요함.

-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 운영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고유한 활동공간을 마련함.
 상담, 기초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전국적으로 22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 미흡함. 센터의 추가지정 및 예산지
- □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취업 지원,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장애인 취업지원, 고학력 미취업 청년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개발은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 □ 여성장애인을 위한 미 개발영역의 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과 수행, 지속적인 관리 및 평가의 노력을 하였음. 사업개발, 시행부터 평가까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욕구와 상황변화를 반영한 간담회, 워크숍 등의 협의과정도 수행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노력으로 평가됨.

3. 편의증진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유니버셜 디자인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 차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인천전략)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의 실 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제품개발과 도시환경 건설에 장애인을 포함 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뜻함. 그러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 닌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치되어야 함.

□ 생활중심의 편의시설

○ 과거 공공기관 중심의 편의시설이나 비교적 대규모 시설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규모 시설주의 부담을 고려하였으나, 그 결과 실제 생활중심 지역의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음. 권리에 기반한 생활중심 편의시설의 욕구가 강하며, 차별금지법 역시 생활중심 정당한 편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추구되고 있음.

□ 편안과 더불어 안전성의 강조

○ 시설물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의 빈도 가 높아지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예방 과 피난, 구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늘어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휠체어의 수평 승하차가 가능하고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애인, 고령자 등 전체인구의 24.5%를 차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휠체어·유모차의 탑승이 가능하고 일 반 버스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은 CNG 저상버스를 보급하는데 있음.

□ 사업내용

○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적 근거

○ 장애인의 저상버스 보급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상 수도권은 50%, 지방은 30%를 달성하도록 하였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은 1,833억원을 투입하여 3,899대를 보급함으로써 저상버스 보급률은 12% 수준임.

나) 문제점

□ 저상버스 보급률 저조

- 저상버스가 보급이 저조하고, 버스 이용이 환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상 버스가 바로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길어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음. 장애인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이용할 수 있음에도 특별운송수단을 이

용하기가 쉬움.

3) 주요성과

□ 저상버스의 국산화

○ 저상버스를 국산화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저상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 라는 목표로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나, 국산화가 어렵고, 국산화가 된다 하 더라도 비용이 크게 나려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저상버스 보급에 차 질을 가져오게 됨.

□ 저상버스의 보급

○ 저상버스 구입시 구입가격을 보조하여 줌으로써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음.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여 옴.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저상버스 국산화가 실패하여 국산화로 인한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지 못함. 이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국의 기술상의 문제라기보다 지원 금액의 부족 과 개발사의 투자 부족으로서 개발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됨. 국산화의 의도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추진에 있어 관리가 문제가 된 것이라 판단 됨.
- 저상버스를 50% 보급하려면 최소한 5천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예산의 확보 부족으로 보급률이 12%로 나타남. 이는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

하였어야 하며, 지자체와 버스회사에 대한 적극적 독려와 인센티브가 병행 되었어야 함. 그러나 장애인의 욕구나 이동편의성을 고려할 때에 50%를 보급하려는 계획은 타당한 계획이었음.

○ 추진계획을 5개년계획의 마무리 해인 2012년으로 하지 않고, 2013년까지 로 하여 목표 측정 평가를 하기가 어려움.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서울시의 경우 2011년 저상버스 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집행함 으로써 추진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
- 국산화 실패 이후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 국산화를 마무리하거나, 아니 면 보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미진함.
- 버스 회사의 입장에서 부품값이 고기인지라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피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나 설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평가 됨. 또한 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구입 교체 차량 전량을 저 상버스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음.

□ 성과달성도

○ 2012년 현재 4,821대의 저상버스를 보급 및 운영하여 목표 달성률은 4분 의 1에 불과하였음. 그리고 저상버스 국산화의 실패로 저상버스 보급에 큰 차질을 가져옴.

나) 총평

□ 저상버스 국산화

○ 저상버스의 국산화 실패 요인을 찾고 저상버스의 가격을 인하시키며, 한국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여수 엑스포에서 저상버스의 한국형 이 기증된 것으로 볼 때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가격의 인하 효과가 미약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다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저상버스 보급

- 현재 보급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꾸준히 저상버스 보급이 늘고 있음. 단순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버스 회사에 설득 가능한 정책으로서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이 없는 도시철도 역사의 경우 계 단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경우 지하철을 이 용하는 것이 불편함.

□ 사업목적

○ 도시철도 역사에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여 장애 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 448대, 에스컬레이터 614대 설치하는 것임.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도시철도와 지하철의 편의시설 설치

-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의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엘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은 매년 꾸준히 시행하여 왔음.
- 역사의 편의시설이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다른 역사 를 통해 밖으로 나온 다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나) 문제점

□ 설치의 어려움

- 지하철은 여러 방향으로 출구가 있고, 도로에 연결된 통행로의 경우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으며, 공사 기간이 거의 1년이 소요되어 공사 기간 동 안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함.
- 과거에 준공된 역사의 경우 계단을 쪼개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설계상 매우 어려운 지역이 존재하기도 하며, 설치비용이 많이들어 일시에 많은 공사를 하기가 어려움.

3) 주요성과

□ 편의시설 설치율

- 도시철도 공사와 지하철 공사는 목표치의 편의시설 설치\를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임.
-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의 역사의 장애인 접근성은 매우 향상되었으며, 안 전사고가 빈번하던 것 역시 줄고 있어 앞으로 관리와 사고 방에 유의한다 면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많은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

- 여 시각장애인의 추락방지 등의 문제가 해소됨.
- 그리고 많은 사고를 유발한 리프트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 이 많고,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로 교체된 곳은 리프트의 철거가 필요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역사의 편의시설 계획이 수도권에 한정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다른 지역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신규 설치 지방지하철들은 더욱 편의성이 좋게 설치됨.
- 리프트의 설치를 계획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안전과 편리성을 도모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 빈도를 감안하거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하게 추진함.
- 아직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역사가 존재하는데,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성과달성도

○ 목표달성도는 매우 만족스럽게 되었음. 편의시설의 유무와 위치 등을 장애인 이 미리 알고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

나) 총평

- □ 엘리베이터의 설치
 -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편의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소 가 되었음.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 성이 매우 좋아졌음을 알 수 있음.
-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을 정비(보행우선구역사업) 하고 건축물 설계 또는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사회적 약지는 물론 일반시 민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BF 인증제도)시 됨.

□ 사업목적

○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 사업내용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지정, 중장기 추진방안수립 및 보행우선구역 표준 설계 매뉴얼 개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 시 행임.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 지정

-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여 시범 지역으로서 타 지역의 모델이 되게 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 도록 함.
- 보행 우선구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함.
- 교통 혼잡 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우선구역 선정이 필요하였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 편의증진법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에게는 사전에 이용 정보를 알려주고,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을 설치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시설물들은 다른 시설주에게 하나의 모범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살아 있는 설계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나) 문제점

□ 보행 우선구역 지정

- 보행 우선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상가의 적재물들을 제거할 법적 근거가 미 약하여 보행에 방해물이 되고 있음.
- 보행 우선구역을 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음.
- 보행 우선구역의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용이나 우선구역 지정의 권위에 문제가 있음.

□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 도입

○ 법적 조건을 갖추어 인증제는 통과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나 기준이 약하여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불편사항이 많아 인증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3) 주요성과

□ 보행구역 지정

- 매년 5~7개 지역을 선정하여 보행 우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는데, 설계비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보행 우선구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보행우선구역 설계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설계지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지침이 없어도 유사한 설계지침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 어려움은 없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토지개발공사 2개소에서 장애물 없는 인증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장애물 없는 환경에 대한 인증제가 추진되고 있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매년 보행자 우선구역 지정은 국고로 설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하였으나, 지원없이 앞으로 많은 지역으로의 확산이 필요함. 그리고 보행 자 우선구역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인증제 는 설계 단계부터 사전심사를 받고 후에 본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장애인 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많은 촉진제 역할을 하였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장애물 없는 인증제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공 사를 맡겨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인증기 관에 대한 지정의 기준을 정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
- 보행자 우선구역의 경우 보도블럭의 손상이나 볼라도의 미규격 설치 등 상 당한 문제가 많았으나 점차 안정된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음.
-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의 경우, 초기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어 개조하는 시설주에게 완벽한 시설물을 요구하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 이용의 무장애 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안정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

□ 성과달성도

- 그 많은 시설물 중 연간 단 몇 곳만 보행 안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경쟁적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 화를 만들어 냈다고 평할 수 있음.
- LH(주택)공사의 경우 장애물 없는 환경 평가지표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개정으로 자전거도로가 120센티미터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90센티미터의 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법을 위반했음에도 인증심사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음.

나) 총평

□ 우선보행 구역 지정

○ 우선보행구역 지정으로 장애물이 없는 보행자 우선구역이 지정되어 편리성 과 안전을 기하게 되었음. 그러나 보행자 우선 안전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 제가 아니라 교통문화로 정착되어야 하므로 지속적 지정과 더불어 캠페인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
 - 인증 심사제도가 편의시설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편의시 설 설치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므로 장애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됨.
- 4. 정보접근성 (정보통신보조기기)
-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정보격차 대상과 환경의 변화
 - 단순한 PC 이용 및 교육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환경으로의 변화
 - 장애인의 정보 활용이 단순한 정보검색에서 직업, 교육 등으로 확대
 - □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의 보장 강화
 - 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웹 접근성 인증제도 시행
 - 정보접근성 보장 대상의 확대(웹 접근성에서 정보통신, 가전 등으로 확대)
 - □ 장애인의 정보화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확대
 - 장애유형 및 장애대상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
 -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교육 추진
 - □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발·보급 및 확산의 필요성
 - 장애인 삶의 질 개선과 첨단기술·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현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 추진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은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교육, 구직 등 사회·경 제적 활동의 필수도구로서 국민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컴퓨터 보유율 등 인프라는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의 인터넷 이용율은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 층이 웹 사이트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강화가 필요함.

□ 사업목적

○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한 정보 사회를 영위할 수 있는 정보 접근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지식정보사회의 필수 도구인 웹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여 실생활에서의 정보접 근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웹 접근성 관련 기술표준 제·개정 및 지문 실시,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현황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한 웹 접근성 실태 조사 실시, 웹 접근성 관련 우수 사례 공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운영, 웹 접근 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웹 개발자 및 운영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을 개최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사업 목적 및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평한 정보사회를 영위할 수 있는 정보 접근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지식정보사회의 필수 도구인 웹에 대 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여 실생활에 정보 접근권 제고
- 웹 접근성의 기술적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웹 접근성 관련 기술표준의 제 정과 개정 및 자문 실시와 웹 사이트 접근성 현황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한 웹 접근성 실태 조사 실시
- 웹 접근성 관련 우수 시례 공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운영 및 웹 접근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웹 개발자 및 운영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 웹 접근성 법·제도 현황

- 현재 웹 접근성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웹 접근성 관련 기술적인 기준은 정보통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KICS.OT-10.0003/R1, 방송통신위원회)과 행정안전부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참"(행정안전 부고시 제2011-32호)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리고 스마트기기 등에서 장애인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8호)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 한 접근성 제공을 하도록 규정함.

○ 또한, 웹 사이트 관리자, 개발자들이 웹 사이트 개발시 접근성 있는 사이트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테츠 제작 기법2.0", "플래시 콘텐츠 접근성 제작 기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현황

-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05년부터 웹 접근성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웹 접근성 준수율을 상 당히 높아졌음.
- 2011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향후 모바일 환경에서 장애인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높은 사이트를 심사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600여개 사이트를 심사하였음.

□ 인력양성 및 이용환경 기반조성 현황

- 매년 공공기관 및 민간 개발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하여 전문인 력 양성 및 인식제고를 추진함.
-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 하고 온라인 기술자문, 세미나 개최,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웹 접근성 이 용환경 개선을 추진함.

나) 문제점

□ 웹 접근성 법·제도 적인 측면

○ 웹 접근성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

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동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정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이나 타 법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관 련기준이나 근거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단계적 범위를 동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나 단계적 범위의 대상과 범위가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상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범위의 개정이 필요함.

□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측면

-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꾸준히 높아졌으나 민간부문, 예술단체 등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 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실 태조사의 확대가 필요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단체 등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방법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소지 가 많으므로 공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 련 법률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인력양성 및 이용환경 기반조성 측면

- 웹 접근성 관련 전문교육을 매년 꾸준히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교육 이수에 만족하지 말고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하 여 웹 접근성 전문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3) 주요성과

□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준수율 향상

○ 2005년부터 조사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94.8점, 91.9점으로 웹접근성 준수율일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며, 공사·공단 등은 88.4점으로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지방공사,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은 각각 69.9점, 66.5점, 59.8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은 법·제도 개선, 관련 기술기준 제정, 실태조사, 인력양성, 인식제고 등 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재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기술적인 기술 기준도 2005년 국가표준 제 정과 신기술 반영,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술의 지원 정도를 반영하여 2010년 표준을 개정하여 추진하였음. 2005년부터는 꾸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을 권고하여 웹 접근성 준수율을 향상시켜왔음.
-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정보화시대에 장애인 의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격차해소의 가장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웹 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을 꾸준히 높여 왔으며, 관련 법·제도 마련, 관련기술 기준 제정,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추진일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꾸준히 실시하였음. 또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시 웹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상·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 웹 접근성 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제작기법 방법을 개발하여 개발자들에게 제시하므로서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는 웹 접근성 전문교육, 웹 접근성 실태조사, 품질마크 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평가지표 중 웹 접근성 전문교육 인원 및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 사이트 수는 정량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사이트 수는 심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성과지표 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나) 총평

□ 웹 접근성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 교육, 인식제고 등 다양한 사업

- 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향상되었음.
-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기술자문, 제작기법 보급, 세미나,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향상 되었으나 문화예술,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웹 접근성 수준이 낮아 개선이 필요함.
 - 온라인쇼핑, 인터넷뱅킹, 온라인교육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민간부문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7)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가장 기본적인 원거리 의사소통 수단인 전화의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 히, 약 10여만명의 중증청각·언어장애인의 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신중 계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함.

□ 사업목적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각, 언어장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비장애 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 상을 도모하는 것임.

□ 사업내용

○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여 문자·영상 중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컴퓨터,

3G 휴대전화기, 영상전화기, 네이트온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제도적인 측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4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 통신사업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0년에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의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1호)으로 제정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 터 방송통신위원회로 사업이 이관됨.
- 현재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 기기별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특수번호 127번으로 통합하여 사용함.

□ 다양한 기기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현황

- 인터넷을 통한 문자 영상 중계서비스 제공은 물론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문자 영상 중계서비스 제공, 영상전화기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과 네이트 온을 통한 중계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
- 말을 할 수 있으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발화청취 가능자용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활성화 현황

-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야시간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중계서비스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민원처리,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각종 전시행사 참기를 통하여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방법 홍보 및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통신중계서비스 홍보 추진
-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추진

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통신중계서비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인 제공의지가 부족하여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통신사업자가 원거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다양한 기기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측면

○ 청각·언어장애인이 유·무선 환경에서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원거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공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공중전화 같은 인터넷기반의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필요

□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활성화 측면

○ 일상적인 대화를 중계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나 금융거래, 민원상담 등 민감 한 영역의 중계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통신중계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통신중계서비스 통화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3) 주요성과

- □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중계서비스를 의 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근거 마련
- □ 24시간 언제든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실현
 - 365일 24시간 전화통화 및 의사소통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통신 중계서비스를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제공
- □ 통신 중계 서비스 실적
 - 대부분 계획대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기간 중 실적이 계속 증가하였음.

〈표 2-18〉 통신 중계 서비스 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통신 중계 서비스 예산	15억	12.7억	12.1억	12.1억	51.9억
서비스 제공 건수	191,808	307,097	386,354	505,478	1,390,737건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가장 기본적인 원거리 의사소통 수단인 전화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 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 는 비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법적 근거마련 이전부터 시범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청각·언어장 애인의 원거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추진하였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시간의 확대, 법·제도 개선, 홍보, 새로운 기기에서의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전체적인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법·제도 개선 및 마련을 추진 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스마트기기 이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는 연도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건수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휴대폰 중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다양한 서비스 홍보 활동 등을 성과지표로 구성함.
- 성과지표를 단순한 통화중계건수 목표대비 실제 통화제공건수으로 하는 것 보다는 중계통화서비스 성공률, 중계통화서비스 대기율 등 청각·언어장애 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지표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나) 총평

- □ 청각·언어장애인의 원거리 의시소통 지원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제공함.
 -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원거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민원처리, 물건구매, 개인통화 등 비장애인이 전화

를 통하여 대화하는 모든 영역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 금융거래, 비밀대화 등 특수한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와 개인 간 사적인 통화내용에 대한 중계서비스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발생 우려가 있으므로이에 대한 개선이 마련 필요함.
-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구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격차해소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 대비 격차지수는 감소 추세이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 고 있음.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시켜 장애인 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산적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 사업내용

○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복지관, 단체 등)을 통해 장애인 대상 정보 화교육을 지원하고 1~2급 중증장애인의 정보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방문정 보화교육 및 IT긴급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임.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등 직업재활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정보활용 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해 정보화교육에 따른 성취감 고취 및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 제도 현황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제1조와 제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 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정보화교육 현황

-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복지관, 단체 등)을 통하여 장애인 대 상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1~2급 중증장애인의 정보생활을 촉진하 기 위해 방문정보화교육 및 IT긴급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등 직업재활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정보활용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교육 에 따른 성취감 고취 및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 애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부족함.

□ 장애인 정보화교육 측면

○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집합교육, 1:1 방문교육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IT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화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방송과 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정보화교육이 세분 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보화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화교육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3) 주요성과

- □ 장애인 대상 집합, 방문 등 정보화 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정보 화 능력을 향상시킴.
 - 전국 147개 장애인복지관, 단체 등을 통해 2011년 60,768명의 장애인에 게 집합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3,363명에 게 1:1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IT분야 취업·창업을 원하는 장애인 141명에게 IT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음.
 - 장애인 정보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화한마당을 매년 개최 하였으며, 장애인 방문강사 대상 보수교육 및 특강을 실시하여 질 높은 정 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장애인 정보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의 수가 계획 대비 초과 달성됨.

⟨표 2-19⟩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목표	57,800	35,000	35,000	35,000
실적	63,281	55,556	64,704	60,768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의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시켜 장애인 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산적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집합,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하여 교육하고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IT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음. 성과목표를 집합, 방문교육 등을 이수한 교육생 수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이수한 교육생 수로 목표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포함할 수 있는 성과목표로 수정·보완 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세분 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또는 장애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능력향상에 기여 함. 전체적으로 추진일정 등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조직 개편으로 장애인정보화 교육 사업이 정보통신부와 체신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되었으며 효율적인 행정여건 대응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관련 규정을 개정

하여 추진함. 정보화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신규 교육 과정 개발과 효율적 정보화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과 시각장애인 전담 방문강사 양성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상황변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성과달성도

○ 연도별 집합, 방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 제전 개최, 정보화교육관련 통합콜센터 및 장애인 대상 원격지원 소프트웨 어를 통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함.

나) 총평

- □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수요에 따fms 기초, 실용, 직능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을 추진, 장애인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
 - 또한 방문,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정보활용능력 제고 및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 기본적인 정보화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으로의 변화 및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IT전문교육의 추진이 필요함.
 - IT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함.
-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 1) 계획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IT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은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SNS 등 사회 전 분 야에 걸쳐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수단이며, 장애인과 전체 국 민의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 격차는 2004년 15.5%에서 2010년 10.2%로 개선되었으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2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특히, 신체적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나 일반 제품에 비해 고가(高價)로 구성되 어 구매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구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정보 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및 보급을 통하여 공평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 하고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디지털 정보격차 (Digital devide) 해소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을 제고하고자함.

□ 사업목적

○ 장애인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개발·보 급하여 정보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있음.

□ 사업내용

○ 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지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화면낭독 S/W,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제도적인 측면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 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32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에서는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현황

- 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70%(1억원 이내)와 기업부담금 3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정부지원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실제 상용화되어 출시되는 제품 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상용화 성공률이 높아 개발지원사업의 효과가 매 우 높은 것이 특징임.
- 고가의 외산 손질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악한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활성화에 기억하고 해외수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억함.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현황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화면낭독프로그램, 특수키 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정부지원금 80%와 개인부담금 2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매년 4,000여명의 보급하는 사업임
-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급품목을 다양화하고 일정기간 일정을 지정하여 신청, 심사,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중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찾아가는 형태의 순회전시회와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지원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법률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함(예 부가세 영세율지원 확대, 세금감면 등).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측면

○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소기업 육성과 국산화를 통하여 저렴하게 장애 인에게 보급될 수 있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확 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 발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측면

○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수에 비하여 보급률이 낮으므로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상설화된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및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 할 필요가 있음.

3) 주요성과

-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값비싼 외산 제품 대체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해외수출을 통하여 우수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소기업 육성(세계 22개국 수출 등)하고 국산보조기기의 보급품목 선정비율(2007년 43.5%→ 2011년 82.5%)을 확대하였음.
 - 값비싼 외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한손 키보드의 경우 외산(450천원)을 국산(50천원)으로 약 88.9%의 가격을 낮

추었음).

○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함.

⟨표 2-20⟩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

(단위 : 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급목표	5,000	4,000	4,000	4,000
보급실적	6,526	4,354	44214	4,186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 직업, 일생상활이 불가능 했던 영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음.
 -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조영찬, 나사렛대학교), 시각장애인(최영, 판사) 등 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함.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IT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은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수단이 됨. 신체적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나일반 제품에 비해 고가로 구성되어 구매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구입이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보급하여 정보사회에 참여를 유도하고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육성 및 국산화를 통하여

양질의 저렴한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칭펀드 형태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임.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육성을 위하여 매년 3개 과제를 선정 월별진도관리, 중간평가, 현장실사, 상용화 등을 통하여 개발제품이 상용화되어 장애인에게 보급되는 등 계획 일정대로 추진함.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장애인 4,000명에게 매칭펀트 형태로 보급하는 보급사업은 보급품목선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접수, 순회전시회, 상담, 보급대상자 성정, 보급제품 보급, 이용수기 공모 등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타부처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사업과 중복방지 및 협력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행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가기 위하여 스마트기기 등과 연계되는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건수 및 보급건수로서 정량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지원 건수 및 보급건수 모두 적절하게 목표율을 달성하였음
- 성과지표를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건수와 함께 상용화 건수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경우 고가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고가제품과 저가제품의 보급건수로 나누어 성과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나) 총평

- □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과 보급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성과를 거두었음.
 - 고가의 외산제품을 국산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개발성과물이 상용화 되어 판매되는 비율이 타 정 부 개발과제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보급사업을 통하여 직장, 학교 등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활용한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런하였으며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evide)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성과가 있었음. 향후 정보통신 보조기 기를 체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험관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함.

5. 사회참여

가. 거시적 환경의 변화

- □ 포괄적 개발의 패러다임 도입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인천전략)과 유엔새천년계획(MDG)에서 는 포괄적 개발을 강조하여 모든 사회개발에 장애인을 포함한 개발을 강 조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시설물의 설치가 아니라 모든 정 책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말함.
- □ 정책 참여에서의 당사자 참여 중시
 -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당사자에 의한 정책을 중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자기대표성과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당사자의 참여는 정치·문화사화·경제 모든 분야의 참여를 추구하고 있음. 이는 서비스에서도 당사자가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함.

- □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
 - 통합된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었으며, 발달장애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구현 하기 위한 권익옹호 시스템과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 주택 등 시설물의 편의성과 더불어 안전성의 강조
 - 주택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예방과 피난, 구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나.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 1) 계획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출장시험을 통해 장애인이 운전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합격률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자함.

□ 사업내용

○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에서 출장시험 요청시 시험관을 파견하여 장내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 험용 차량을 구비(200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외출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편의시설 간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되지 않으면 불편함. 그리고 휠체어 등 보장구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짐이 있을 경우 등 차량이 있어야만 이동성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도어 투 도어' 이동을 가능하게하는 신체의 일부와 같아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소지 유무가 사회참여 성공 가능성의 한 요인이 됨.
- 장애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거나 운전 연습을 하고자 하여도 학원에서 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가 없어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별도의 운전연습장이 필요함. 장애인의 편 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평소 연습하는 곳에서 운전면허 시험관이 파견되어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의가 요구됨.

나) 문제점

□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부족

- 국내에 장애인 운전면허 연습장은 국립재활원 운전면허 연습장과 송파구에 소재한 연습장이 전부임.
- 장애인이 특장차를 소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려고 하면, 시험장까지 차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아직 면허가 없다면 불법을 저질러야만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임. 그러므로 별도의 연습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장애인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음.

3) 주요성과

□ 운전면허 시험관의 파견

- 운전면허 시험관의 파견 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그 이유는 장애인이 시험 관 파견을 요청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임. 송파구의 연습장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규격이 되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었고, 국립재활원은 자 체 건물 건축 공사로 장기간 운전연습장이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용 특수차량을 구비하여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보조장치가 장애인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음. 이는 이 사업이 예산이 동 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었기에 생긴 문제라고 평가됨.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장애인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이 사전에 예약을 하면 수요일마다 연습장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무료 교습을 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파견을 하 지 못한 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였음.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를 주고자 하였으나, 환경적인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음.

□ 추진과정의 효율성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의 운전연습을

위하여 운전면허장을 장애인에게 개방한 것은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청각장애인의 자동차 표지판 발급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제작・배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큰 편의를 제공함.

□ 성과달성도

○ 시험관 파견은 실적이 없어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장애인 운전을 위한 장소가 없는 현실의 문제이지, 사업을 통한 지원의 의지를 가 진 경찰청의 문제는 아니었음. 적절한 운전시험 장소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시험장을 개방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다른 노력을 기울였음.

나) 총평

□ 운전연습장

○ 장애인의 운전시험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계획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그리고 기존 운전면허 시험장 장애인 차량의 시설들이 일률적이어서 다양한 유형의 보조장치가 필요하였는데, 예산의 미확보로 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등에 차이가 없는 경우 보험 가입 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나, 과거 장애인의 사고발생 위험 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등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한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이 필요시 됨.

□ 사업목적

○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감독정책을 마련 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시스템 및 업무담당자 인식 등을 개선하는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보험가입 거부

- 장애인의 보험가입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빈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건수 중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상품 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나) 문제점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 지체장애인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고 있음. 여행 시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임.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맹은 별로 나들이를 하지 않아 보험사고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이 허용되지만, 저시력인은 돌아다니다가 시력이 약하여 다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지적장애인은 법적 행위능력이 없다 하여자필서명의 효력을 문제로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있음.

-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보험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고나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상품개발을 할 수가 없고, 회사의 손해가 없는 안전 한 상품을 개발하다보니 상품의 보상혜택이 매우 낮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김. 그리고 장애부위나 장애와 관련된 후유증 관련의 보험은 전 혀 담보할 수 없으며, 생명보험에서 사망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은 보상을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비준 유보조항이 보험과 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 조 항인데, 이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유보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이 필요함.
-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자나 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무효 조항은 장애인 의 보험가입에서의 차별을 생산할 수 있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 나,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를 최중증 장애인으로 재해석하여 장애로 인한 거 부와는 다른 문제로 보는 것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음.

3) 주요성과

□ 관련 법 정비

-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2011년 1월 24일)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보험상품 인수업무 가이드라인 적용

○ 보험계약 인수업무 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관계법규를 자의적·기계적 으로 해석·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가입 거부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인 수업무 Guideline 마런·통보(2011년 7월)

□ 차별금지 감독 강화

-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수 프로세스 정비
 -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심사절차 정비 및 임직원 교육 강화
-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실태 등을 민원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 장애인 전용보험 활성화

4) 평가

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계획의 적절성

- 보험업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재차 강조한 효과가 있으나, 금지로 인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고 구체적 감독절차가 없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업무에 있어 담당자의 교육 효과와 더불어 차별 방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약관에 대한 정비가 아닌 보험가입 심사규정에 대한 내규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
- 장애인전용상품은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으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추가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 우대 상품이 되어야 함. 장애인 의 사회적 보장을 정부와 사회, 개인이 서로 분담하는 형태의 전용 상품이 아닌 장애인 전용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일반 상품의 거부를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사실상 거부를 위하여 장애인상품을 불리하게 만들면서 구체적 사고에 대한 자료가 없어 안전한 운영을 위해 조치할 것이라는 명분을 주었음.

○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은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는 모니터링인지, 국가인권 위의 모니터링인지, 감독기관의 지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어 판 단하기가 어려움.

□ 추진과정의 효율성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경우, 감독기관은 국가인권위와 업무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 판단됨. 감독기관은 진정사건에서 차별로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철저한 감독을 권고받은 경우에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진정 사건 중 절반 정도가 진정사건 과정에서 지쳐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는 문제를 만들었음.
- 감독기관이 법률의 정비나 가이드라인 개발, 직원의 인권교육 등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음.

□ 성과달성도

○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수 프로세스 정비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였음. 그리고 임직원 교육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음. 인수내부규정 을 재점검하고, 종사자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 활동이 있었으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봄.

나) 총평

□ 다양한 정책 마련

○ 법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한 노력이 인정됨.

□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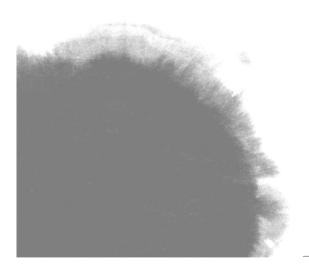
○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영실태와 민원평가를 한다고 계획 하였으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실제로 반영되거나 불이익에 대한 구 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임.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에 대 하여 감독기관의 적극적 감독보다는 개별 회사의 문제로 보아 합의나 가 입자의 포기로 종결된 사건이 많은 것은 아쉬운 일임.

□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개발

○ 장애인 전용상품을 별도로 개발한 실적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 우대상품이 아니라 보험료는 높고, 담보력은 낮은 상품이 많았음. 특정 부분, 예를 들면 작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올리면서 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낮추는 등 장애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아 외면을 받는 상품이 된 것은 아쉬움. 정부의 일부 지원을 통한 장애인전용 상품개발이나 보험사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의 인센티브형태가 아니면 자애인 전용상품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임. 장애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만든 전용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장애인에게 유리할 수 없기 때문임.

3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3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 1. 전달체계
-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중심형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여 복지 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관련 기관과의 업무 영역 명확화 및 협력 관계가 필요함.
 - □ 서비스 유형화 및 자원 발굴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함.
 - □ 장애인의 참여 및 지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참여와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과의 협력 체계마련이 필요함.
 - 2. 소득보장
-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14)

- □ 현행 장애인연금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 및 지급액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임.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지급대상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보건 복지부안에서 설정하였던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 함.
 - 지급액의 경우, 기초급여는 법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A값의 5%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하고, 부가급여는 현행급여액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추가비용(2011년 23만원)의 100% 보전을 목표로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1-6) 장애이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 □ 민간보험상품으로 개발된 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이 필요함.
 - 아울러 민간보험방식의 모형에 대한 대안적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자녀 미래 보호비용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미국 (Financial Security Accounts for Individual with Disabilities)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미래의 장애 비용에 대한 보장을 국가와 보호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 방식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14) 5}개년계획에는 제도의 명칭을 기초장애연금으로 하였으나, 제도 도입 단계에서 '장애인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이하에서는 '장애인연금'으로 서술하고자 함.

3. Harry 3 11 1227 11	3.	기료보장/장애인보조기-	7
------------------------------	----	--------------	---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1-7)) 의료서비	스	확중	및	접근성	강호
-------------------------	-------	--------	---	----	---	-----	----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접근성 강회는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로 조
	사되어 장애발전 계획의 중요한 요소임. 이번 평가에서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장애인 정책에 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음. 재활의료 서비스 확충은 지역적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며 장애유형
	및 재활 과정에 따른 전문재활의료기관의 역할 정립도 중요함.
	권역별재활병원의 설립도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축과 병행하여 그 역할과 운
	영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활의료시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도 아울
	러 고려하여야 함.
Ш	6개 권역의 재활병원 운영이 운영진의 역량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활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법
	적, 제도적 지원이 아울러 수립되어야 함.
	리추 계절시크시 크리 됩니다 보고되고 시달 시코네 드시스 카드되는 코스틱
	향후 재활의료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함도 필요하
	겠음. 또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
	제정이 필요함.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장애발생이 점진적으로 선천성 요인보다는 중도장애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시 점에서 모자보건 향상을 통한 선천성 장애예방사업은 장애발생의 현황을 근거

로 사업이 진행되어야함.
 □ 또한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대상 신생아의 증가가 예견되므로 의학적인 근거와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한 대상자와 예산추계가 이루어져야함. ○ 5개년계획에 제시했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기금의 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을 반영한 목표치의 수정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함.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장애예방센터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장애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장애의 발생이 질병과 사고로 대별되는 현실에서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화된 기능의 설정이 필요함.
□ 장애의 특성과 재활과정을 감안하면 장애예방 사업은 제도적인 관점과 더불어 임상 의사를 포함한 재활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적일 것임. 장애 예방위원회는 실효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장애예방센터와의 기능중복 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는 교육훈련의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그 기능이 드러날 것임. 장애인 당사자 교육과 재활전문인 교육은 각각 접근방법이 다르고 또한 기존의 민가 교육기관과의 역학설정도 필요함

□ 그동안 국립재활원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TF활동이나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함. 국립재활원에서는 새롭게 건립되는 종합 장

애인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건 강증진 프로그램의 확산과 레저 및 스포츠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교육의 대상을 재활의료전문인으로 집중하면 타 기관과의 차별화와 더불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15)

- □ 보장구의 공적급여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미진함이 있었으나 이는 해당 전 문가와 예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전향적으로 현실적인 급여확대의 추진이 필요함.
- □ 또한 시례관리 사업은 기술적인 접근과 더불어 임상적인 고려가 병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적용 시 재활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함.
 - 기술개발 연구지원은 장애인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용적인 보조도구 개발을 배려해야 하며 산재되어 있는 보조도구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 가 필요함.

4. 주택 및 주거서비스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지원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 수립 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별 보급 목표 를 세워 추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이용자도 주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임.

¹⁵⁾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산업화지원

□ 중증장애인 탈시설자가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도록 함.
□ 장애인을 위한 주택 보급을 분양과 임대로 나누어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체계와 기준 마련 및 서비스 이용 계약방식 도입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시스템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안 마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기준 마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고시안 마련
5. 자립생활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내실화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함.

- -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기관 지정 및 양성 추진 등
 - 후견업무 수행 및 이용지원
 - 시민후견인 활성화, 후견비용 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지원사업 추진 등
 - 성년후견인 관라감독
 - 성년후견인 등록추천체계 및 후견업무 감독체계 구축 등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법령 중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 한 규정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개정추진 등
- □ 관계 부처 및 부서 간 협의체 구성
 - 성년후견제의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 및 협조가 필요함.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 활동지원 이용지원체계 구축
 -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 용을 지원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 활동지원 신청자격, 급여시간 등 급여체계 개선
 -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적정한 시간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유형, 장애정

도 및 생활환경 등을 반영한 추가급여의 개선이 필요함.

- □ 수급자격 갱신의 안정적 추진
 - 수급자격 갱신으로 인해 활동지원 시간이 일시에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모가 필요함.
- □ 활동지원 서비스 질 향상 추진
 - 활동지원기관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활동보조 수가 인상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 서비스 내용과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등화
- 6. 국가유공상이자
-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 □ 고령국가유공상이지를 위한 정보접근성 강화방안 마련
 - 신문, 인터넷 등 최신 자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고령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정보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정기적인 전화상담, 사례관리 등 보다 적 극적으로 보훈정책을 알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서비스의 단절 없이 개개인의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보훈병원에서 요양원, 재가복지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을 통 합하고 의료와 복지가 적절히 조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정책개발

-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직·간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이 처에 대한 치료, 상담,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재활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함.
- 일반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중복과 누락 방지책 마련이 필요함
- 생활수준의 항상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 □ 보훈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설건립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즉, 전문 의료진의 확보, 보훈의료 연구에 대한 지원, 보훈관련 보장구 제작 및 연구의 활성화, 고객(환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등을통해 비로소 보훈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의료관련 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보훈병원들의 접근성 악화를 고려하면 대형병원 위주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 단위별로 PTSD 등 신체적 치료 외에 심리적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래 클리닉 등 소규모 시설을 건립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현재 보훈재활체육센터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일반 국가유공상이자들 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보훈재활체육센터는 국제대회 참가자 등 전문선수 육성 위주로 활용되어지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보훈재활체육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함.
 - 일반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활체육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회 의 공평성을 고려하면 지역별 재활체육시설의 설치 혹은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국가유공상이자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개방된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이군경복지회관은 각 지회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주 2~3회 운영이 되고 있음. 또한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운데 서비스의 양과 질 양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상이군경복지회관의 서 비스 다양성과 질적 제고가 필요함.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 □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예산확보 및 관련단체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의 타당성 및 보상 수준의 합리적 기준 설계를 위해 국외 상이제대군인 보상사례 검토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명확한 기 준을 설정해야 함.
 - 최근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어지는 젊은(20대 초반~30대 초반) 경상이자의 경우에도 6, 7급의 보상금 차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전체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함.

7. 장애아동가족지원(여성장애인 폭력)

(1-5) 장애이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및 사업 내실화
 -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설 재활치료기관 신고제 시행에 따른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언어재활사 수급현황 조사 및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0	바우처	결제방식	을 당월	결제에서	익월	결제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하
	고, 본	인부담금	직접 납	후 방식에서	너 전기	자바우처	선납방식으	로 전환	한하으로
	써 서비]스 이용 <u>역</u>	의 편리도	모가 필요	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

-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중증장애이동 기구에 대해 필요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도우미의 원활한 공급도 필요함.
- 전자바우처 제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서 이용자의 선택권 부 여 및 부정수급의 방지가 필요함.

□ 시각 및 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확대 및 활성화

○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독서지도, 놀이지도 등의 추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비 장애아동까지 포함하는 등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이동 부모지원 사업 추진체계 마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2012년 8월 4일)에 따라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 의 운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범운영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이동의 양육, 재활, 가족관계 강화 등 부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이동의 건전한 양육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고려와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과 가 정폭력 문제에 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문가 및 시민교

수요가 높음.

육 프로그램 배규일, 교육교재 등을 꾸군이 개발하고 모급이 필요암.
 ○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확대가 필요함. ○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수화통역인의 지원이 필요함. ○ 피해 장애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정부위탁형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 설치 전환 및 장애인 피해상담소의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의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해바라기 이동센터 이용편익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심리치료 대상을 13세 미만 장애이동에서 19세 미만 장애청소년 연령기까지 확대가 필요함. ○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수화통역인의 지원이 필요함.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1. 보육교육
(2-1-1) 장애아동 보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통합교육 지향의 장애 영유아 보육정책 강화○ 연령의 특성상 통합보육의 교육적 효과가 높으며, 양질의 통합보육에 대한

○ 비용효율적인 면에서도 통합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조가 바람직함.

□ 교육과학기술부 유관정책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의 강화가 필요함.
(2-1-2) 장애이동 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 영아에 대한 교육 지원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개발 뿐 아니라 보급과 적용결과에 대한 수요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연령을 고려하여, 학급 중심 모델 이외에 전문가 팀에 의한 가정방문형 모델 등으로 확장이 필요함.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달성도 측정근거 제시 ○ 교원의 확보가 필요함. ○ '의무교육'에 준하는 서비스를 유아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질적 수준의 보장 노력이 필요함.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장애 대학생 입학 및 대학생활 지원의 질적 측면 강화 ○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전문가 배치 유도 등의 실시가 필요함. ○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 및 지침 마련, 장애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필요함.
 □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의 개선 및 보완 ○ 평가매뉴얼 개발 및 평가 실시의 시간적, 재정적 타당성의 확보가 필요함. ○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실질적 제도개선의 효과 창출이 필요함.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 인식개선 대상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개발 및 실제 인 식개선의 효과 평가가 필요함.
 - 이미 해오던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사, 학생, 부모 등 인식 개선대상의 특성에 맞고, 변화하는 사회적, 시대적 발전을 반영하는 새로 운 발전적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실제로 인식개선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세부과제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기초로 삼아야 함.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 □ 장애성인은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및 학력,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과 목적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한 집단이므로, 이 모든 요인에 대하여 각 영역 및 지역간 균형이 있고 장단기적인 계획과 방향성 및 체계성을 갖춘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어야 함.
- □ 지원하는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질적 강화를 유도하도록 함.
- □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통합적 정책 방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평생교육 담당부처와의 협 력 강화가 필요함.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현재의 특수학급 증설 및 순회교사 추가 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

분이므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특수교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해야 함.
□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을 맡은 일반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및 특수교사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통합된 감각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은 향후 더욱 양적, 질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IEP 작성/운영은 단순히 실시/미실시의 문제 이전에, 명확한 작성 방향과 지침에 대한 연구 및 제시가 선행되어야 함.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16)
□ 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특수교육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특수교사 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법 및 통합교육을 위한 IEP 구안 지침 등 세부적 성과 목표 개발이 필요함.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평가조정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세부적인 평가조정 가이드라인 개발 및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의 제공이 필요함.
 □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대안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및 실행체제 개발이 필요함.

¹⁶⁾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 □ 통합교육 및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기관으로서의 특수교육지원센 터 역량강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일부 센터들에 대한 지나친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로 특수교육지원 센터 간의 불균형 유발과 기본 기능의 약화 가능성 초래보다는, 균형 있는 동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 □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진로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합적인 전환교육적 접근 이 필요함.
 - 진로교육의 개념을 전환교육적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전환교육 방법 및 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침 제시가 필요함.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이외에도 진학, 독립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환교육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2. 교육기관 정당한 편의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홍보 노력 강화와, 각종 보조공학 기기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3절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1. 문화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의 개정이 필요함.
 - 2005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사회취약계층까지를 교육의 참여자로 지 원 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특히 제 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에서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도입된 정책은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이라 보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접근권 과 향유권 보장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음.
 - 교육수혜기관에 연간 30회 수업이 실시되는데 무용과 음악을 중심으로 장애인은 소외 아동/청소년/노인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장애인이 교육의 대상자 뿐 아니라 주체적 창작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열악한 여건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욕구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양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 중심별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와 내용도 앞으로 달라져야 할 것임. 또한 장애인이 직접 문화예술강사로 선발되어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게끔 「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정이 필요함.

- □ 맞춤형 멘토(mentor)적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전문 예술가가 되기를 원하는 장애인 학생 등에게 1:1 혹은 1:다수로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강사들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멘토적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로서의 일률적인 활동하는 기간(년 9개월), 주당 시간(12시간 이상), 회당 시간(2시간 이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좀 더 유연한 활동 기간, 주당 시간, 회당 시간을 마련하고, 멘토 강사들의 시간당 비용도 좀 더 높게 유연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문화예술 교육/재교육 실행이 필요함.
 - 창작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강사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 요함.
 - 특히 극단, 오케스트라 등 공연예술 분야는 연출 및 지휘 능력의 향상
 을 원하는 단체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강사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견이 필요함.
 - 단체의 기획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홍보, 관객 동원, 공연장섭외 등을 담당할 문화예술 경영 교육 전문강사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함.
-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와 향수 기회의 확대, 장애인문 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문 일자리 마 련의 내용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2010년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장애인 전문강사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보다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인력으로 충원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장애인 문화예술 강사가 일반 예술강사보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지 만, 유능한 장애인 강사들이 현재 존재한다면 일정 수(쿼터제)의 장애인 강 사를 의무적으로 뽑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서 바람직함.
 - 이는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군으로서의 영역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당사지주의적 교육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 판단됨.

- 예를 들어, '학생' 이었던 장애인이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강사'로서의 역할이 확보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마련의 기초가 될 것임.
-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문화예술학을 전공한 장애인, 또는 국가 공인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장애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풀을 구성하는 '장애인 사회문화예술 강사풀제'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을 위한 전문 문화예술 강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료한 이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활동이 현장에서 자리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이런 측면에서 더욱 더 유효할 것이라 판단됨.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 적절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생활권별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및 공간의 확충이 최소한의 필요조 건이며, 장애인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시설과 공간 확보 문제가 시급함.
 - 장애인 역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그 욕구도 장애유형
 과 등급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필요함.
 -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 복지제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문화예술 시설과 공간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유형과 등급, 그리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도 대다수의 공공 문화예술 시설은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편하며, 특히 시각장애인은 도서관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함.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공간에서의 향유, 창작, 발표의 기회를 확충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문화예술 공간이 있으나 장애인이 이들 공간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 재활과 교육을 위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역시 대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에 장애인의 접근과 활동이 용이한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의 적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들의 이동하기 편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지역별, 장르별, 연령별 예술동아리의 활동을 촉진시켜 동인, 동아리 소모임 및 장르별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이들의 문화예술 참여 욕구를 활성화 시킬수 있음.
 - 지역에 소재해 있는 폐교 중 접근성이 용이한 몇몇 곳을 리모델링하여장애인 창작스튜디오로 제공하는 등
 - 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의 상징적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아트센터 건립
- 이와 같은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 활동 공간 확보, 동인과 예술동아리의 활성화, 그리고 창작 결과물의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아트센터의 건립

의 선순환 구조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의 확대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불어 공존하는 공동체 사회의 이념을 구현하 는 초석이 될 것임.

□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장애인 서비스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 시기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조사된 15개의 중앙과 지방을 대표하는 주요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은 이미 2010년 4월 11일 이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표 3-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 시기

적용시기	적용 사업장
2010년 4월 11일 이호	○ 국가 및 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 미술관

그러나 15개 시설 현황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아래의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고가 필요함.

□ 장애인 접근권 제고를 위한 권고 사항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경우, 접근로(보행접근에 한함)의 구성이 일반인의 접근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접근로(보행접근에 한함)에 점자블록 등의 설치에 대한 구성이 일반인의 접근과 분리되어야 함.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출입구문은 일반인과 동일한 문을 사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우수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친구가 되는 문화예술기관(가칭)' 현판을 달아주거나 예산 책정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권고가 필요함.
 -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문화예술기관에
 대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거나, 문화 관련 기금(문화재단 기금 혹은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검토가 필요함.
-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찾아기는 문화활동' 혹은 이동을 돕는 봉사자와 함 께하는 '모셔오는 문화활동'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공공 문화예술기관 홈페이지의 개선을 권고해야 함.
 -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실정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 관광에 대해 정보제공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 듯이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도 접근성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 매표소 이용에 있어서 일반매표소의 일부분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하 도록 설치해야 함.
 -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설이 마련되어야함.
 -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일반화장실과 함
 께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의 회장실 이용을 위해 점자표지판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함.
- 공연장에서의 관람석은 휠체어사용자와 일반관람객이 함께 이용 기능하도 록 설치되어야 함.
- 공연장에서 휠체어사용자가 무대 후면을 통해 무대에 접근하도록 하지 말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객석에서 바로 무대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공

연장에서 휠체어사용자의 대기실 이용이 무대와 복도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전시 공간 어느 곳이나 휠체어사용자가 일반관람객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 능하도록 권고함.
- 휠체어사용자가 개가식 열람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가 주변의 활동 공 간 및 서가의 높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폐가식 열람실 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데스크의 구조가 고려되어야 함.

□ 시·청각장애인 서비스 제고를 위한 권고 사항

- 시각장애인이 공연 및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점자공연안내 책자, 전시 안 내 점자 책자 등을 갖추고, 문화콘텐츠 청각서비스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한국 점자규정 보급, 시각장애인용 도서개발, 음성지원 핸드폰 마련 등이 필요함.
 - 전시 작품별 해설 서비스(음성)를 제공하거나 작품을 만져보고 감상하는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열람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대부분을 시각장애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영상 시청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권고
 - 공연'전시 중 화면해설 서비스, 보청시스템, 수화통역 서비스 등 개발 및 제공 이 필요함.
- 청각장애인의 자료 열람 및 대출을 위해 지막 혹은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을 권고해야 함.

□ 인터넷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 홈페이지 등에 공연 및 예매서비스 등의 안내를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하 도록 음성지원 혹은 글씨확대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함.
- 휠체어사용자석에 대한 공연 및 전시 예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필요함.
(2-16	i)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있어서 방송사의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작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방송사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송사의 원활한 장애인방송 제작, 편성 및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방송수신기기 보급에 있어서 장애인인 경우 일반인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체육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체육활동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통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함.
	장애인 훈련종목의 특수성·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훈련원 내 전종목 훈련 시설의 마련이 필요함.
	2018 동계장애인올림픽 유치에 따른 장애인 동계종목 훈련장 기반 조성이 필 요함.

○ 일반인과 동일하게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에게 공연장 및 전시장 대여가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장애유형과 지역 특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 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환경 여 건 개선의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초자치단체로의 확대 배치를 통한 지도활동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장애인국가대표선수 강회훈련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함.
□ 주요한 국제대회 참가 및 국내대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스포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장애인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외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1. 고용 및 일자리 (고용노동부)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 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해야 하므로(법 제28조제3항) 2014년 재조정 검토가 필요함.
- 2009년 조정된 의무고용률 2.7%는 일반노동시장의 경제활동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업률이 같아지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당시 장애인구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비장애인의 경제활동기준(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으로 장애인을 파악하고 있어 고용지원과 직업재활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배제되어 있음.
- 할당고용제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성도 의무고용률 재설정의 근거로 작용하는데, 2014년이 되어서도 의무고용 일자리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915 천명(2010년)의 20.7%만을 포함하는데 그침으로써 할당고용제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OECD 주요 국가의 평균 의무고용률(4.4%) 및 장애인구의 증가정도 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함.

□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확대

- 현행 5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300인의 2% 의무고용률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정된 의무고용비율을 반영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기준, 2.7%를 적용한 산식에 의하면 37명{(300×2.7%)=8명, 300/8=37명}이 적정 규모로 나타나 향후 의무고용 적용기업체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준에서 30인 혹은 35인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함.

□ 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체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무사업주와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주가 불일치함.

○ 의무사업주와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주를 일치시키는 것은 부담금 미부 과로 인한 고용유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담금 신고대상 및 절치를 고용 계획보고와 일치시켜 장애인 고용현황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중복행정 에 의한 비효율 해소 및 사업주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고용률 저조기업 부담금 차등부과

○ 현행 고용률에 따른 부담금 차등부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률 증가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 집단은 1.80%로 여전히 저조하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고용의 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부담금을 차등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의무고용 적용대상자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 장애인 대다수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고용평등은 장애인의 현재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와는 무관하게 잠재적 자립 가능성에 의해 정책대상 자 하한선의 결정이 필요함.
- 더불어 직업생활능력의 자립정도에 따라 정부의 고용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1차적 의무고용 적용대상자로 표적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서비스 투입을 집중하고 경증의 장애인은 별도의 보완적 대책을 강 구하여 차별화함.
-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적 장애(근로능력 평가)기준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및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그동안의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시행 및 구분모집, 특별채용제 도입 등을 통해 노력을 한 결과 2011년 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52%를 달성했고, 자치단체(3.78%)와 중앙행정기관(3.20%)은 이미 3%의 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태이나 상대적으로 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성과는 제한적임.
- 또한 2014년에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7%로 상향되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행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야 함.

□ 장애인교원 충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

○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교원 수는 지속적인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하여 의무고용 달성률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 공무원 고용의무 적용제외직군 폐지

- 민간부문의 경우 업종별 적용제외가 2006년도에 완전 폐지되었고,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만 5년간 한시적으로 축소 적용되었으나 공무원의 경우 공 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 여전히 적 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4차계획 기간 내에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직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폐지 직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장애인고용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 □ 여성·고령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 장애인 특화훈련은 동종직무로의 취업, 임금, 고용유지 등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각, 청각 등 몇몇 장애유형에 한정된 사업이 추진됨.

○ 여성장애인과 고령장애인, 신규유입 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대 상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훈련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야 함.

□ 산업수요에 따른 신규훈련 직종 개발 강화

○ 장애인 개인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직종 개발은 노동시장의 산업수요분석과 함께 이뤄져야 함. 그러나 훈련교사가 산업수요와 훈련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원의 전반적인 직업훈련내용을 검토하고 신규직종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 취업서비스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장애인고용공단의 핵심 업무내용을 사례관리로 전환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례관리 정보를 표준화가 필요함. 구직신청 이후 15일이 경과해도 취업이 어려운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사, 취업지원전문가,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교사, 지역사회 재활전문가의 사례회의를 정례화해야 함. 특히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재활전문가가 특화된 영역의 경우 고용사례관리 기능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고용서비스 이용 장애인 인센티브 지원 강화

○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업무에 적합한 장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력의 공공 전달체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고용서비스 이용의 참여유인을 위해 인센티브제공을 강화해야 함. 취업지원 전문 패키지 및 수당을 확대하고, 직업능력및 취업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개발하는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 선배치 후고용 프로그램 확대 및 탄력적 운영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고용 전담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강화된 현장적응훈련을 반영한 지원고용의 개념을 재설정 이 필요함.

□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축과 실효성 강화

- 장애인의 직업능력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전공과 등)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아직 네트워크 기관의 범위, 연계의 목적과 각 기관의 기능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함.
-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과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재활기관들의 기능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지 사, 지역능력개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단위로 서비스의 효과성이 담 보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를 포함함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 장애인고용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통계의 생산과 활용도 제고
 - 향후 경제활동인구조시를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분리하고, 장애인 비정규직 실태, 장애인 일자리 수 등의 통계와 통계자료집을 추가적으로 생산해 낼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통계생산만이 아니라 고품질의 데 이터 관리와 해석을 위해 장애인고용관련 지식, 정보, 전문인력 구축이 병 행되어야 함.

□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

○ 통계강화의 보다나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사의 실시 자체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 표는 각 조시종류별로 범위(coverage), 내용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계량화하여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성과지표는 변화량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한 양적, 질적변화 요소들의 반영이 필요함.

○ 향후 통계의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을 통해 통계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지표 설정이 요구됨.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사업주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 사업주 지원의 다양화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허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영 등 사업주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제도 내에서 우선구매제도, 수의계약 대상에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기업이 제외되어향후 확대지원이 필요함.
- 또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세금감면 (31.5%)'을 가장 높은 비율로 원함(2010년 기업체실태조사)에 따라 향후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통합지원서비스의 안착지원

- 통합지원서비스는 사업주 중심의 종합적 지원서비스로 사업주의 높은 만족 도와 함께 장애인고용으로 연계되는 성과 있는 접근방법임.
- 고용진단을 통한 통합적 지원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선호하는 지원(장 애인고용시설 유무상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현재 정보적 차원의 지원(인식개선 등)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선행적으로 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신설되는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 해야 함.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71.7%가 별도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사업장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기준 및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
- 특히 장애인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낮아져(2008년 29.0% → 2010년 27.1%, 2010년 장애인패널조사),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작업환경 개선의 강화가 필요함.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 표준사업장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 증된 사업체만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표준사업장에 대해 (중증)장애인비율을 낮게 적용하 거나 혹은 표준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반비례하여 (중증)장애인비율 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현행 규정에 따르면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비율 30% 이상,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표준사업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판로지원(우선구매, 조달 납품 등), 인허가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표준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자회사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계약 시 장애인고용 실적 반영비율 강화

-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와의 계약 체결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가점을 주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와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의무고용률을 상회할 경우 가점을 주는 것보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인 방안이며, 선행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지역센터설치 확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장애인기업 수를 고려하여 지역센터를 확대 설치함. 입지 및 물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미설치 지역 10 개 광역 시·도를 평가하여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기존 창업보육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창업지원 확대

-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을 고도화하기 위해 각 단계별 교육기관을 별도로 선정 운영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경제인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 창업 후 사후관리 담당을 별도로 운영하여 발생가능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창업지원 및 교육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웹 접근성 구축 및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상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현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사용 편리성을 제고함.
-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등을 제공 하여 창업준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 □ 장애인 창업지원의 접근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중기청에서 장애인 창업지원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며 심리적 문턱이 높고, 실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장애인들의 보다 효과적인 창업자금의 활용과 창업성공을 위해 장애인고용 공단과의 유기적인 업무공조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즉 중기청 에서 장애인 사례 발굴, 홍보기능 등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장애인고용공단 과 함께 홍보하고 사례를 발굴하는 연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 □ 장애인 고용현장 차별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
 - '기업체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한 세부 문항 및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조사하고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함.
- □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표제도 및 해고보호제도 도입
 - 장애인근로자 대표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장애인들 의 고용관련 이해를 스스로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함.
 - 장애인 해고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해고시 예고기간을 적어도 4주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고용주는 해당 사업장이나 기 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해고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해고동의를 문서로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관할 기업의 경영위원회나 인 사위원회, 장애인 대표의 견해를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 여 결정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

□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

- 근로자가 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부족은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애인고용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애인근로자 개인의 욕구에 맞춘 고용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정비가 필요함.
- 보조공학기기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체계 정비,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프로그램 마련, 직업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와 직업재활상담원 제도의 개선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함.

□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 인증

○ 공공 발주하는 신축, 증개축 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지자체 조례에 명시를 권고함. 특히 사업장 인증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함.

2. 직업재활, 일자리 (보건복지부)

(3-6-1)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고용노동부)

- □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주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마련하였음.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체결하여 모회사와의 인 적교류, 고용계획, 사업전망, 재무상태, 판로개척 등을 검토하여 사업장을 지정하여 단순 의무이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된 고용창 출이 될 수 있는 모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고, 설립된 표준사업장 의 안정적 경영과 판로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3-6-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보건복지부)

- □ 초기 사업 계획 시 사업장 당 30억원 예산 투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그 만큼의 예산투입은 이루어지지 못해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고 려할 필요성은 있음.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확대를 위해 소규모 직업재활시설과는 다른 일정 규모 이상의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임.
- □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고용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은 한계점 이 있음.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육성하여 장 애인 고용능력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최근 들어 사업적 기업 육성이 활발해 지고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직업재활시설 중 생산성이 높은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본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 있음. 이러한노력을 통해 소규모 시설과는 별도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여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역량 형성을 위한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장애인들만이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수 고용사업장에서의 고용경험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경쟁고용으로 전이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연계 및 지원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할 것임.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률이 50%인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시기별 신청 편차가 큰 문제점이 있음. 또한 지치단체의 정부예산 우선 확보식 신청으로 사업 내용변경 등이 빈발하며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지연사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며,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침 제정 및 정규사업으로 전환 검토를 통해 사업의 안정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함.
 - 또한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적 성과의 산 출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품목별·업종별로 연계 및 조직화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현재 도입 단계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를 확대·발전시켜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협의체를 통해 품목을 생산하는 데 따르는 원부자재 납품, 유통, 시후관리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 설들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업종·품목·생산과정 등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품질 및 단가 표준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마련이 될 것임.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제조 업 중심에서 벗어나 1차나 3차 산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종 다양화 등 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들이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서비스분야 장애인직업재활사업단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서비스

업종에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선도 모델 등을 도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모델화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 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 대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의 효과는 미흡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컨설팅을 고려하여야 함. 서울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협회 내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장애인우선구매제도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획득 및 제품포장 디자인 지원, 생산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확대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즉, 민간분야로의 우선구매 확대 및 공공기관 법정구매비율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비영리법인·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큰 민간기관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업무지원시스템, 구매통계 집계등을 포괄하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을 활성화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 □ 본 사업은 당위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일자리수 확대 및 근무조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 방안 수립을 통한 기능 재정비가 필요함.
 - 우선적으로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가 가능한 일자리 개발 및 확대가 필요 하나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적용확대를 고려하여야 함.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취업전이 지원 을 위한 정책마련이 되어져야 함.
- □ 향후 장애유형,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직무개발 및 시범사업 직무매 뉴얼 제작 등을 통하여 신규일자리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애학생, 고령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일자리가 개발 되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참여 자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강을 통해 일반고용으로의 전 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 □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가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함. 재가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 내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관련기관들과의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 따라서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립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 재가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현재 지역 내 직업재활관련기관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적 및 자폐성장애 외 내 부장애인 및 척수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 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직업재활사업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기관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취업한 장애인 들에 대한 취업유지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제는 취업의 질적 성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취업(일반고용)의 양적성과를 넘어 취업이후 근속유지, 직무만족 등 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 총괄적인 전달체계 마련

- 최근 들어 장애인의 노령화와 중증화 등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할 때 앞으로 기관들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원활한 지역사회 기관의 연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전달체계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 요함.
 - 중앙기관과 더불어 지역 내 거점 직업재활 총괄 기관을 두는 것을 검 토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전달체계가 마련된다면 다면화되고 있는 예산구조에 대한 검토나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임.

제5절 장애인 시회참여분야

- 1. 차별·인권 / 추진실적 점검
-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와 같이 연구용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여 매년 다른 기관들이 수행하 도록 하는 것은 모니터링에서 요구되는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결과적 으로 이행 정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외에 대상 기관의 '적정편의제공율'과 '장애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차별경험율' 등을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실제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 □ 5개년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추 진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계획 마무리시까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평가 또한 동일선상에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또한 향후 계획에서는 중간평가 시점을 2년 후 또는 3년 후로 할 것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인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한 방안으로서 당초 추진했던 모니터링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5개
년계획 이행 모니터링 업무에 대하여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이행 점검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5개년계획 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추진실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에서는 매년 이행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장애여성 근로자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 일반적인 직장보육시설 확충과 뚜렷이 구분되는 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성인지 및 장애인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단순 근무시간 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
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등 규제수단 법제화의 추진이 필요함.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함.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증설 필요함. 지역별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서

비스 제공의 거섬기능의 상화가 필요함.
생애주기별 아동기부터 노령기까지의 여성장애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다
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지역산업체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취업지원 서
비스 강화가 필요함.
지역사회 자원기관과의 연계활성화 추진 필요함. 교육, 의료, 법률, 취업알선
등 문제영역별 여성장애인의 종합적 지원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
화가 필요함.

3. 편의증진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저상버스의 연계성 제고

-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연계가 되지 않으면 중증 장애인은 집에서 버스 정 류장까지의 접근성 문제가 새로이 대두될 것임.
-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 2층 버스나 장애인 이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 하고, 마을버스의 경우 소형 휠체어 탑승가능한 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임.

□ 저상버스의 목표 재정립

- 새로운 5개년계획에서 법에서 정한 의무 운행 저상버스를 지키도록 적극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최소한 지방의 버스 30%와 수도권 버스의 55%라 는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 점검이 필요함.
- 3천 억 정도 투입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최소한 50% 가까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사회환경과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과, 장애인 외 노인과 임산부 등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하철의 편의시설 대상 확대

- 수도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6대 광역시의 지하철과 기차역을 포함하 역 사업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도록 함.
- 환승구간에서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최단 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지하철의 편의시설 다양화

○ 안전을 위하여 휠체어가 플랫폼에 빠지지 않도록 간격을 줄여주는 방안이 나, 엘리베이터 고장시의 이동 문제, 인적 서비스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 인증제 문제

- 최근에는 장애물 없는 환경이라는 용어보다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설계 와 디자인)이란 용어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누구나 사용가능하 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환경이란 새로운 용어 도입이 필요함.
- 인증제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은 설계단계에서 심사 받도록 의무화를 추진하여 시설물의 편의성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지자체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도가 법적 근거가 약하여 자체 인증제 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상당한 기준의 혼선을 초

래할 수 있어 우려됨.

- 4. 정보접근성 (정보통신보조기기)
-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 □ 스마트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보접근성 제고 추진
 - PC에서 인터넷 이용에서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 이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태블릿PC, IPTV 등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이 가 능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4-7)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 □ 청각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
 - 단순한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서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연계 서비스, 회의실에서 회의중계서비스, 강의실에서 강의 내용에 대한 중계서비스 등 특화된 중계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언제, 어디서나 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에 통신중계서비스 공중전화 부스 설치가 필요함.
-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 □ 스마트 사회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 추진
 - 모바일기기, 태블릿PC, IPTV 등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법 및 과정 개발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정보화교육의 추진이 필요함.
-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판로확대 및 해 외진출을 위한 상설 판매장 구축 및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등 사업추진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상담 할 수 있는 상설 체험관 구축과 이동 체험관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보조기 기가 필요한 장애인이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5. 사회참여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 □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서의 문제
 - 시험관이 동승하여 채점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지 시를 받으면서 센서에 의한 자동채점 방식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됨.
 - 그러나 이러한 시험방식은 장애인의 특장차가 적절하지 않아 개조된 자신 의 차로 시험을 볼 경우 문제가 됨. 그러므로 수동식 채점 방식을 병행토 록 해야 함.

□ 장애인 차량 구비의 문제

- 운전면허장에서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비할 경우, 다양한 보조장치가 필요 하므로 일률적 차량을 구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모델화하여 사전 에 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수정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는 비예산이 아닌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장애인을 위한 운전연습장과 장애인 연습 차량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이는 장애인의 도시 환경 주변의 접근성이 좋은 위 치여야 함.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 법률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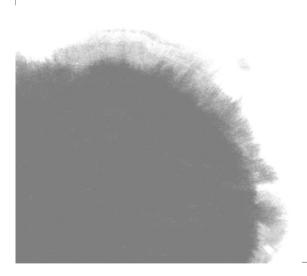
- 상법 732조의 생명보험 가입의 제한이 철폐되어야 함.
-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이 필요함.

□ 다양한 정책 시행

-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정부나 기업, 사회적 은행의 지원을 통한 인센티 브 부여나 법에서의 세제혜택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당사자를 이용한 전 종사자의 장애인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함.
- 장애인 차별을 감독하고 차별 시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모니터링제 마련이 필요함.

4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4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1절 비전 및 목표

- 1. 비전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세상)'
 - 기존 장애인으로 한정된 정책적 관점을 비장애인까지 확대하여 5개년계획 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 회를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진정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 □ 비전 마련을 위한 검토사항
 -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비전 제시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장애 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
 - 이에 제4차 계획의 추진방향은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지 관점과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희망을 주는 단어의 선택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 함된 단어 선택

- '장애인과 함께 살면 더 좋다'라는 인식을 알릴 수 있는 단어 선택

[그림 4-1] 기존 5개년계획의 비전

「기존 5개년계획의 비전」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08-2012)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2. 정책 목표

- □ 정책 목표
 - 장애인 맞춤형 복지·건강지원체계 구축 강화
 - 장애인 생애학습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
 - 장애인 건강체력 보유 지향 및 문화복지 실현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사회참여기반 확충 및 인권보장
- □ 정책 목표 마련을 위한 검토사항
 - 전 부처가 포괄적 장애관점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
 - 질병·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등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장애인 전략 강조
 - 장애인 건강증진과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조
 -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달체계 검토

○ 장애인이 치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동편의 등) 마련에 대한 지원 강조

[그림 4-2] 기존 5개년계획의 정책 목표

「기존 5개년계획의 정책 목표」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1998-2002)
 -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08-2012)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3. 분야별 과제

	성잭문이	
--	------	--

○ 복지서비스·건강분야, 보육 교육분야, 문화 체육분야, 소득·고용분야, 사회참여 · 인권분야

□ 분야별 정책과제

- 복지서비스 건강분야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 복지서비스 및 건강 관련 시설·인프라 등 기반 구축

- 보육·교육분야
 - 장애인 인적자원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 보육·교육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
- 문화 체육분야
 -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
- 소득·고용분야
 - 다층적소득보장체계 (소득보장체계 선진화) 구축을 통한 생활안정
 - 직업재활지원 및 맞춤형 취업·창업지원
 - 장애인기업 및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지원
 - 고용 인프라 관련 기반 구축
- 사회참여·인권분야
 - 정보 및 이동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
 - 인권보호 및 권익옹호 강화
 - 범국민 인식개선

[그림 4-3]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비전, 목표, 분야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목표

- 장애인 맞춤형 복지·건강지원체계 구축 강화
- 장애인 생애학습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
- 장애인 건강체력 보유 지향 및 문화복지 실현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강화
- 장애인 사회참여기반 확충 및 인권보장



		5	대 분야		
		구분	세부추진과제		
	복지 · 건강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 장애이동 및 가족 지원 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U^0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접근성 강화 6.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마련		
정책 과제		기반 구축 (시설·인프라)	7. 재활의료전달체계 강화 •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공공재활의료 활성 • 국가유공상이자 재활지원체계 강화		
	보육 · 교육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기반 구축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문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 창작활동 지원 체육	1. 장애인 지식·방송 접근성 강화 2.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3.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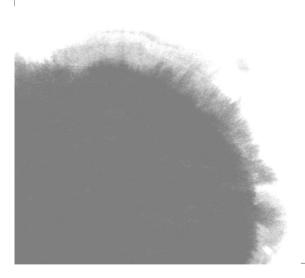
			v1 ≈1 ×1 △
			■ 생활체육
			■ 전문체육
			 학교체육
		기반 구축	4.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소득 고용	다층적소득보장체계(소득보장체계 선진화) 구축을 통한 생활안정	1. 다층적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구축 • 장애인연금제도 • 소득보장지원체계 마련
		직업재활지원 및 맞춤형 취업·창업지원	2. 장애인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 3. 장애인취업 및 창업지원 확대 •장애인취업지원 •자립자금확대
		장애인기업 및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지원	4. 장애인기업 지원 내실화 5. 정부 등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기반 구축	6. 장애인고용 인프라 확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사회	정보 및 이동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참여 · 인권	인권보호 및 권익옹호 강화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장애인 위기대응 체계 구축 5.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6. 장애인 참정권 보장
		범국	민 인식개선
		1. 범국민 대	대상 장애인식 개선

제2절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 욕구에 기반한 개별화된 맞춤서비스 제공
□ 제도의 내실화
○ 기존 제3차 사업이 제도나 법개정 등의 권리기반이 마련이었다면, 제4차에
서는 권리실현을 위한 제도 내실화 및 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도출
□ 비전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정책 추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문화·체육, 소득·고용, 사회참여·인권분야 등 사회 각 영
역을 망라하는 장애인정책 추진
○ 5개년계획의 비전이나 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각 영역별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부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추진
□ 사업의 점검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 5개년계획 수립 이후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향후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실효성 담보
○ 각 과제별 성과목표 및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계획에 대
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행평기를 위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5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안



제5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안

제1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건강분야

1. 전달체계

가. 기본방향

-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공적전달체계의 업무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적 전달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
 -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요인 및 개별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작·사적 장애인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상시적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 로 변화해야 함.
-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참여와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과의 협력 체 계마련이 필요함.
- □ 장애인 중심형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중점과제

- □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화
 장애판정에서부터 서비스 제공과 평가,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 어지고 개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관리 상설기관 신설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 장애인 등급제도 개선
 - 장애인 등급을 서비스 유형별 재분류로 간소화하여 서비스 대상을 판정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등급판정에 의한 서비스 제외를 최소화함.
 -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개선과 병행하여 개인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종합장애판정체계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장애인 범주 확대와 판정기준 정비
 - 희귀난치성, 만성통증, 학습장에 등 장애인 범주의 확대에 대한 지속적 연 구를 통하여 범주를 현실화하고, 판정기준에 있어 생활중심과 사회적 제약 을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함.

다. 세부과제

- □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화
 -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관보조금 방식에서 이용자에 대한 직접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0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워이	필요함

-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의 실시가 필요함.
-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
 - 서비스 품질에 대한 독립적 상설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와 평가 정보 공개가 필요 함.
- □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내 장애인 포털사이트 운영

2. 소득보장

가. 기본방향

- □ 다층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가구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 가입률 확대 및 장애연금 수급 요건 완화를 통한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이 필요함.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경증 장애수당을 장애수당으로 통합하고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장애인 가구 특성 반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초보장의 강화가 필요함.
- 장애이동특별보호연금 등 장애인 민간보험 도입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를 반영하여 소득보장 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연 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 최근 도입된 1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일명, 두루누리 사업)과 자영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보 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지원 도입이 필요함.
 -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기대여명이 짧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선천성 장애 등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정도 이상의 가입기간을 달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장애연금 수급요건으로서 장애 평가에 근로능력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장애 연금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함.
 - 장애연금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현재 2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입의 제기간을 30년 혹은 40년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비기여 사회적 연금으로서 장애인연금 역할 강화
 -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 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56%에서 70%까지 확대

가 필요함.

-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의 소득보전급여로 재편하고 추가비용급여인 부가급여는 경증장애수당과 통합이 필요함.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을 A값의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필요함.
-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으로서 의학적 손상에 기반한 등급 외에 근로능력평가 요소의 반영이 필요함.

다. 세부과제

- □ 추가비용 급여로서 장애수당 및 장애이동수당 역할 강화
 - 성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급여로서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 및 추가비용 지출을 100%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 아동에 대한 추가비용 급여로서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 및 추가비용 지출을 100%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 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추가비용 지출이 장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이동수당의 지급액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화가 필요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는 장치를 도입함으로 써 장애인 가구에 대한 실질적 기초보장 강화
 - 장애인 기구원의 추가비용 지출을 반영한 별도의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 또는 소득인정액 조사 시 장애 추가비용 지출을 공제함으로써 기초보 장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를 기초보장 수급대상으로 편입 이 필요함.
 - 장애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지급시 부양비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함.

- □ 장애이동특별보호연금 등 민간보험 상품 도입 지원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및 일반 장애인 대상의 민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간 역할분담에 기초한 다층 장애 소 득보장체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마련
 - 장애이동·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 방안으로서 민영 연금보험상 품 가입·판매 활성화 및 발달장애인·장애이동 대상 연금보험상품 출시가 필요함.
- □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및 자립 기능성 제고
 -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에 근로능력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일정 정도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일시 장애 급여(일시 장애연금과 일시 장애 인연금)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유도해야 함.

라. 기타 논의사항

- □ 자금 대출을 위해 지원센터, 중기청, 미소금융 등으로 확대
- 3. 의료보장 / 장애인보조기구

가. 기본방향

□ 통합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통한 건강권 확보

- 병원에서 지역사회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의료체계구축이 필요함.
- 재활의료기관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함.
- 장애관련 보건의료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장애관련 통계 및 건강지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재활의료 분야의 국제적 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함.
- □ 장애인의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실현
 -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병원에서 부터의 준비 및 지역사회 자원 개발이 필요함.
 -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특화된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
 - 여성 및 구강 등의 재활취약 분야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 보조도구 지원 강화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
- □ 후천적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 확대

나. 중점과제

- □ 장애인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공공·민간 재활의료 활성화
 - 6개 권역재활병원 특성화 및 지역연계 재활의료서비스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립재활원-권역재활병원-거점보건소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공공재활의료서 비스 체계 활성화가 필요함:
 - 재활의료의 질적 향상 및 표준 서비스를 위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함.
 -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함.
 - 민간 재활기관의 활성화, 통합적 재활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 재활병원 인근 재활호스트 설치운영
○ 재활치료와 동시에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최단기간 지역사회로 복귀
□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장애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지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권역재활병원 내 장애인 건강증진센터 신설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증진에서부터 지속적 장애 및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취약 및 고령 장애인 재활의 인프라 구축
○ 고령 장애인의 증가를 대비한 지속적 건강 재활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함.
○ 여성 및 구강 등의 재활취약 분야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 보조기 보급 및 품질의 표준화가 필요함.
다. 세부과제
1)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재활의료 활성화
□ 적정기간 내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발생부터 지역사회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함.
○ 재활의료서비스 인 증 을 통한 전문 의료재활기관 역할 설정 및 표준화가 필
요함.
эт ப

□ 공공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을 통한 질 높은 의료재활서비스의 제공

- 지역별 장애유형별 의료재활서비스 불균형 해소로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 재활의료공급 취약지역에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 국립재활원 및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 재활의료시설, 보건소 복지관 등 재활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가, 교육, 기술지원 등 교류의 확대가 필요함.
 - 국립재활원의 재활의료 총괄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 장애인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민간 과소공급 의료재활서비스 공급방안 마련
 - 권역재활병원의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공급 지원이 필요함.
 - 민간 지역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지속적 기능보강 실시가 필요함.
 - 재활의료공급 취약지역에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함.
 - ·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시범 설치·운영이 필요함.
- □ 장애인 보건법(가칭) 제정을 통한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재활의료,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장애예방, 장애통계,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 절차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건법 제정추진이 필요함.
- □ 재활의료 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조성
 -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의 연대 및 협력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함.
 -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이 필요함.
 - 개발도상국의 재활의료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재활의료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이 필요함.
 - 2)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실현 강화

□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보급

- 재활병원 기반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개별화된 계획 수립, 평기를 통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일상생활동작 훈련,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적응 기능향상등 생활후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심리적, 환경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사회복귀 지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ICF 개념을 반영한 사회복귀 모형 개발이 필요함.
 - 사회복귀사업의 재정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연계모델 개발 및 보급
 - 실제 주거 및 가정환경에서의 장애의 영향 파악 및 그에 대한 피드백제공 등의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이 필요함.
 - 사회적 기술이나 기능의 습득훈련을 위한 인프라 연계가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 주간재활센터로의 연계, 방문, 자조모임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역의 사회복귀 지원 인력의 훈련 및 사업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권역재활병원에 지역사회복귀센터 개설 운영

- 국립재활원 사회복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권역재활병원(6개소)에 지역사 회복귀센터 개설 운영지원이 필요함.
- 권역재활병원에 주가재활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협력 구축을 통한 사회복귀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3)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의 접근성 강화

-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권역 재활병원(6개소), 지역사회 재활병의원(14개소) 등에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 확대
- 현재 사업수행 중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관 리서비스 지원 및 관리사업 확대가 필요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연차별 확대
- 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특화가 필요함.
- 가임기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 실시 및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 건강지표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강지표를 개발, 보급하여 국가통계 및 정책 지표로 활용
 - 국가단위 보건통계 생산 시 장애인 건강통계를 포함,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속적 건강요구도 및 건강·기능지표 개발·적용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성화된 고령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강화

- 장애인 노화 대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2차적 장애발생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함.
 - 각종 클리닉(소아마비, 성인 뇌성마비 등) 운영을 통한 건강한 노화 대비 가 필요함.
- 고령장애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고령 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전문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구강진료센터 확충)

○ 장애인 구강진료시 비장애인의 진료에 비하여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민간차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거주현황,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확대 설치 추진이 필요함.
- 4)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 □ 전 국민 대상의 후천적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장애를 우연 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손상으로 규정하고, 국민건강 영역에 포함시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장애발생예방 실천의지 함양 및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를 위한 교육대상별, 장애원인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지역별 장애인 강사 양성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통한 장애발생예방강사 양 성 및 관리가 필요함.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 □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예방 중점 실시 후 향후 질병까지 확대 실시
 - 실제 사고경험 중심의 뇌손상 및 척수손상 장애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함.
 - 장애발생예방사업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예방까지 확대의 실시가 필요함.
- □ 관련기관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후천적 장애발생예방 추진체계 구축
 - 전국적인 장애발생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분산된 장애발생 예방 기관의 통합을 위한 장애발생 예방센터 추진이 필요 함.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평가, 정보제공, 보조기구 수리 및 세척 등을 실시가 필요함.
- 장애인 보조기구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광역센터의 점진적 확대구축 및 재 활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 보조기구의 용어 및 규격의 표준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장애인 보조기 사례관리사업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 지원사업

- 장애인보조기구의 안정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한 품목별 표준화를 마련 하고, 이를 등록제에 활용하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시험기준 선정, 검증 및 평가, 사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시험센터 구축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저소득층 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 확대

□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 일상생활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의료보조기기(보장구)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판정센터를 설치하고, 훈련 및 수리 등을 일괄하도록 함. 또한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확대 실시함.

라. 기타 논의사항

 □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 도입 및 종합적 관리 시스템 마련 ○ '장애보건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확보가 필요함. ○ 장애인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의 건강(신체활동)의 개념, 내용 등
□ 고령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4. 주택 및 주거서비스
가. 기본방향
□ 주거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의 종합적 대책 마련○ 장애 유형별 다양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 체계와 기준 마련 및 서비스 이용 계약방식 도입어 필요함.
 □ 장애인의 자립지원 시스템이 연계성 있게 작동되도록 조정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과 성년후견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경립생활을 위한 각 영역별 주요 서비스 제도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켜야 함.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정립 및 관리체계 확보를 통한 자립생활지원 내실화가 필요함.

	거用	八	종사자에	대하	지워	체계	반저
	/ · I ·	-	0/1/1/11	~ i i	7 11 477	- / III / II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제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열 악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 종사자의 안정적인 삶 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도 부각이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자립생활의 범주를 기초로 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화 방안 마련
-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체계적 향상

다. 세부과제

- □ 주택보급 확대와 주거수당의 신설
 - 주거유지에 필요한 비용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와 주거가 불안정한 장애인 에게 주거수당 지급이 필요함.
- □ 자립생활의 범주를 기초로 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화 방안 마련
 - 거주시설로의 개편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 영역의 확충과 연계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서비스 영역은 복지를 넘어서서 일상생활을 주요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이 러한 영역이 확보되고 각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이 필요함.
 - 이러한 발전은 개별적 서비스 제도의 발전에서 보다 상위의 관점에서의 서비스 발전을 꾀하는 것이며 이것은 향후 장애인발전이 추구해야할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임.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	---	------	----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한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 지원 및 관리 실시가 필요함.
 - 시설퇴소 장애인의 동료상담 및 권익옹호사업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및 대규모 시설의 개편이 필요함.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이 필요함.

□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안을 비롯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 용 적격성 심사기준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함.
-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적용이 필요함.
 - 구입·전세자금 융자시 금리우대 등
 -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기구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

-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우선) 공급 실시가 필요함.
- 주거실태조사 시행 등 추진이 필요함.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체계적 향상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수준을 업무별, 난이도별, 경력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체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종사자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농촌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 장애인 대상 주거보급계획의 구체적인 제시
□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의무설치
□ 일반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방안 검토
□ 주거지원정책 정보 파악을 위한 정보포털사이트 마련
□ 탈시설 이후 중간단계로서의 주거지원 방안

5. 자립생활

가. 기본방향

- □ 장애인의 자립지원 시스템이 연계성 있게 작동되도록 조정
 - 성년후견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각 영역별 주요 서비스 제도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의 발휘가 필요함.
 -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서비스(이동권, 정보권, 문화예술권 등)의 영역을 확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도록 추진이 필요함.
-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 발전
 - 성년후견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제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 종사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 및 급여시간 등 급여체계 개선
○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적정한 시간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이 필요함.
○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생활환경 등을 반영한 추가급여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자격 제한과 연계된 장애등급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향후 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야 하고, 서비스의 필요도에 따라 활동지유
제도의 급여가 결정되는 형태로 발전하도록 함.
○ 이를 위해 단순한 신청자격 제한 폐지를 넘어서 장애등급제도에 대한 폐기
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장애등급이 기초가 되는 현행 서비스 급
여체계에서,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 복지서비스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보장
□ 복지 서비스의 질 관리와 수급권 보장 수준의 향상
□ 당사자의 정책과 서비스 주체자로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 주거, 소득, 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의 종합적 대책 마련
□ 바우처제도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보편성 실현
·. 중점과제
□ 자립생활의 범주를 기초로 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화 방안 마련
□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체계적 향상
□ 장애등급의 폐지에 따른 대안적 체계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확대

- 급여 신청자격 및 급여량 확대가 필요함.
-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1일 24시간 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함.
- 소득과 주거, 지원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임.

다. 세부과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 을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함.
- 월 한도액의 기준 상향을 통한 급여량 확대를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환경 등을 반영한 추가급여의 확대 실시 가 필요함.
- 장애아동 급여시간의 확대가 필요함.

□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체계적 향상

○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직접적인 장애인의 삶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장애등급의 폐지에 따른 대안적 체계 마련

- 현행의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의 대부분은 장애등급에 기초하고 있으며 활동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1급 장애인 제한이라는 등급제의 기반 하에서 운용 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장애등급과 서비스 연계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낮으므로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장애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애등급 대신에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체계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혼란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밀한 연구 와 제도 적용이 필요함.

- □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운영체계 구축 마련
 - 성년후견인 교육 및 양성체계, 후견업무 수행 및 이용 지원체계, 성년후견인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 성년후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 □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6. 국가유공상이자

가. 기본방향

-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실화'에서 '선진화'로 도약
 - 국가유공상이자의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센터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 한 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고 생활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휠체어 제 공 및 맞춤형 보철구 공급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함.
- □ 국가유공상이자 재활지원체계 강화
 - 신규 국가유공상이자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재활체육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장비 보완 및 복지프로그램 의 다양화, 각 지역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순환기계 질환자 증가에 따라 대전보훈병원 시 설확충
 - 2012년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검사 대상인원은 약 1,300여명)됨에 따라 동 질환에 대한 진료시설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진료시설이 부재한 대전보훈병원에 심혈관 센터 건립이 요구됨.
 - 현 보유시설 내에는 심혈관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건물의 중축을 추진함:
- □ 전투 혹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 상이처에 대해 신체장애를 보완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휠체어 및 보장구 제공
 - 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사지 또는 전신마비 증세로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1~2급 중상이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지급이 필요함.
 -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손상된 신체부위 보완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 지급이 필요함.
- □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재활의지 및 사회참여 동기부여 확산
 - 2000년 상이등급 7급 신설 후 증가하는 젊은 경상이유공자를 위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한 체계적 재활교육이 필요함.
 - 보훈재활체육센터를 통한 각종 재활체육프로그램 및 각종 장애인대회 유치 등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재활체육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가유공상이 체육선수가 각종 국제대회 참가시 동반 보호자 없이 선수들만 참가하여 현지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국가유공상이 체육선수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세부과제

-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전략
 - 대전보훈병원 시설 확충(단년도 사업)이 필요함.
 - 2013년 심혈관 센터 건립을 위한 본관동 증축 및 주차시설 증축이 필
 요함
 - 1~2급 중상이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첨단휠체어지급이 필요함.
 -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전동 및 수동 휠체어 보조금 100%지원이 필요함.
 - 보철구 지급이 필요함.
 - 상이자의 손상된 신체부위 보완을 위해 보철구 공급 및 수리 지원이 필요함.

□ 국가유공상이자 재활지원체계 강화

- 6~7급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New Start' 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 갑작스런 상이로 인한 심리적 좌절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교육실시가 필요함.
 - 취업 및 재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취업관련 및 건강·재활, 멘토 프로그램 등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 적용이 필요함.
- 보훈재활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 보훈재활체육센터 내에 신규 국가유공상이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환경 생활체험, 교통체험 등 다양한 재활체

험의 장소를 제공하여 조기 일상생활 적응 기회 제공이 필요함.

- '국가유공상이자 재활복지 캠프' 등을 통한 재활체육의 저변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체계적인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우수 장애인 선수 육성, 주요 국·내외 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보훈재활체육 위상의 제고가 필요함.
- 각 지역의 노후화된 상이군경 복지회관 개·보수 및 시설·설비 확충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 및 복지증진이 필요함.
 - 재활치료를 위한 장비 부족으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물리치료장비 등 재활이 가능한 설비 보완 및 전문인력
 을 통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상이군경의 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함. 전국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증)을 상이군경회 중앙회에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국가유공자 재활프로그램의 사회복지기관 재활프로그램과의 연계(병원 치료 이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연계 등)
○ 국가유공자 재활프로그램 관련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등 연계가 필요함.
국가유공상이자를 고연령층과 신규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이 필요함.
각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의 일원화가 필요함.
보훈병원에서의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보훈처에서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가 필요함.

7. 장애이동ㆍ가족지원 (여성장애인 폭력)

가. 기본방향

□ 장애이동·가족지원 사업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통해 장애아 가족의 가족기능 향상이 필요함.
- 장애아동의 치료·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장애아동 양육부담 경감으로 장애아가족의 일자리 참여 지원이 필요함.
-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장애이동돌보미) 및 재활치료사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가족부담 완화, 잠재능력 발휘 및 자립기반 마련, 발달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리강화 및 삶의 질 도모가 필요함.
-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 및 장애여성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및 여성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여성장애인에 관한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내실화 및 보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장애아동·기족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이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부모 등 기족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의료, 교육, 고용, 복지, 권리 등)개발 및 시행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실종예방 강화 및 인신매매 근절,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및 형사, 사 법과정에서 권리보호 강화, 그 외 권리보호 강화가 필요함.
-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돌봄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 구축,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건강관 리 지원, 돌봄지원 강화,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 및 역량강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를 위한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직업교 육기회 확대 및 직종 다양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보호고용 확대 및 경쟁고용 지원 강화,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 보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 성폭력 피해 장애이동 및 장애여성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성폭력 피해 이동, 장애인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증원 및 제도정비 강화, 피해

자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사 교육 등 피해자에 관한 안정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다. 세부과제

- □ 장애이동·기족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이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함.
 -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서비스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대상 유형도 6개 장애유형에서 9개 장애유형으로 확대함. 6세 미만 발달장애이동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확대함.
 - 소득기준 초과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공기관 확대 및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함.
 - 만6세 미만 중증장애이동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시간도 연간 3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돌봄시간 확대함.

□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토가 필요함.
- 지원계획의 세부과제 추진 및 점검이 필요함.
-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영유아의 장애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도구 개발·보급이 필요함.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대상지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이 필요함.
 -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의 활성화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기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및 각종 복지시책과 이용방법 등 발 달장애인 부모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 장애아동 및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 연차적 확충이 필요함.
- 장애유형별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및 수화통 역사 지원 등 안정적 피해자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 장애이동 및 장애인 기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 장애인성폭력 범죄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찰청, 검찰청 대상 장애 인식교육 실시가 필요함.

제2절 장애인 보육 교육분야

1. 보육·교육

가. 기본방향

□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 성과 극대화가 필요함.
-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 역량 및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 및 학습권 실현이 필요함.
- 장애 영유아 발달단계 및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함.

□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 장애 조기발견 진단 배치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 관련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교육력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관련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및 장애아동복 지지원과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현을 통한 지역치원의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함.
- 장애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장애학생의 학습을 보조하는 학교 차원의 방 과후학교 운영환경 정립이 필요함.

□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 장애학생 인권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 노력 및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통합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와 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성과의 제고가 필요함.
-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수월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 고등교육의 성 과의 제고가 필요함.

0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탕	반 확립이 필요	함.					

- □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
 - 장애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의 장애인 교육 전반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각 유관 부처와의 협조체제구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확대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화가 필요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의 운영 활동 지원이 필요함.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 실시가 필요함.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의무실시가 필요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가 필요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 대상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장애학생의 인권 및 권리보호 홍보를 위한 방문형,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가 필요함.
 - 대학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평가매뉴얼 개발 및 평가 결과의 환류가 필요함.
 - 이를 위한 타당한 예산 및 기간의 확보가 필요함.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함.
 - 거점 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이 필요함.
 - 전담직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장애성인 평생교육 강화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
 - 시도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이 필요함.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이 필요함.
- 장애성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관련부처(기관)간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협력체제 구축: 분기별 협의 회 운영이 필요함.
 - 시도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국 평생학습관 대상 장애인 접근성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함.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다. 세부과제

-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일반학교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이상 증설이 필요함.
 -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지원 관련 연수 강화가 필요함.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의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함.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일반학교 배치 감각장애 학생의 점역, 확대자료료 수화통역 등 지원이 필요함:

□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
 - 단위학교 장애학생 학력평가 운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평가 지원 및 연수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원체계 구축(2014년~ 2017년)이 필요함.
 - 시·도교육청별 일반학교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관련 연수 확대가 필요함.
- 대안적 평가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 문제 기초연구가 필 요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장애학생 수요에 적합한 지원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확대 가 필요함.
-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궁극적 복지인 자립 및 취업률 향상이 필요함.
 -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 확대가 필요함.
 - 장애학생의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가 필요함.

□ 장애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4	성인 생활	준비에	관한	다년차 기	진로계획	ļ 수립
중고등학	교 개별회	교육계획이	세 상급학고	고 진학	및 성	l 이생활	준비에	관한 디

년차 진로계획에 목표 반영이 필요함.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시 향후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에 관한 진로계획 요약 작성 및 제공이 필요함.

□ 관련서비스 강화

-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및 학교 중심 치료지원 환경 구축
 - 학교 차원의 치료지원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치료지원 운영실태조사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학교 중심형 치료지원 제공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 및 현장적용 지침서 개발보급이 필요함.
-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운영 체계 마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 기기 뱅크 운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이 필요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 기기 공급 확대가 필요함.
 - 지역사회 연계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시도별 보조 공학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보조공학센터 등과 협약 -교육 용 보조공학기기 이외의 기기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특수교사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지도자료 개발 및 연수가 필요함.

□ 일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전문성 강화

-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이 필요함.
- 특수교육교원의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성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함.
 -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 과정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전문연수 과정 : 상담 및 중재, 진단·평가, 진로 교육 등

□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장애영아 교육여건 개선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영아학급 운영편람 제공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장애영아대상 순회교육 제공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이 필요함.
-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정착이 필요함.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가 필요함.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함.
 -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도 의무교육 이행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 발 생 예상 → 양질의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긴 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함.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 정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함.
 -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함.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생활중심,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특수학급, 유치원, 전공과, 개별화교육계획 등 NEIS 기능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NEIS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함.
 -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화교육계획 사용 메뉴 부여
 - 유치원 NEIS 사용: 일반유치원 교육과정이 NEIS에 들어오는 시기에 맞추어 작업이 필요함.
 - 특수 NEIS 매뉴얼 개발 및 연수 지원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 장애아동과 학생이 입원한 경우 병원과 연결된 학습지원(재활병원 등)서비스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함.
□ 통합교육에서의 특수교사의 배치가 필요함.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 시 의사소통 지원 반드시 고려가 필요함.
□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범국민 인식개선교육 실시가 필요함.
□ 고등교육,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부처간 연계·협조가 필요함.

제3절 장애인 문화 체육분야

1. 문화

가. 기본방향

-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향유 및 여행·스포츠 강좌 참여에 제한 있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과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함.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으로 지원 전, 지원 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의 유도가 필요함.
- 분야별 예술강사 장애인복지관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u>프로그램</u> 지원이 필요한
- 지역 문화예술교육 주관단체 사업지원을 통해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에 따FMS 장애인방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함.
- 방송수신기기 보급
 -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신기를 지속
 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기보급 된 아날로그 방송수
 신기를 교체하여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사업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이 필요함.
 - 방송수신기기 보급이 필요함.
- □ 장애인 문화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문화센터를 5개소 설치하고, 설치와 운영의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 세부과제

-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사업 지속적 추진
 - 장애인 등 저소득층 바우처카드 대상 확대가 필요함.
 - 문화카드 발급방식의 개선 및 부가서비스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한문화카드 이용자 편의 증대가 필요함.
 - 지역 내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모셔 오는' 또는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 분야별 예술강사 장애인복지관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의 사립문화시설 관람 시 장애가 되는 계단,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추진이 필요함.
-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 2012년을 기점으로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중앙지상파는 2013년), 유

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2016년까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50~70% 수준 목표달성이 필 요함

○ 방송수신기기 보급

-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이 필요함.

□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함.
 - 상영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람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및 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 지속 확대가 필요함.

□ 여행바우처 및 관광활동 참여 지원

- 여행바우처 대상자 지속 확대 추진이 필요함.
-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 관광지 편의성 실태조사 실시 및 모 니터링 투어를 통해 DB의 구축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태 파악
□ 장애인문화예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 검토
□ 장애인특수도서관 지원
□ 수화 점자 중장기 지원·발전계획 확대, 수화의 공식적 언어화, 점자표준화작업
□ 편의시설 및 관광 정보제공 DB구축

□ 장애인 예술활동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방송분야 관련 다양한 수신기보급 개선
□ 장애인대상 전문관광여행사 설치
□ 청각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TRS)의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으로의 이관에 따른 과제
추가
□ 문화시설 및 일반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방안
2. 체육
1 11 151
가. 기본방향
□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추진
○ 시·도별 각종 생활체육사업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도
제고가 필요함.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지도자의 확대 배치기
필요함.
○ 장애인 체육활동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장애인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 체육활동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통해 정보 공유 확대 및 온라인
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함.
○ 장애인 훈련종목의 특수성·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훈련원 내 전 종목
훈련시설 마련이 필요함.
○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유치에 따른 장애인 동계종목 훈련장 기반 조성
이 필요함.
□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우수 성적 달성 및 장애인 국제스포츠 경기력 강화가 필요함.
-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스포츠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나. 중점과제

□ 생활체육 및 생활체육대회지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개발, 장애청소년 생활체육 활동지원, 생활체육 교실 및 전통종목 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동호인 대항전, 종목별 생활체육축제, 전국 장애청소년체육대회,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체육 정보화체계 내실화

- 장애인체육 정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애인체력인증사업 추진 이 필요함.

□ 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 건립 완공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용 종목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 동계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 동계종목 전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이 필요함(컬링/아이스슬레지하키).
- 스키종목(알파인, 크로스컨트리, 바이어슬론) 훈련시설 확보 및 운영이 필 요함.

□ 국제장애인경기대회 경기력 강화

- 종합대회 참가지원을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국제대회 우수 성적 달성 을 통한 국위 선양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2014 소치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2016 리오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쿼터 확보 및 경기력 향상이 필요함.

□ 장애인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및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와의 적극적 교류 활동 추진으로 장애인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강화가 필요함.

다. 세부과제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현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배치되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기초 자치단체로의 확대 배치를 통한 장애인 체육지도활동의 효과성의 제고가 필요함.

□ 유형별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 장애인스포츠센터교실, 여성장애인교실, 직장장애인교실, 시·도별환경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여 상시 운영하는 종목별 교실 등 유형별 교실에 대한확대 지원 추진이 필요함.

□ 동호인 클럽 운영 활성화

○ 기존 종목별 동호인 클럽 이외 주말 특수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시를 활용 한 학생 대상 주말 동호인 클럽 개설을 통해 다양한 동호인 클럽 운영 지원 이 필요함.

□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 뉴스포츠 종목 발굴 및 보급의 추진으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종목의 확대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체육 정보센터 운영

- 현장에서 장애인과 체육지도자가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양질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애인체육 정보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 장애유형에 맞는 건강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 누구나 온라 인상에서 자신의 건강체력의 수준과 증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체력인증사업 실시가 필요함.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2단계 시설 증축사업 추진

- 장애인 훈련종목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훈련원내에서 모든 종목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양궁장, 다기능체육관, 교육동, 보조구장, 사이 클트랙 등의 시설을 보강하는 2단계 시설의 증축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장애인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여건이 개선됨과 동시에 훈련원이 장애인체육시설의 구심적 역할 및 발전 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함.

□ 장애인 동계종목 전용훈련시설 건립 및 확보 추진

-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유치 성공에 따른 동계종목 훈련 시설 마련 및 활용의 일환으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내에 컬링장, 아이스슬레지하키 장 건립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스키 종목의 훈련시설 확보를 위하여 기존 스키 훈련시설을 장애인 선 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이용이나 시설확보 방안 추진

이 필요함.

- □ 국제대회(국제종합경기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회) 경기력 강화
 -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지원 및 우수 성적 달성을 통한 국제스포츠 강국으로 의 위상 제고가 필요함.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장애인선수의 경기력 향상, 상 위 입상을 통한 종합대회 출전 쿼터 확보가 필요함.

□ 국제 장애인스포츠 경쟁력 강화

-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및 각국 NPC 등과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 장 애인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강화 및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전문인력 진출 및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 영향력 강화
- 국제스포츠기구 주요인사 DB 구축 및 활용 홍보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가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재활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외에 실행방안의 구체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학생 대상의 체육부분에 대한 과제 개발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 협조체계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학교체육어
대한 지원
○ 장애학생의 건강체력검사와 학교체육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

□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바우처 이용을 위한 현실적 지원

광부간의 협의조정 필요

제4절 장애인 소득 고용분야

1. 고용 및 일자리 (고용노동부)

가. 기본방향

- □ 장애인 고용률의 제고
 - 2010년 15세 이상 인구 중 장애인 고용률은 36%인데, 이는 전체인구의 고용률인 60%의 60%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향후 5개년 내에 그비율을 상당부분 향상시켜야 함.

□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제고

○ 그동안 다양한 고용의무제도의 재설계(정부부문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정부부문 구분모집 비율 상향, 부담금 상향, 중증장애인 더블카 운트제도 도입)를 통해 일자리의 증대가 이루어 졌음에도,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로 낮고, 고용률은 17.8%에 머물러 좀처럼 개선 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함.

□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

○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이며, 민간부문은 2.28%로 2014년에 재조정시점이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법정 의무고용률을 4차 계획 기한 내에 우선 달성하도록 정책노력을 집중함.

□ 일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정책이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 위주의 양적 측면 을 강조해 왔다면 향후 5년은 취업 후 고용안정과 경력개발, 고용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동시에 전개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 (2010년, 56.2%)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나. 중점과제

□ 의무고용정책의 내실화

○ 의무고용정책은 최대정책 모델에 속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까지 정책적으로 아우르는 노력을 통해 장애인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전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 고용평등정책의 적극화

○ 차별금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제적·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용평등정책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재분배에 주력함과 동시에 장애유형과 연령, 성별을 초월하여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 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고용기회를 주도록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까지 포함함:

□ 직업재활정책의 전문화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신장하고 양질의 직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으로 구직 장애인의 근로능력, 직업적성 등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기존의 보편 적 서비스 정책을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대폭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 스' 정책으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최적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토록 함.

□ 차별금지정책의 정착화

○ 장애인의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고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 장애인고용 인프라의 효율화

○ 공공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 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별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함.

다. 세부과제

- □ 의무고용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집중화, 의무고용률 및 대상사업체 확대조정, 부담금 및 장려금 체계 재설계 등을 추진함.
 - 중증장애인 집중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중심의 정책대상 범주 재정립, 직업 적 장애판정기준의 도입, 직업적 장애판정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이 이 루어져야 함.
 - 의무고용률 및 대상사업체 확대조정을 위해 의무고용률 재설정,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함.
 - 부담금 및 장려금 체계 재설계를 위해 부담금 신고대상 확대, 고용률 저조 기업 및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부과, 부담금 납부액으로 조성된 기금사용 의 합리화, 장려금 지급체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 고용평등정책의 적극화를 위해 고용취약 장애인 표적화, 괜찮은 일자리 확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장애인고용기업 특성별 지원 다각화,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함.
 - 고용취약 장애인 표적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 직종개발 확충, 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고령장애인 고용기반 마련, 저소득 장애인의 근로유인을 위한 공공부조 체계 개선 등이 추진되 어야 함.
 -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비영리 조직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IL센터 동

료상담사 제도화, 장애인 사회적 기업 설립촉진, 장애유형별 직업영역 개발, 단기간 근로 인정범위의 하하시간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공무원 고용의무 적용제외직군 폐지, 공공기관의 장애인채용 확대, 기타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경영평가시 장애인고용 비중 확대 등이 선 행되어야 함.
- 장애인고용기업 특성별 지원 다각화를 위해 통합지원서비스 안착,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의 세금감면 및 우선구매 적 용, 공공계약시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근로자 의료지원제도 도입, 장애인근로자 능력개발비 지원, 근로지원 인제도 개선, 장애인근로자 사후관리체계 강화 등이 요구됨.
- □ 차별금지정책의 정착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차별 금지와 BF 고용환경조성, 사회 인식개선 등을 추진함.
 - 장애인고용차별 금지와 BF 고용환경조성을 위해 고용현장 차별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 (가칭)'장애인고용 인식개선센터'설립,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표제도 및 해고보고제도 도입, 정신장애인 일자리지원 차별해소,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 인증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교육 실효성 확보, 인식개선 교육 전문가 및 서포터즈 육성, 인식개선 홍보강화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이 선행되어야 함.
- □ 직업재활정책의 전문화를 위해 잠재적 노동수요 극대화, 직업능력 개발기회 제고, 장애특성별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함.
 - 잠재적 노동수요 극대화를 위해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고용서비스이용 인 세티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직업능력 개발기회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강화, 기업계약형 훈련공과 운영 강화 등이 요구됨.
- 장애특성별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프로그램 연계(지적·자폐성장애인의 교육과 고용연계 프로그램), 선배치 후고용 프로그램 탄력적 운영, 장애인 창업지원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 □ 장애인고용 인프라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고용지원체계의 통합화를 추진함.
 -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폴리텍 대학내 장애인 훈련과정 설치, E-learning 센터 운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 전용 사무공간 설치, 지역사회 기업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장애인고용 정책의 질 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고용지원체계의 통합화를 위해 부처간 관련업무를 연계하는 Work Together 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와의 장애인고용촉진 조례제정 연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이 추진되어야 함.

라. 기타 논의사항

□ 자금 대출을 위해 지원센터, 중기청, 미소금융 등으로 확대 필요
□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화된 접근 필요, 지금까지의 지원고용 이외에 가족창업
형태의 제도 도입 검토
□ 중증장애인과 가족이 결합된 고용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법정의무고용율의 단계적 상향 검토
□ 고용부분 전달체계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체계 필요(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
부, 고용노동부간 통합된 체계)
□ 여성장애인, 외국장애인,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검토
□ 창업지원 관련, 소규모 프랜차이즈와의 연동방안 검토, 이와 함께 훈련을 통해

- 2~3명이 함께하는 기획 창업 필요
- 2.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건복지부)

가. 기본방향

□ 중증장애인 지원의 필요성

- 이제까지 직업재활의 정책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나 실질 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 시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교육 강화

-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인지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또는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질 높은 취업으로 연계가 기능할 것임. 현재 지체(시각 및 청각장애인 포함) 및 내부 장애인의 경우 취업도 어렵지만 고용의 질도 낮아 결과적으로 높은 이직율이 문제임.
- 지역 내 훈련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 극적으로 마련이 필요함.

□ 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

○ 지적 및 발달장애인 등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현실적으로 일반 고용이 어려움. 최근 들어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나 사회적 기업 등의 기 회가 많아지면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음. 특히 유형개편 이 후 직업재활시설들이 임금보장에 대한 책임이 많아지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임금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 들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유인기제 도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직 업재활를 통한 소득은 탈 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결과적 으로 근로욕구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탈수급을 방지하면서 근로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나. 중점과제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마련

- 장애유형 및 개별 장애인들의 학력, 경력 그리고 사회적 자원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은 영향을 받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중중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장애등급에 의한 접근이 아닌 개별적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임.
- 직업훈련이나 고등교육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선별하여 대학이나 대학 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원고용이나 직업재활시설로 연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지원고용의 경우에는 직무지도원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을 영입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을 하여야 함.

□ 직업재활 사례관리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산하에 직업재활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할 것임. ○ 사례관리를 위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 며 지역 내 거점 기관도 필요함.

□ 근로유인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마련

○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탈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일자리 마련

-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자리를 가져 소득이 발생하여도 수급권의 서비스(의 료, 교육급여)를 3년 간 유예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근로장려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함.
- 장애인의 일자리를 최저 임금 이상 수준으로 하여 매년 1만개 개발하여 공급이 필요함.

다. 세부과제

□ 사례관리 체계 마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과 더불어 지역 내 거점 기관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사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실적 관리에서부터 자문까지 할 수 있도록 온라인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아 함.
- 또한 사례관리 체계마련 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직업재활의 문제점인 직업유지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원 확대

○ 본 사업은 예산 대비 사업실적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확

대되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기관 확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통해 기존의 유형 별 지원이 아닌 사업실적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직업재활센터는 4명, 장애인단체는 2명 직업재활시설은 1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이러한 획일적인 인력지원방안이 아닌 사업실적에 따른 인력지원 방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직업재활시설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근로유인기제 도입 마련

- 근로유인기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축하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의료보장은 유지하는 방안 등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여 욕구와 현 실을 반영하는 연구로 진행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향후 중증장애인에 맞춤형 고용 확대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유형의 특화된 직업능력 개발 집중적 시도
전달체계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체계 필요(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간 통합된 체계)
진언호러다게에서인 ∆대 보허전용 건트

제5절 장애인 시회참여 인권분야

1. 차별·인권 / 추진실적 점검

가. 기본방향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수준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 인식개선 관련 홍보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함.
- □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 지속 실시 및 해설서 발간이 필요 함
 - 2015년까지 법 적용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지속 실 시 및 법 이행률 제고가 필요함.
 - 법령 개정 사항 및 인권위 결정을 반영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발간으로 대상기관의 법령 준수 유도가 필요함.
 - 대국민 장애 인식개선사업 지속 실시
 - (장애체험센터운영) 장애체험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및 장애감수성 제고가 필요함.

- (장애인식개선홍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제작·송출, SNS를 통한 장애차별개선 홍보,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 등이 필요함.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확대가 필요함.

다. 세부과제

-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장애인권리위원회 사례 검토
 -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면담 및 심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체적 구제
 사례 파악이 필요함.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등을 통해 협약 및 선택의정서이행 모범사례 및 문제점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협의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 개최가 필요함.
- □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센터 설치 및 운영
 -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상시조직으로서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함.
-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확대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촘촘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해, 2012년 현재 중앙에 1개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이 필요함.
-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함.
 -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통한 운영 내실화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함.

- □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정신장애인 복지 차별 해소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개정을 통한 정신 장애인 복지 차별 해소가 필요함.
 - 병원 및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각 도	-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실시
장애역	인차별금지법 관련 검찰·법원에서의 인식정도가 낮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법ブ	이드라인 이외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제작
장애역	인권익옹호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역별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설치
0 3	소사, 법률상담, 의료지원 등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예 : 변호사 등)
Я	闷
장애역	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법에 대한 연구와 법률안 개정 필요
인천	전략 과제 관련 이행기제 제시
장애역	인성폭력 범죄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찰청, 검찰청 대상 장애 인식교육
실시	
○ え	ll계적인 인식개선교육,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각 부	- 처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통합

2. 여성장애인 (장애여성 근로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가.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리강화 및 삶의 질 도모가 필요함. ○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강화가 필요함.
나. 중점과제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육 및 양육, 교육, 고용, 의료 등 종합적 지원정책 7 발 및 시행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교육 및 출산비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및 생애주기별 맟춤형 서비스 확대, 취업지원 강화가 필요함.
다. 세부과제
□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검토○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검토가 필요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지원 강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직업교육,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정보 저공,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확대가 필요함
— 장애여성 적합 직종 발굴·운영 및 취업지원 실시가 필요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실태 점검·평가 및 개선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교육 및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시행이 필요함○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라. 기타 논의사항	
 □ 여성장애인의 임산출산육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 □ 다문화 관련 과제 개발 □ 여성장애인의 문화와 관련된 과제 개발(여성가족부) □ 지역단위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3. 편의증진	
가. 기본방향	
□ 지역사회 생활중심의 편의성 증진□ 장애 유형별 다양성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 재난과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	
나. 중점과제	
□ 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이동권 보장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년~2016년)'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다. 세부과제

저상버스 도입 확충
○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상버
스는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이상이 되
도록 목표 추진이 필요함.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 국고 지원 및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한 단계별 도입 추진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 인구 100명당 특별운송수단을 1대씩 운행토록 추진이 필요함.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역사 이용객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엘리베이터의
추가 설치 및 에스컬레이터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
○ 수도권전철 역사 외부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
편의시설의 인증제 도입과 사후관리 철저
○ 교육·홍보 등 BF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의 추가 설치 소요를 검토하여 추진
이 필요함.
유니버셜 디자인 선포와 유니버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장애인편익증진 기술ㆍ제품개발 및 보급 확대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관련 정책 현황 연구가
필요함.

- 장애인 위기관리 방안 및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 교육 및 예방 교육 실시가 필 요함.

□ 재난 방지 대책 마련

○ 화재, 홍수 등의 재난에서 장애인의 대피와 구호를 위한 설치물을 의무적 으로 편의증진법에 반영하고, 장애인 피난시설을 광역 단위로 갖추며, 재 난대책 매뉴얼 보급이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 보편적 디자인(설계)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 마련
- □ 건축과 제품개발에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 필요, 설계부터 장애인편의증진 전문 가 참여
- □ 저상버스도입확충 이외 운행환경 변화 조성
- 4. 정보접근성 (정보통신보조기기)

가. 기본방향

- □ 디지털 사회통합으로 스마트 지식정보회사회 구현
 - 고도화 IT환경에서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Good digital-living)에 요구되는 창의적·생산적 정보역량 및 활용 수준 제고를 통해 일상 생활내 실질적 부가가치 및 혜택에 대한 창출지원이 필요함.
 - PC 및 유선 인터넷 기반 정보사회로부터 여전히 낙오되어 있는 장애인의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정보사회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 퀀

텀 점프"전략 추진이 필요함.

-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 추진방식에서 민간 및 지자체 참여가 확대되는 추진 체계 다변화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 ICT환경, 정책대상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함.

나. 중점과제

-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등 정책개발이 필요함.
 - 정보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정보접근성 기술자문 및 지원이 필요함.
 - 정보접근성 인식제고 및 대외협력이 필요함.
-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이 필요함.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 필요함.
 -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이 필요함.

다. 세부과제

- □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 기존의 정보 소양 중심의 교육에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ICT 실용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장애인들의 정보이행능력 향상을 통해 이들이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

도록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 통해 정보화교육 실시하고 컴퓨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S/W설치·복구 등 긴급 장애 발생 시 방문지원을 위한 중증 장애인 대한 IT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정보통신 능력이 우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IT분야 취업 및 창업이 가능 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함.
- 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해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사회 통합 추진을 가속화하는 기대효과가 있음.

□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 접근권 제고
 -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공평한 정보 사회를 영위할 수 있는 정보접근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에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보완과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 로운 법령 등의 제정이 필요함.
-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화 및 연구 등 정책 개발과 정보 접근성 전문 인력양성, 정보 접근성 기술자문 및 지원과 정보 접근성 인식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
- 장애에 관계없이 모바일 기기 및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 제고 필요,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연 구, 인식 개선 등의 추진 방법 등의 확정이 필요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장애로 인해 전화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비장애인 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본적인 통신권을 보장
- 365일 24시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편의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을 검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비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해

야 함.

- 청각·언어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방문 홍보 및 교육실시, 장애인 및 IT관련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방법과 사례 등을 소개하고 시연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확대와 만족도 제고
-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중계 서비스에 관련된 대 국민 인식 제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및 동향에 따른 시스템의 개선 및 최적화가 필요 함.
- 수화 사용 장애인들의 원격 의시소통 및 정보교류 활성화가 가능하고 행정 기관 등에 적극적인 서비스 요청이 가능해져 국가 행정서비스의 확대 이 용 가능
- 영상 전화 단말기의 호환성 등 첨단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표준 제정 및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면낭독S/W, 특수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80%, 본인부담 20% 방식으로 보급하고, 개 발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70%, 기업부담금 30%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정보통신보조기기 인식제고, 보급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 순회 전시회 및 이용수기 공모전 행사를 통해 만족도 제고
- 최근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적절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품목의 선정이 요구되며,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 보조기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 □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여, 장애인도 첨단기술·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기술과 사회 발전의 수준을 반영하는 최신의 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편익을 극대화해야 함.
 - 장애인용 단순 보조기기가 아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실수요 가 기술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시를 강화하고, 기술의 융합·재디 자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 제품으로 생산하여 보급·판매하는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다양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대응하여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보조공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상용화 시도가 필요함.
 -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제품의 보급체제 구축을 위한 부처간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검토가 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 시각장애인의 지면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 □ 정치참여 관련, 후보자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정보제공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투표보조기구 필요
- □ 공공기관의 정보접근성 보장

5. 사회참여

가. 기본방향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권리실현□ 장애인 복지의 국제화와 지역적 특성 고려
나. 중점과제
 ○ 아태 장애인 10년의 추진 ○ 인천전략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재원마련이 필요함. ○ 인천전략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포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들의 국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다. 세부과제
 ○ 아태 장애인 10년의 추진 ○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장애권리실천재단'의 설립・운영이 필요함. -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아태지역 저개발국의 인천전략 및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사업 지원이 필요함. - 인천전략 사업 추진단 운영 등 ○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아태지역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추진이필요함.
라. 기타 논의사항

- 468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함.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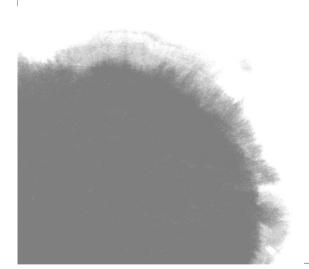
국가보훈처(2011), 보훈연감.

관계부처합동(2008),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김성희, 윤상용, 이민경, 이송희, 허수정, 강민희, 김동주, 노승현(2010).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복지분야 중가점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이송희, 이민경, 김완호, 박경수, 변경희, 서인환, 양숙미, 윤상용, 이소현, 이숙향, 이영자, 전병태, 한민규(2011).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진단 및 개선방안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중간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최미영, 이병화, 이송희, 강병근, 권선진, 김경미, 김용두, 김윤태, 김종인, 나운환, 오혜경, 이근민, 이선우, 이승기(2008). 중·장기장애인복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7). 장애인복지정책 현장에서 만든다. 서울. 한국장애인재활 협회.
- 박경수, 권선진, 윤재영, 이금진(2012).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 이영자 외2인(2010).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실태분석 및 평기를 통한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470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형시영 외 7인(2010).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 교육연구원.





〈부록 1〉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활동현황

1. 설치목적

□ 장애인정책의 현황 및 제3차 계획의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추진방향 및 장애인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마련하기 위함.

2. 구성·운영

-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추진방향 및 장애인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13개 정부부처 과장급 정부위원과 장애인 단체, 학계, 연구진 등의 민간위원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함.
 - 계획 수립에 참여한 13개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복지서비스·건강분과」, 「보육·교육분과」, 「문화·체육분과」, 「소득· 고용분과」, 「사회참여·인권분과」등 5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함.

○ 사무국 설치·운영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 사무국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실무추진단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협력함.

3. 운영현황

□「실무추진단」은 2012년 2월 시작으로 2012년 10월까지 운영되었으며 분과 회의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수시로 관계부처·장애인단체·연구진 등이 참석한 총괄회의가 개최되었음. 실무추진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실무추진단 총괄회의 진행내용

회의차수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1	·2012.2.20,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연구진 등 참석	·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중간평가 결과 (2011.4~ 2011.11) 를 토대로 제4차 신규 세 부추진과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2	· 2012.3.2,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연구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방안(안)에 대한 연구진·장애인단체·복지부 담당자 회의실시 一신규과제 개발 논의 ① 제3차 과제별 평가 결과 검토 ② 전 부처의 장애인관련 사업, 장애계 공약사항,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 및 세계적인 흐름 검토,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등 검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사업수행체계 및 추진방향(안) 마련 논의

회의차수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3	·2012.4.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연구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실 무추진단 비전, 분과구성 관련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복지·건강, 보육·교육, 문화·체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5개 분야 구성
4	·2012.4.27~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 단체 등	·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비전에 대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실시
5	 2012.7.17,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비전, 목표, 방향에 대한 장애인단체,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비전(안) 마련

<표 2> 실무추진단 분과회의 진행내용

회의차수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1	·2012.6.4,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연구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1차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 체육, 건강, 보육・교육분야의 세부추진과제 (안) 검토 및 신규과제 개발 논의
2	· 2012.6.5,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 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1차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3	· 2012.6.7,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 진 등 참석	
4	· 2012.6.7,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 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1차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 문화, 사회참여・인권(정보화, 보조기기, 국 제협력 등) 분야의 세부추진과제(안) 검토 및 신규과제 개발 논의

회의차수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5	· 2012.7.10, 신촌 동문회관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 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2차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 회의 개최 - 복지서비스 · 건강분야의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사업내용, 성과지표, 추진일 정, 예산 등) 검토
6	· 2012.7.11, 신촌 동문회관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 진 등 참석	
7	 · 2012.7.12, 신촌 동문회관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 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2차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 회의 개최
8	· 2012 9.3~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 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3차 전문가 회의 개최 복지서비스・건강분야, 보육・교육, 문화・체육분야,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인권분야별 중점과제 선정 및 분야별 정책목표검토 각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의 성과지표, 사업내용, 향후 5년간 추진계획(사업예산 등) 검토

※ 실무추진단 분과회의 총 8회 실시

<표 3> 정책토론회 개최

개최치수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1	 2012.11.27, 이룸센터 이룸홀 관계부처 공무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진 등 참석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 관련 정책토론 회 개최 - 제3차 계획의 평가 - 제4차 계획의 분야별 추진방안 발표(관련부처 과장 발표) - 분야별 지정토론 및 장애인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 등 의견수렴 실시

〈부록 2〉 일본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 (후기 5개년 계획)

〈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 (후기 5개년 계획) 〉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서로 지탱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대안 (2007년 12월 25일 장애인 시책 추진본부결정)

장애인시책에 있어 정부는 2002년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삼은 [장애인 기본 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책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 5년에 관한 현행 [중점시책 실시 5개년 계획]을 책정했다.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지항해야 할 사회를,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가 서로 상호간에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지탱하며 살아가는 공생사회로 삼고, 이를 위한 과제,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인시책은 기본계획 및 현행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각 분야에서 법제도의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법제도의 개정 등〉

2004년

- · 장애로 인한 차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기본법 개정
- ·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발달장애 인지원법 제정

2005년

·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의 강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복지 서비스를 질 양 모든 측면에서 충실하게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자립 지원 법 제정

2006년

- · 복수의 장애에 대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학교의 제도화 등을 시행하기 위한 학교교육법 등의 개정
- ·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에 장애인 교육에 관한 지원을 추가한 교육기본법 의 개정.
- · 공공교통기관, 도로, 건축물 등의 일체적 종합적인 배리어프리화 (barrier free) 의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UN의 활동 등〉

2006년

· UN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및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이면서 종 합적인 UN조약인, 장애인 권리 조약을 채택.

2007년

- ·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에서 [비와코 밀레니엄 프레임워 크]에 관한 후기 5개년 행동지침으로서의 비와코 플러스 5]를 채택
- · 장애인 권리 조약에 서명

공생사회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상호간에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지탱하며 살아가는 사회이자, 동시에 장애인이 사회에서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 받고,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으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참가하고, 계획에 참여하여,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이다.

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행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의 기간 동안 행해진 법제 도의 개정 시행상황 등에 입각하여, 자립과 공생의 이념 하에서 공생사회 실현에 진 실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하에 중점을 두고, 시책전개를 도모하려 한다.

- ☆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기본으로 신체장애, 지적 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의 장애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의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걸친 빈틈 없고 종합적인 이용자 중심의 지원을 수행하는 것.
- ☆ 장애인의 지역과 관련 자립 및 사회참가에 있어서의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누구나가 쾌적하게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셜한 디자인에 맞춘 생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IT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하여 장애 인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 등을 도모하는 것
-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발본적인 수정 검토를 추진하며, 그 결과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본 계획을 수정하는 것.
- ☆ 장애인 권리 및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조약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 요한 국내법령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

본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의 후기 5년간에 걸쳐 제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5년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과제에 대하여, 120의 시책항목에 맞춘 57개의 수치목표 및 그 달성기간 등을 정하고자 한다.

- I.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시책 및 그 달성목표
 - 1. 계몽·홍보

○ 기본 방침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며,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가 상호간에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 지탱해가는 공생사회의 이념 보급을 도모하면서,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더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하여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폭넓은 국민이 참가하는 계몽·홍보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① 계몽·홍보활동의 추진
- 공생사회 이념의 보급 등

장애인의 주 행사 실시 등을 통해 공생사회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미래를 짊어질 젊은 층에 대한 계몽·홍보에 주력하여 추진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수단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계몽·홍보를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공생사회의 주지도
 - 세대전체 40.2% [2007년] → 50% [2012년]
- 공생사회의 주지도
 - 젊은 층 (20대) 26.7% [2007년] → 50% [2012년]
- ※ 최근 실적 수치를 화살표 왼쪽에 기재함. 이하 동일.
 -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촉진 국민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킨다. 특히 국민의 이해

가 더디다고 여겨지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해서는 그 장애의 특성 및 필요한 배려 등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계몽·홍 보를 촉진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과 지역 주민 등의 일상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 장애인 권리조약 및 장애인관련 법령의 주지

우리 국가가 서명하고, 앞으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동 조약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장애인의 인권의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약 등과 관련된 법령을 포함한 장애인관련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를 높인다.

○ 장애인이 이용과 활용을 배려하는 등에 관한 충실한 계몽·홍보

장애인이 이용 및 활용하는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보조견, 보조 장비 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배려 등에 관한 주지를 도모한다.

특히,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 해당 주차 공간을 필요로하는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공간 및 여 러 국제 심볼마크의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이해하기 쉬운 표시를 보급하는 등 노력한다, 장애인 단체 등이 만드는 각종 장애를 대상으로 한 계몽, 주지를 위한 마크에 관 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모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계몽·홍보 추진

인터넷 활용 등 창의적인 수단을 가진 홍보매체·홍보수단을 활용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계목 및 홍보를 추진한다.

○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계몽·홍보 추진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고, 미디어의 협력을 통해 계몽·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인권수호, 복지, 노동, 교육 등의 각각의 행정분야와 연계하여 폭넓은 계몽·홍보를 추진한다.

○ "마음의 배리어프리" 운동 추진

배리어프리화 추진에 관한 조직을 표창하고, 그 조직을 널리 보급하는 것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 의 이해를 돕고, 누구나가 장애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마음의 배리어프 리'를 추진한다.

- ② 복지교육 등 추진
- 상호이해 추진

장애가 있는 유아 및 아동 학생들과 장애가 없는 유아 및 아동 학생들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더욱 촉진한다.

○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추진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특별활동 시간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추진한다.

- ③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
- 행정기관, 기업 등의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 이해를 더욱 촉진

행정기관, 기업 등의 직원에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 매뉴얼을 활용하고, 각종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하여, 장애의 성격 및 필요한 배려에 관한 주지를 도모하고 보다 높은 이해와 협력을 촉진한다.

- ④ 봉사활동 추진
- 봉사활동 및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촉진

아동 학생, 지역주민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지속하여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업 및 그 직원의 충실한 사회공헌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사례 소개 등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와 협력을 촉진한다.

2. 생활지원

○ 기본방침

이용자 본위의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대응하는 생활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충실한 서비스 기반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 틈이 없는 상담지원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도모 함과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등을 통한 권리수호를 도모하고, 지역생활 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 ① 이용자 본위의 생활지원체제 정비
- 이용인의 입장에 선 서비스 체계 실현과 사업자의 경영기반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시행상황 등을 포함하여, 그것의 발본적인 재고 검토를 추진 함과 동시에, 이용인 부담을 수정하고, 사업자의 경영기반 강화를 꾀한다.
 - 지역자립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충실한 상담지원체제
 - 가.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장애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원조 등 해당 인을 통한 상호지원 (서비스 카운슬링), 권리수호를 위해 필요한 원조 등을 제공하는 충실한 체제를 위하여, 지역자립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나. 국립전문기관 등에 있어,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및 지원자가 장애의 특성 에 맞는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한다,

○ 지역자립지원 협의회를 설치한 시,구,동의 수700개 시,구,동 (2007년) → 전체 (2012년)

○ 유치아동기간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유치아동기간의 장애이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아 시설에 의한 치료교육 및 가족에의 지원을 수행함과 더불어, 보육원 및 유치원 등에서도 다른 아이들과의 생활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응해주는 것이 아이의 발육에 중요하기 때문 에, 장애이를 받아들이는 교육소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아 시설 등으로부터의 순회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환경을 정비한다.

○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등을 통한 권리옹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 년후견제도의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더욱 주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성년후견 제도 등의 이용을 지원한다.

○ 교정시설에 입원하고 잇는 장애인 등의 지역생활 지원 추진

후생노동행정과 법무행정이 연계되어 교정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상담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지역생활지원을 촉진한다.

② 지역이행의 추진

○ 장애복지계획에 기초한 장애복지 서비스 등의 계획적인 기반정비

장애인 자립지원법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입원자의 지역생활로의 유도 및 일반취업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에 관한 수치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그 달성에 필요한 장애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 서비스 등이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구,동 에 의한 장애복지계획 작성이 의무화하며, 동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도모한다.

○ 정신장애인의 퇴원촉진과 지역이행의 추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정비가 된다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방문계 서비스 (주1) 의 이용시간 수
- ·약 376만 시간 (2007년) → 약 522만 시간 (2011년)
- 하루 중 활동계 서비스시간 (주2) 의 제공 양
- ·약 713만명 일분 (2007년) → 약 825만명 일분 (2011년)
- 요양간호사업의 이용자 수
- ·약 0.4만 명분 (2007년) → 약 1.0만 명분 (2011년)
- 아동 데이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제공 양
- ·약 26만인 명분 (2007년) 약 34만명 일분 (2011년)
- 단기 입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양
- ·약 24만 명 일분 (2007년) 약 35만 명 일분 (2011년)
- 공공생활원조사업 (그룹 홈), 공공생활간호사업 (케어 홈)의 이용자 수
- ·약 4.5만 명 (2007년) → 약 8.0만 명 (2011년)
- 상담지원사업의 이용자 수
- ·약 3만명 (2007년) → 역 5만명 (2011년)
- 복지시설 입원자 수
- ·14.6만 명 (2005년) → 약 13.5만 명 (2011년)
- 퇴원가능 정신장애인 수
- ·4.8만 명(2007년) 중, 약 3.7만 명 감소(2011년)

(주1) 주택간호시업, 중증방문간호시업, 행동원호시업,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시업.

(주2) 생활간호사업, 자립훈련 (기능훈련)사업, 자립훈련 (생활훈련)사업, 근로이행 지원사업, 근로지속지원 A형사업, 근로지속지원 B형사업 및 신체계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신체장애인 갱생시설, 신체장애인 요양시설, 신체장애인수산시설 (통소 및 입소), 정신장애인 생활 훈련시설, 소규모통소수산시설 (신체, 지적, 정신), 복지공장 (신체, 지적, 정신)

※"방문계 서비스의 이용시간 수" 부터 "상담지원사업의 이용자 수"까지는 각지역기관의 장애복지계획 관련 2007년도의 평균적인 서비스 추정 양 (1월 분)의 합계치다. 또한 "퇴원가능 정신장애인 수"와 관련항서는 각 지역기관의 장애복지계획 관련 수치를 2007년도에 집계한 것이다.

○ 장애인에 대한 주택 안전망 구축

주택확보가 필요한 배려인에 대하여 임대주택 제공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주택 세이프티네트 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공영주택 등의 공급 및 우선입주 등을 촉진한다. 또한 안심임대지원사업 (민간임대주택에의 원활한 입주의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과 거주 서포트 사업 (임대계약에 의한 일반주택 (공영주택및 민간임대주택)에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입주가 곤란한 장애인 등에 대하여입주에 필요한 조정 및 지원 집주인에의 상담 및 조언을 수행한다)과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의 일반주택에의 입주를 돕는다.

○ 장애아의 거주장소 확보

방과 후 및 여름방학 등 장기휴가 기간 동안 거주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 신체장애인 보조견 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

신체장애인 보조견 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각 지역기관의 보조견에 관한 고충상담 창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도모 함과 동시에, 나아가 보조견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원활한 수용을 위한 홍복 및 계몽 을 추진한다.

○ 발달장애인 시책의 추진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의 일관적 인 지원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보건, 의료, 복지, 근로, 교육 등, 제도횡단적인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 가. 발달장애인에게는 폭넓은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델사례집을 2009 년까지 작성한다.
- 나. 표준적인 지원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 일관 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에 기초하여, 2009년까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원방법을 포함해 지원 매뉴얼을 작성한다.
- 다. 발달장애아 및 그 보호자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문가가 적다는 점 에 기초하여, 지역에서 중핵이 되어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를 수행한다.

③ 스포츠 문화 예술활동 진흥

○ 스포츠 문화 예술 활동 진흥

장애인의 사회참가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스포츠 대회 및 문화 구좌 등 또는 전국의 장애인이 참가하는 "전국 장애인 스포츠 대회" 및 "전국 장애인 예술 및 문화제"를 개최한다.

④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추진과 이용지원.

- 우수한 기술 및 창의적인 방식의 복지용구의 실용화 개발에 대한 지원
- 가. 고령자, 장애인 및 간호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지원분 야, 사회활동지원분야를 중심으로 뛰어난 기술 및 창의적 방식의 복지용구의 실용화 개발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독립 행정 법인인, 신에너지산업 기술종합개발기구 (NEDO)를 통해 연구개발비용을 보조하다.
- 나. 마음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 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잃어버린 신체기능의 회복 및 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 의수 및 의족 등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인지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지원기기, 의지장비, 전동 휠체어, 복지차량, 간호시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환경관련기구, 로봇 등 첨단기 술을 활용한 복지용구 등의 이용지원을 중점으로 하여 이용자 니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인재육성을 포함하는 지원기술 확립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 장비 비용지급사업 등을 적절히 시행하고, 또 상담지원 체제를 확보한다.

더하여, 복지용구 등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자 니즈에 맞는 복지용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평가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참가를 촉진한다.

- ⑤ 전문직종의 양성 및 확보
- 복지인재의 육성, 확보
- 가. "복지인재확보지침"을 바탕으로, 간호직원의 캐리어 향상을 위한 조직을 구축 하는 등 복지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 나. 서비스 관리책임자의 양성 및 지속적인 연수시스템을 정비함과 더불어 재활기 관 관계전문직원 등을 양성한다.

3. 생활환경

○ 기본방침

누구나가 쾌적한 생활을 하기 쉬운 유니버셜 디자인에 배려한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하며, 사회 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택,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보행공간 등 생활공간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주택에서부터 교통기관, 마을 중심까지의 연속적인 배리어 프리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방화, 방법대책을 추진한다.

- ① 주택, 건축물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신축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배리어프리화를 실시한다.
-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주택 스톡의 형성 추진
- 가. 난간 설치, 넓은 폭의 통로 확보, 계단의 차이 해소 등을 반영한 주택 스톡의 형성을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고령자 (65세 이상)가 거주하는 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율
 - 일정 수준 배리어프리화 (주1) 29% (2003년) → 75% (2015년)
 - 그 중, 고도의 배리어 프리화 (주2) 6.7% (2003년) → 25% (2015년)
- (주1) 2개소 이상의 난관 설치 등 옥내 계단차이 해소에 해당
- (주2) 2개소 이상의 난관 설치, 옥내 계단차이 해소 및 휠체어로 통행 가능한 통로 폭 확보도 해당..
- 나. 공공주택 중, 도로에서 각 집의 현관까지 휠체어 등이 통행가능한 주택 스톡 의 형성을 추진한다.

○ 공공주택 중 도로에서 각 집의 현관까지 휠체어 등으로 통행 가능한 주택 스톡의 비율

10% (2003년) → 25% (2015년)

○ 건축물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특정건축물 (평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평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의 특별특정건축물 중, 배리어프리화 된 건물의 비율
 37% (2005년) → 약 50% (2010년)
- 관청시설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 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배리어프리화 신법"이라 함)에 기초하여, 새롭게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관청시설을, 이동 등 원활화 유도기준에 비추어 "모든 시설이용자가 가능한 한 원활하고 쾌적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한다.
- 나. 배리어프리 신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합동정사에 대하여, 창구까지의 경로, 고 령인 및 장애인에 대응한 화장실시설 (오스트메이트 대응),, 주차공간 등의 정 비를 실시한다.

- 국가의 합동정사 중, 창구까지의 경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대응한 화장실 (오스트메이트 대응), 주차공간 등을 정비한 시설의 비율
 7% (2007년) → 50% (2012년)
- 다.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관서가 있는 국가의 기존 관청시설과 관련, 난관, 슬로 프,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응한 화장실, 자동문, 엘리베이터 (연평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의 개조를 실시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관서가 있는 국가의 기존관청시설 중, 난관, 슬로프,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응한 화장실, 자동문, 엘리베이터 (연평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의 개조를 실시한 비율 57% (2002년) → 100% (2010년)
-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시설 등의 배리어프리화를 지원한다.
- ② 공공교통기관, 보행공간 등의 배리어프리화 등 추진
-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추진

하루에 평균이용자 수가 5,000명 이상인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및 항공여객터미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계단 해소,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정비,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응한 화장실 (오스트메이트 대응)의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외의 기차역에 대해서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용자 수뿐 아닌, 고 령자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배리어프리화를 가능한 한 실시한다.

○ 하루 당 평균 이용자 수가 5,000명 이상인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및 항공 여객 터미널 중, 계단 해소, 시각 장애인 유도용 블록 정비,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응한 화장실 (오스트메이트 대응)의 설치가 이루어진 비율

100% (2010년)

- 차량 등 배리어프리화의 추진한다.
- 가. 배리어프리화 된 철도의 도입 비율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배리어프리화 된 철도의 도입 비율
 20% (2006년) → 약 50% (2010년)
- 나. 바닥을낮춘버스차량의도입을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바닥을 낮춘 버스차량의 도입 비율33.1% (2006년) → 100% (2015년)
- 다. 논스텝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논스텝버스 도입 비율
 17.7% (2008년) → 약 30% (2010년)

라. 배리어프리화 된 여객선 도입을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배리어프리화 된 여객선 도입 비율
 11.5% (2006년) → 약 50% (2010년)

마. 배리어프리화 된 항공기 도입을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배리어프리화 된 항공기 도입 비율54.4% (2006년) → 약 65% (2010년)

바. 복지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복지 택시 도입 대 수9,651대 (2006년) → 약 18,000 대 (2010년)

○ 도시공원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도시공원에 있는 공원로 및 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시작으로 공원시설의 배리 어프리화를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공원로 및 광장에 설치된 도시공원 중, 공원로 및 광장이 배리어프리화 된 비율
 약 40% (2006년) → 약 45% (2010년)
- 주차장이 설치된 도시공원 중, 주차장이 배리어프리화 된 비율
 약 30% (2006년) → 약 35% (2010년)
- 화장실이 설치된 도시공원 중, 화장실의 배리어프리화가 된 비율
 약 25% (2006년) → 약 30% (2010년)

○ 로외(노변)주차장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특정 노변주차장 (자동차의 주차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 상이며, 그 이용에 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변 주차장 중, 도로부속물, 공원시설물, 건축물, 건축물에 부속된 것을 제외한 것)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특정 노변주차장 중 배리어프리화 된 비율
 28% (2006년) → 약 40% (2010년)

○ 보행공간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원칙으로서, 배리어프리 신법에 기초하여 중점 정비 지역 내 주요한 생활관련경로 를 구성하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 배리어프리화를 실시하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중점정비지구 내 주요한 생활관련경로를 구성하는 도로 중, 배리어프리화 된 비율
 44% (2006년) → 100% (2010년)
- 고속도로 등의 서비스공간 등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이후 정비하는 고속도로 등의 서비스 공간 및 주차공간, 주요한 간선도로의 도로 역에 대해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대응한 화장실, 주차공간의 정비를 추진한다.

○ 하천이용 거점 시설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직할하천에 신설되는 강변 플라자 등의 하천이용 거점에 있어, 난관, 경사완화 슬 로프 등의 설치, 제방 및 호안의 경사완화 등을 실시하다.

○ 항만녹지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신설 항만녹지에 대하여, 난관, 슬로프, 휴 식시설,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응한 화장실, 주차공간 등을 정비한다.

○ 국립공원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국립공원의 주요한 이용거점에 있어, 직할로 정비하는 시설의 배리어프리화를 추 진한다.

- 삼림종합이용시설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배리어프리 측면을 배려한 삼림이용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 소프트시책의 추진
- 가. 신체적 상황, 연령, 언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자율지원시책을 추진한다.
- 나. 배리어프리 정보제공 시스템 "편안하게 외출하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배리어 프리 정보의 통일적인 제공을 촉진하고, 배리어프리 교실 실시 등을 통해 국 민의 "마음의 배리어프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③ 아전한 교통 확보
-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기 등의 정비 촉진

원칙은, 배리어프리 신법 상 중점 정비지구 내 주요 생활관련 경로를 구성하는 모든 도로에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기 등을 정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중점정비지구 내 주요한 생활관련경로를 구성하는 도로 중 배리어프리 대응 형 신호기 등이 정비된 비율

100% (2010년)

- ④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등에 대한 편리 향상
- 반입차량 등을 통한 장애인 배려 교습 실시.
- 가. 지정 자동차 교습소에 대한 반입차량 등을 사용한 교습 실시 등의 지도를 수 행한다.
- 나. 반입차량을 통한 기능시험 실시 등을 추진한다.
- 다. 면허신청 시 장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배려하고, 운전적성상담에 있어서 충실한 대응을 도모한다.
-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면허제도 추진

건청인(정상인)과 동일한 적성시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청각장애인이 와이드미러 등을 조건으로 하여 보통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그에 맞는 면허시험 및 강습 등의 마련의 충실을 도모한다.

- ⑤ 방재, 방범 대책 추진
- 방재대책의 추진
- 가. 장애인 등 재해 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관련 시설에 대한 치밀한 치산대책을 실시핝다.
- 나. 사방, 사태대책 및 급경사지 붕괴대책 사업의 실시를 통해, 토사재해의 위험 이 있는 지역의 자력피난이 곤란한 장애인 등 재해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24시간 입원 및 입주하고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전한다.
- 다. 행정기관과 복지관계자에 의한 방화지도 등을 더욱 추진한다.
- 라. 긴급통보 시스템에 의한 소방서에의 긴급통제체제를 보다 충실히 하고, 장애 인에 대한 화재예방체제를 강화한다.
- 재해시의 지원체제 등 정비
- 가. 자주방재조직에 의한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 나. 최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2012년까지 재해 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다. 국가에 의한 각 지역기관 모델계획의 책정 및 전국 캐러밴의 전개 등을 통해 2009년까지를 목표로, 지역기관에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수집 및 공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피난지원플랜의 전체적인 계획 등이 책정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재해 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 장애인의 소비 트러블 등 방지

소비자기본계획 (2005년~2009년)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소비자 트러블 방지를 위해 국민생활센터에서부터 소비생활 상담 현장에서 파악된, 경계가 필요하다 여겨 지는 악질상술 및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시작으로, 방법 및 방재정보를 포함하는 신체수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 및 그 기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재빨리 전달될 수 있는 공급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 수호하는 힘을 모으는 활동을 지원하다.

- 방범 및 안전 네트워크 충실
- 가. 팩스에 의한 긴급 통보 수리 (팩스 110번), 이메일을 통한 긴급 통보 수리 (메일 110번)의 이용상황을 기안하며.. 운용 방식을 검토한다.
- 나. 팩스에 의해 경찰서와 장애인이 정보를 교환하는 팩스 네트워크 등, 지역에서 방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상황을 기안하며, 운용 방식을 검토하다.
- 파출소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 시책 추진 파출소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 시책을 연계적으로 추진한다.
-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의 보급 촉진.

주택 등에 대한 침입범죄 대책으로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건물부품을 게재하고 있는 "방범 성능이 좋은 건물부품 목록"의 공표 및 보급을 도모한다.

4. 교육 및 육성

○ 기본 방침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아동 개개인의 니즈에 부응하는 일관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모든 학교에서 특별지원교육 체제정비를 추진하고, 특별지원교육에 필요한 교육 전문성의 향상을 통해 보다 더충실한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회인 등에 대해서도, 니즈에 부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감으로서, 착실한 지원 추진을 도모한다.

- ① 일관된 상담지원 체제 정비
- 개별 지원계획의 책정 및 활용 추진

교육, 복지, 의료, 보건, 노동 관계기관 등이 긴밀히 연계하여, 개개인의 니즈에 부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개별 교육지원계획 의 수립에 대한 명확화 및 그 책정과 활용을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개별 교육지원 계획 책정 율초, 중학교 20% (2006년) → 50% (2012년)
- 교내 위원회 설치 및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지명 등 지원체제 정비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에의 지원을 위해, 유치원,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내 위원회 설치 및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지명 등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특히, 유치원,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 교내위원회 설치
- 유치원 (공립) 32.7% (2006년) → 70% (2012년)
- 고등학교 (공립) 25.2% (2006년) → 70% (2012년)
-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지명
- 유치원 (공립) 29.4% (2006년) → 70% (2012년)
- 고등학교 (공립) 18.5% (2006년) → 70% (2012년)
- ② 전문기관의 기능 충실과 다양화
- 특별지원학교의 초등, 중학교에 대한 지원 추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 교육 지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의 지도 및 지원,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관계기관과 연계 및 조정 등을 포함하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 중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③ 지도력 향상과 연구 추진
 - 특별지원학교 교습면허보유율 향상

특별지원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특별지원학교 교습면허장 보유율을 향상시킨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특별지원학교 교습면허 보유율 향상을 중기계획 (5년 이내) 등으로 정한 각 도시,구의 비율

32개 도시,구 (2006년) → 전국 도시,구 (2012년)

○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교원연수 촉진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모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지역관청의 강습 및 교 내연수를 촉진한다. 각종 지도자 양성 연수 등, 도시,구의 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추 진한다. ○ 장애에 관한 외부전문가학교의 활용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위해,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가 교원을 적절하게 지도 및 조언하는 등, 외 부전문가 활용을 촉진한다.

○ 국립 특별지원교육 종합 연구소에서 교육현장의 니즈에 기초한 중점적인 연구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정보를 제공.

독립 행정 법인인 국립 특별지원교육 종합 연구소는 우리 나라 특유의 특별지원 교육의 내셔널센터이므로, 국가의 긴박한 과제 및 교육현장의 니즈를 기초로 연구 및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별히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 ④ 사회적 및 직업적 자립 촉진
- 특별지원학교와 관계기관 등이 연휴 및 협력하여 현장 실습장 개척, 새로운 직업영역 개척

특별지원학교 졸업 후 직업적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원학교 및 교육 위원회, 노동관계기관, 기업 등이 긴밀하게 연휴 및 협력하여, 현장 실습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직업영역의 개척을 도모하다.

○ 장애인 직업자립에 대한 이해 촉진

장애가 있는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일반고용 및 고용지원책에 관 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와 연계한 효과적인 직업훈련 실시

졸업 후 취업처가 내정되지 않은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조기 단계에서 직업훈련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장애학생 지원 충실

- 가.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 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장애학생 취학지원 네트워크" (전국의 대학 및 관계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애학생 취학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습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 나. "새로운 사회적 니즈에 대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택된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 관련 내용 포함)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하면서, 이후 사회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대학 등에 대한 학생지원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
- 다. 대학입시에 관하여, 장애인의 수험기회를 확보하는 관점에서부터 장애의 종류에 따른 배려 (시험기간의 연장, 점자 및 확대문자로의 문제출제, 보조자와의 동석허용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각 대학에 요청한다.
- 방송대학에서 시청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자막방송 제작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으로부터의 요청을 수용하여, 요청이 많은 방송에 대해 자막 을 제작하여 방송한다.
 - ⑤ 시설의 배리어프리화 촉진
-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정비 계획 책정사례를 주지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특별지원학교 및 초등,중학 교 등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사례를 취합하여, 각 도시,구의 기관의 인지를 높인다.

5. 고용 및 취업

○ 기본방침

고용 및 취업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생활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둥이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취하여 근로를 통한 사회참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 복지정책 및 교육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고 강화한다.

- ① 장애인 고용의 장 확대
- 장애인 고용율 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율 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에의 고용율 달성지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장애인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제외율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간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고용 장애인 수 64 만 명 (2013년)
- 각 정부기관,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챌린지 고용을 추진

각 정부기관,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직장실습을 활용하는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 등이 일반고용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챌린지 고용"을 추진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챌린지 고용 추진모든 정부기관에서 실시 (2008년)

○ 공적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장애인고용을 더욱 촉진하고, 실고용율을 높인다. 특히 장애인 고용율의 달성율이 낮은 도시,구의 교육위원회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킨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공적 기관의 장애인 고용율 모든 공적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율 달성 (2012년도) ○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고용촉진

정신장애의 특성에 따른 충실한 지원의 강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에 관해, 조사연구 및 지원을 위한 기법개발을 추진하여, 기업 등의 이해를 촉진하여 고용을 보다 촉진시킨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정신장애인의 고용
 - 56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고용되는 정신장애인 수 0.4만 명 (2007년) → 1.5만 명 (2013년)
 - 정신장애인의 단계적 고용 상용 고용 이행율 60% (2012년)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맞춘 근무방식지원]

○ 장애인의 재택취업 촉진

다양한 취업형태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택 취업 단체 등록 수를 늘린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재택 취업 지원 단체 등록 수
 16단체 (2007년) → 100단체 (2012년)

○ 단시간 노동을 통한 장애인 고용의 촉진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맞는 근무방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니즈를 반영하여, 단시간 노동에 대응한 장애인 고용 촉진 법제를 정비하는 것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 농업법인 등에 장애인 고용 추진

농업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에 장애인 고용의 노하우 및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인턴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에 관련 제도의 정보를 제공한다.

② 종합적 지원 시책의 추진

[고용, 복지, 교육 등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근로 지원 능력 강화]

○ 핼로워크 (공공직업 안정소)를 중심으로 한 "팀 지원"의 충실 및 강화 공공직업 안정소를 중심으로 복지, 교육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근로지원 탐"을 통해 지원을 수행하는 등, 근로의 준비단계부터 직장정착까지 일관된 지원을 전개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공공직업 안정소를 통한 장애인의 취직 건수 24만 건 (2008년~2012년의 집계)

○ 장애인 취업 센터에서 전문적 지원 추진

장애인 취업종합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지금까지 효과적인 대응을 해오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 새로운 지원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지역 장애인 취업 센터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을 포함해,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에게 필요한 취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직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근로지원을 부담하는 전문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근로지원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 및 원조하고, 지역근로지원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 지역 장애인 취업 센터
 - 지원대상자 수 12.5만 명 (2008년~2012년 집계)
 - 직장적응 원조자 (잡코치) 지원사업에서 지원종료 후의 정착률 80% 이상 (2012년)
- 장애인 취업 및 생활지원 센터의 전국으로의 전개와 지원 충실 장애인의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측면과 생활측면에서 일체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인 취업 및 생활지원 센터를 모든 장애 보건 복지권역에 설치하고, 지역의 니즈 및 지원 실적에 따른 실시체제의 충실을 기하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장애인 취업 및 생활 지원 센터
 - 설치수 135 (2007년) → 모든 장애 보건 복지권역에 설치 (2011년)
 - 이용자의 취직 건수 9,000 건 (2012년)
 - 취직율 50%이상 (2012년)
- 직장 적응 원조자 (잡코치)를 통한 지원 추진

직장에의 적응이라는 과제를 가진 장애인 및 사업주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수행하는 직장 적응 원조자 (잡코치)를 양성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취직 및 직장 적응을 추진한다.

- 코치 양성 수1,500 명 (2006년) → 5,000명 (2011년)
- 잡코치 지원지원종료 후 정착율 80%이상 (2012년)
- 장애인의 고용지속을 위한 중간 지원

재직 중인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난병환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취업 재활서비 스를 제공하며,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정신장애인 종합 고용 지원
 지원종료 후 복직 및 고용 지속율
 75% (2012년도)
-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직업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지원계획 책정 및 활용 추진

장애인의 직업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복지, 교육 등의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개별 지원 계획을 책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일반 근로 형태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충실 및 강화]

○ 인턴 고용(트라이얼 고용) 추진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상용고용에 이동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시행고용 (트라이얼 고용, 인턴)을 추진한다.

인턴 고용대상자의 상용고용 이행율80%이상 (2012년)

○ 복지시설로부터 일반근로에 이동을 촉진

복지시설로부터 일반 근로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이행 지원사업소, 근로지속 지원사업소를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직장실습 등 시설 외의 근로협력이 가능한 농업법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일반 근로로의 연간 전환 자 수0.2만 명 (2005년) → 0.9만 명 (2011년)
- 근로이행 지원 이용자 수29.2만명 일분 (2007년) → 72만명 일분 (2011년)
- 근로지속 지원의 이용자 수83.1만명 일분 (2007년) → 277만명 일분 (2011년)
 - ※ "근로 이행 지원의 이용자 수" 및 "근로 지속 지원의 이용자"는 각 지역의 장애복지계획에서 2007년도의 평균적인 서비스 예측 양 (1월의)의합계치 이다.
- 직업소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공임수준 인상을 위해 "공임 증대 5 개년 계획"을 통한 복지적 근로의 질 제고

2007년부터 5개년에 걸쳐, 관민이 일체가 되는 계획을 추진하여, 공임 수준 증대를 도모하면서, 일반 고용으로의 이동을 추진한다.

○ 직업소개 시설 등의 평균 공임 월급
 12,222엔 (2006년) → 평균 공임 증대를 목표 (2011년)

○ 복지시설 등에서의 업무 확보를 위한 계획 추진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업무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공공조달 관련 경쟁 및 공정성 확보를 유념하면서, 복지시설 등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의 계획을 기초로 복지시설에의 수주기회 확대 추진을 요청하다.

또한, 기업이 복지시설에 발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세제를 창설하고, 해당 세제 활용을 촉진하여서 장애인의 업무 확보를 향한 계획을 추진한다.

○ 특별 지원 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근로지원 추진

특별 지원 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직업 자립 추진을 위해, 특별 지원 학교와 공공 직업 안정소, 기업의 관계기관이 연계 및 협력하여 현장 실습을 계발하는 등, 근로 지원을 추진한다.

○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로지원 추진

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학생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 및 학교에서 교육, 의료, 보건, 복지 그리고 핼로 워크, 지역장애인 취업 센터 등의 노동관련기관이 연계한 특별 지원 교육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대학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의 근로를 지원한다.

○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이해 촉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기업관계자, 복지관계자를 시작으로 해 국민 전체에 대해 장애인 근로에 대한 이해 계몽을 촉진한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추진]

○ 공공 직업능력 개발시설에서 장애인 직업훈련 추진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학교에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일반적 공공 직업능력 개발시설에서도 장애인 수용을 추진한다.

○ 장애인 상태에 따른 다양한 위탁 훈련 확충

근로이행 지원사업의 이용자, 특별 지원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기업, 사회복지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민간 교육 훈련 기관 등 지역의 위탁 훈련처를 발굴하고, 장애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위탁 훈련을 실시한다.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장애인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위탁 훈련의 취직율
 41.3% (2006년) → 50% (2012년)

6. 보건 및 의료

○ 기본방침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 서비스, 의료, 의학적 재활 등이 충실히 제공되고, 장애인의 QOL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등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건 및 의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수 있도록 하며, 장애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마음의 병에 대해서도 의료적 케어를 충실히하며, "우울증" 및 자살 방지를 추진한다.

①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등의 예방 및 치료

-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순환기병 등 감소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순환기 질병의 감소를 꾀한다.
-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지속 당뇨병 관련 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증가, 당뇨병자 수 감소 및 당뇨병자의 치료 지속율의 항상을 꾀한다.
- 난치성 질환에 관한 원인 및 병의 증상 해명 난치성 질환에 관하여, 원인과 증상을 해명하고, 치료법 개발 및 생활의 질 향상 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② 장애에 대한 적절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충실
 - 고차원적 뇌 기능 장애의 지원 거점 기관 설치 등
 - 가. 고차원적 뇌기능 장애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원 거점 기관을 전 도,시,구에 설치한다.
 - 나. 국립 전문 기관 등에서, 고차원적 뇌기능 장애를 위한 인지 재활 기법의 확립 및 평가척도 개발을 추진하고, 더불어 고차원 뇌기능 장애인에 대한 각 지역 단위의 지원 네트워크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지원 기술의 보급을 꾀한다.

- 고차원적 뇌 기능 장애인 지원 거점
- 18개 도시,구 (2006년) → 전 도시,구 (2012년)
- 장애인의 건강유지와 QOL (생활의 질) 향상 장애인의 건강유지와 QOL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용 의료 서비스 시스템과 장애

인의 건강 유지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꾀한다.

○ 인지성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 제공 등

증가하는 인지성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연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다.

- ③ 정신보건 및 의료시책 추진
- 일반의의 우울병 진단기술 향상

정신과 의사 외의 일반의를 대상으로 우울병에 관한 연수를 제공하여, 일반의의 우울병 진단기술의 향상을 꾀한다.

○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 친족 등의 케어에 관한 지식 보급 자살 미수자 및 자살자 친족 등을 케어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등,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 친족 등의 케어 방법에 대해 보급한다.

○ 정신과 구급의료 체제 확보

정신장애인의 긴급 상황 발생시, 정신과 치료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정신과 구급 정보 센터 및 정신과 구급 의료시설을 포함한 정신과 구급의료 체제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 의료 형무소의 재활 기기 갱신 정비 의료형무소 등 8개 시설에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기기를 갱신 정비한다.

- ④ 연구개발 추진
- 재생 의료 수법을 도입한 연구 추진
- 가. 재생 의료 수법을 도입한 척수신경기능의 재활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나. 세포이식, 세포치료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치료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재생 의료에 대해, 필요한 줄기세포 이용 기술을 전 세계 중 선두적으로 확립하여, 그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우울병 등의 정신 질환에 관한 연구
- 가. 우울병 등의 정신질환의 증상 설명 및 조기발견, 치료기술에 관한 개발, 사회 복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보급을 꾀한다.
- 나. 소자녀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나라의 의료, 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알츠하이머병이나 우울병 등 정신 신경 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으로 이어지는 뇌과학 연구 및 분자 이미징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⑤ 전문직종의 양성 및 확보
- 정신과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 및 전문 직종 양성

심리 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 치료에 관한 연수를 수행하여, 정신과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 양성을 꾀함과 동시에, 정신 보건 복지사의 자질 향상 을 꾀한다.

7. 정보 커뮤니케이션

○ 기본방침

IT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을 이끌어 내고, 자립 및 사회 참가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에 대응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장애로 인한 디지털 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① 정보 배리어프리화 추진
- 장애인 IT 종합 추진사업의 실시 촉진

장애인의 IT 이용 및 활용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IT 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 거점이 되는 장애인 IT 서포트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컴퓨터 자원봉사자 양성 및 파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 IT 종합 추진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정보 통신 기기,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정보 통신 기기,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정 보 통신 기기 등의 유니버셜 디자인 화를 촉진하다.
- 장애인이 이용하는 IT기기에 관한 JIS규격의 적절한 수정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IT기기에 관한 JIS 규격을, 국제규격의 동향에 맞 추어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 홈페이지 등의 배리어프리화에 관한 보급 및 개발 추진 홈페이지 등의 배리어프리화 추진을 위한 보급 및 개발을 추진한다.
- 정부의 홍보 관련 웹사이트의 장애인 대응 추진 정부의 홍보 관련 웹사이트의 장애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인터넷 텔레비 전"에 큰자막을 삽입하고, "정부 홍보 온라인" 상에 문자 사이즈 확대기능 및 문자 를 읽어주는 툴을 추가한다.
-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 추진 관계 행정 기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시책에 관한 제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을 충 분히 배려한,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를 추진한다.
 - ② 사회 참가를 지원하는 정보 통신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전자투표 실시 촉진

전자 투표 시스템의 기술적인 과제 및 도입 단체의 실시상황에 관해 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방 공공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투표 실

시를 촉진한다.

○ 일상 생활용품 제공 사업의 적정한 운용 촉진

정보 및 의사 소통 지원 용품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 구, 동의 일상 생활 용품 제공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촉진한다.

○ 텔레 워크의 보급 및 개발 추진

"텔레 워크 인구 증가 액션 플랜" (2007년 5월 29일 텔레워크 추진에 관한 관계 성/청 연락 회의 결정)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등, 텔레워크 보급을 위한 종합적 지원 환경을 정비하고, 통근이 곤란한 사람도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텔레 워크를 보급 및 개발한다.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 개발 추진

연령, 신체 등의 벽을 초월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 장애인이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연 구개발

뇌에서부터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이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 ③ 정보제공 충실
- 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의 정비 촉진

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과 관련하여, 전국 도,시,구에 설치를 목표로, 정비를 촉진한다.

○ 자막 방송, 해설 방송 및 수화 방송 제작 촉진

가. NHK 종합 및 수도권 주요 5개국에 자막삽입이 가능한 모든 방송에 자막을 삽입한다.

또한, NHK 종합 및 수도권 주요 5개국에 대상 방송의 10%, NHK교육의 대상 방송 15%에 해설을 추가한다.

- 주1) 복수의 사람이 동시에 대화하는 생방송 등 기술적으로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송 등을 제외한 7시부터 24시까지 모든 방송으로 범위를 확대
- 주2) 이해관계의 이유 등으로 해설 삽입이 어려운 방송을 제외한 7시부터 24시까지의 모든 방송.

(수치목표 및 달성기간)

○ 자막방송 시간 비율

NHK 종합 100%, 수도권 주요 5개국 평균 77.8% (2006년)

- ※ 현행 지침 상 자막삽입이 가능한 방송시간 (생방송 등 기술적으로 자막을 삽입할 수 없는 방송을 제외한 7시부터 24시까지의 새롭게 방송하는 모든 방송의 방송시간)에 대한 자막방송시간 비율 \rightarrow 100% (2017년)
- ※ 새로운 지침 하에서, 자막 삽입이 가능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중 자막 방송 시간의 비율
- 해설 방송 시간의 비율

NHK 종합 3.7%, NHK 교육 8.8%, 수도권 주요 5개 방송국 평균 0.3% (2006년)

- ※ 총 방송 시간에 대한 해설방송 시간 비율
- → NHK 종합 및 수도권 주요 5개국 등 10%, NHK 교육 15% (2017년)
- ※ 대상 방송의 방송시간에 대한 해설 방송 시간의 비율
- 나. 자막 방송, 해설 방송 및 수화 방송에 필요한 제작비 조성을 돕는다.
- 영화 자막 삽입 촉진

일본 영화에 자막을 삽입하도록, 영화 관계 단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시각 장애인용 도서 정보 네트워크 운영 사업 등 이용 촉진 시각 장애인이 IT를 활용하여, 자택에서 점자 도서 및 녹음도서를 검색 및 대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 장애인용 도서 정보 네트워크 운영 사업" 등의 이 용을 촉진한다.

○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충실 시각 장애인 용 자료 "음성 홍보 CD" 및 "점자 홍보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 또한, 홍보매체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한 음성 코드 활용을 고려한다.

- 장애인이 자립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정보 제공 추진 장애인이 자립하여 식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배려한 저작권 제도 검토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배려한 저작권 제도의 실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법을 정비한다.
 - ④ 커뮤니케이션 지원 체제 충실
 - 수화 통역사 양성, 파견 촉진

수화 통역사, 맹인 통역 및 간호보조원 등의 양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니즈에 대응한 수화 통역인 파견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지원사 업을 적정하게 운용 및 촉진한다.

8. 국제 협력

○ 기본방침

"비와코 플러스 5"의 채택 등, 장애인 단체 간 교류, 정부 및 민간 단체의 각 종 협력 실시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권리 조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령을 정비한다.

① 국제협력 추진

○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 추진

독립 행정 법인 국제 협력 기구 (JICA) 등을 통한 연구원 유입, 기술 협력 프로 젝트 등을 실시한다.

또한 풀뿌리, 인권 안전 보장 무상 자급 협력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나아가, 일본 NGO 연계 무상 자급 협력 및 NGO 사업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 ② 장애인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조직에 가입
- 국가연합의 조직에 참가

국가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에서 장애인 대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연합 장애인 기금에 출현한다.

나아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 관련, 가능한 한 조기 체결을 목표로 필요한 국내법령을 정비한다.

③ 정보 제공 및 수집

○ 국립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연구소에서 국내외의 교육 정보 제공

발달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 행정 법인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연구소에서 외국의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나라의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정보 등을 외국에 제공한다.

Ⅱ. 계획의 추진 방안

- 본 계획을 추진하되, 개별 장애에 대한 니즈 및 사회 및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제도가 개정될 때, 그로 인해 수정되는 규정 등에 대해서, 필요에 맞게 계획을 수정한다.
- 본 계획의 착실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진척상황을 매 년도, 중앙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에 보고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에 대한 구제 조치를 정비한다.
- 본 계획의 추진에 대해, 지방 공공 단체와 긴밀한 연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구와의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시,구,동에 대해 장애인 계획에 대한 기술적 협 력을 수행한다.

〈부록 3〉일본 장애인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장애인제도 개혁 추진 회의 제 32회 (H23.8.8) 자료 1

장애인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개요]

(2011년 7월 29일 성립) (2011년 8월 5일 공포)

총칙관련 (공포일 시행)

- 1) 목적규정의 재검토 (제1조 관련)
- 모든 국민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소중 한 개인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 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상호간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다.
- 2) 장애인에 대한 정의의 재검토 (제2조 관련)
- 신체장애, 지적 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 및 그 외의 심신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 및 사회적 장벽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벽이 되는 사물, 제도, 관행, 관념 및 그 외 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
 - 3) 지역사회에서의 공생 등 (제3조 관련)
- 1)에서 규정하는 사회의 실현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 받고, 그 존엄성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취지로 삼아 도모한다.
 - 모든 장애인의,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가 확보된다..
 - 모든 장애인의,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

며,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공생하는 것을 저해 받을 수 없다.

○ 모든 장애인의. 언어 (수화 포함) 및 그 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과 관련 하여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며, 정보 취득 또는 이용을 위한 수단과 관련 하여 선택의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4) 차별의 금지 (제4조 관련)

-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 그 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실시에 따르는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장벽의 제거 실시는 필요하며, 합리적인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가는 차별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수 행하다.

5) 국제적 협조 (제5조 관련)

○ 1)에서 규정하는 사회 실현은, 국제적 협조 하에서 도모되어야 한다.

6) 국민의 이해 (제7조 관련) / 국민의 책임 (제8조 관련)

- 국가 및 지방공생단체는, 3)에서부터 5)까지 정해진 기본원칙에 관한 국민 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
- 국민은, 기본 원칙에 준수하며, 1)에서 규정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하다.

7) 시책의 기본방침 (제10조 관련)

-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상태, 생활의 실태에 따라 시책을 실시한다.
- 장애인과 그 외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본적 시책관련 (공포일 시행)

1) 의료 간호 등 (제14조 관련)

-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상태, 생활의 실태에 따라, 의료, 간호, 보건, 생활지원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 가까운 장소에서 의료, 간호 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과 더불어, 인권을 충분히 존중한다.

2) 교육 (제16조 관련)

- 연령, 능력에 다라, 그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 애인이 아닌 아동 및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 충실화를 도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
- 장애인 아동 및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그 의향을 존중.
- 조사 및 연구, 인재 확보 및 자질 향상, 적절한 교재 제공 등, 학교시설과 그 외 환경 정비.

3) 교육 (의역:치료교육) (신설) (제17조 관련)

- 가까운 곳에서 치료교육, 그 외 관련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문적 지식 도는 기능을 가진 직원 육성, 그 외 환경 정비를 촉진.

4) 직업상담 등 (제18조 관련)

○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개인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을 실시.

5) 고용의 촉진 등 (제19조 관련)

-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우선고용 및 기타 내용 실시.
- 사업주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개개인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고용관리를 수행한다.

6) 주택의 확보 (제20조 관련)

○ 지역사회에서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한 주택 확보,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7) 공공적 시설의 배리어프리화 (제21조 관련)

○ 교통시설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이동시설을 포함) 및 그 외 공공적 시설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구조 및 설비 정비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

8) 정보 이용에 있어 배리어프리화 등 (제22조 관련)

- 원활하게 정보를 취득,이용하고, 의사를 표시하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인력 양성 및 파견 등 필요한 시책
- 재해 등의 경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9) 상담 등 (제23조 관련)

- 의사결정 지원을 배려하며, 장애인의 가족 및 그 외 관계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 장애인 및 그 가족, 그 외 관계자로부터 각종 상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체제를 정비하며, 장애인 가족이 서로서로 지지해줄 수 있도록 활동 지원 및 기타 내용 지원.

10) 문화적 제조건의 정비 등 (제25조 관련)

○ 원활하게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

11) <u>방재 및 방범 (신설) (제26조 관련)</u>

○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상태, 생활의 실태에 따라 방재 및 방범 관련 필요한 시책 등

12) 소비자로서 장애인의 보호 (신설) (제27조 관련)

○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이익의 수호 및 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시책 등

13) 선거 등에서의 배려 (신설) (제28조 관련)

○ 선거 등에 있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시설과 설비 정비 등 필요한 시책 등

14) 시법 수속에서의 배려 등 (신설) (제29조 관련)

○ 형사사건 등 수속의 대상이 된 경우, 민사사건에 관한 수속 대상이 된 경우,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개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관계직원에 대한 연수 등 필요한 시책 등

15) 국제협력 (신설) (제30조 관련)

○ 외국정부,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등과의 정보 교환, 그 외 필요한 시책 등

장애인 정책위원회 등 (공포로부터 1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해지는 일부터 시행)

국) 장애인 정책 위원회 (제32~35조 관련)

- 중앙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를 개편하고, '장애인 정책 위원회'를 내각 부에 설치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학식을 구비한 경력자 중 총리가 임명)
- 장애인 기본 계획 책정에 관한 조사심의, 의견 구신, 동 계획의 실시상황 을 감시, 권고 등

지방) 심의회, 기타 합의제의 기관 (제36조 관련)

○ 지방의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를 개편하고, 그 소장사무에 장애인에 관 한 시책 실시 상황의 감시를 추가 등

부칙

검토 (부칙 제2조 관련)

-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장애에 대한 시책 실시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보건, 의료 및 복지의 연계 확보, 기타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의 운영상황에 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등